2016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방송통신위원회

2016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성과관리시행계획, 2016.4.

방송통신위원회 의안·정책관리팀 (02-2110-1386)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2동 511호

목 차

Ⅰ.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16년도 정책 추진방향 ····· 1

1. 그간의 정책성과 ····· 1

2. 2016년도 정책 추진방향 ····· 13

Ⅱ. 일반 현황 및 계획의 개요 ····· 18

1. 방송통신위원회 일반현황 ····· 18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 20

Ⅲ. 세부 추진계획 ····· 25

전략목표 Ⅰ ····· 25

전략목표 Ⅱ ····· 53

전략목표 Ⅲ ····· 86

전략목표 Ⅳ ····· 130

Ⅳ. 환류 등 관련계획 ····· 166

1. 이행상황 점검 ····· 166

2. 평가결과 환류체계 ····· 168

3. 변화관리 계획 ····· 173

4. 현장의견의 정책반영계획 ····· 180

【붙임】

1. 성과지표 현황 ····· 182

2. 관리과제와 국정과제·부처업무계획 등 연계 현황 ····· 188

Ⅰ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16년도 정책 추진방향

1. 그간의 정책성과

□ 급변하는 방송통신 환경에 맞춰 국민에게 행복을 주고 신뢰받기 위하여 방송의 공익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 2015년 9월에 열린 제51차 회의에서 2016년부터 실시될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안)'을 의결하고, 사전에 공표하여 심사의 일관성과 방송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 「방송법」 제17조 및 제31조에 따라 매년 방송의 내용·편성·운영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방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및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를 위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였습니다.

○ 올바른 방송언어 사용을 통한 방송문화 개선을 위해 '방송언어 가이드라인'을 2015년 9월 제정·발표(방심위와 공동)하였으며, 세부 지침 마련을 통해 실제 방송현장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방송언어 가이드라인 실무자 교육	아름다운 언어문화 확산을 위한 어울림 한마당	

○ 전국 6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해 미디어 분야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미디어 교육을 받고 방송제작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 전국의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활용한 미디어교육을 통해 '학생의 꿈과 끼를 찾고 진로를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창의 교육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및 정부의 자유학기제 정책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방통위 미디어교육 현장 지원 강화	시청자미디어재단 창립기념식 개최	최성준 위원장, 광주지역 미디어교육 현장 방문

□ 신규 방송서비스 도입 추진 등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사교육비 절감 및 지역·소득 격차에 따른 교육 양극화 해소 등 공익적 목적과 다채널방송의 기술적 안정성 검증을 위하여 EBS에 다채널방송(MMS) 시범서비스를 허용하였습니다.

EBS2 MMS 시범서비스 개시 행사		

○ 2015년 7월 700MHz대역 중 일부가 방송에 배정되어 세계 최초 지상파 UHD 방송을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2015년 12월 미래창조과학부와 공동으로 '지상파 UHD 방송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42년만에 칸막이식 방송광고 규제를 걷어내고 광고총량제를 도입하는 등 콘텐츠 제작을 위한 방송재원 확보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한류의 핵심인 방송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를 위해 외주편성 규제를 개선하고 PP경쟁력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콘텐츠 제작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 **단말기유통법 안착을 위해 노력하여 이용자 보호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 2015년 4월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을 법 시행 시 최초 설정하였던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상향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높이고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단말기 구입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방송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정비, 제도개선을 통해 온라인 상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억제하고 국민 불안감 해소를 통해 안전한 개인정보 이용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 신규 온라인서비스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발*을 통해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쉽게 이해하고, 준법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대한 해설서 마련(2.23),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개발(6.8), 「스마트폰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마련(8.6)

○ 공공·민간, 온·오프라인 구별 없이 통합된 개인정보보호 인증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기업들의 혼란 해소, 인증취득 소요기간 단축, 수수료 절감 등 기업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방통위(PIMS)-행자부(PIPL) 개인정보보호 인증체계 통합 >

* PIMS(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 PIPL(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vel)

□ **인터넷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맞춤형 윤리교육 추진 및 범국민 캠페인 전개로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 유해정보 차단 S/W 보급 확대, 청소년 대상 인터넷 윤리교육 및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실시, 학생 학부모, 교사와 연계한 사이버안심존 운영,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등 대국민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해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 **불법스팸을 차단하고 스팸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휴대전화 간편신고 탑재 확대,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스팸발송정보 공유 및 차단,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확대하는 등 불법스팸 근절에 기여하였습니다.**

○ 휴대전화 간편신고 기능이 탑재된 단말을 확대(23종→29종)하여 휴대전화 이용자들이 간편하게 스팸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기존기종(23종) : 갤럭시 S5·노트4 등 9종(삼성전자), G3·Vu3 등 12종, 베가아이언2 등 2종(팬택)
* 추가기종(6종) : 갤럭시 노트3·S4·S4 LTE-A(삼성전자), G2·G Pro·G Pro 2(LG전자)

○ 국내 스팸 유통현황 공개를 통한 사업자의 스팸 방지 노력을 유도하고, 사회적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음성스팸 차단을 위해 실시간 음성스팸 차단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였습니다.

○ 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배포하여 사업자들이 법을 준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 방송통신산업은 국가경제 성장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 2015년 국내 방송통신산업 생산액은 158조원, 방송광고 매출은 3.9조 원으로 최대의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발표하는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 발전지수가 세계 1위로 평가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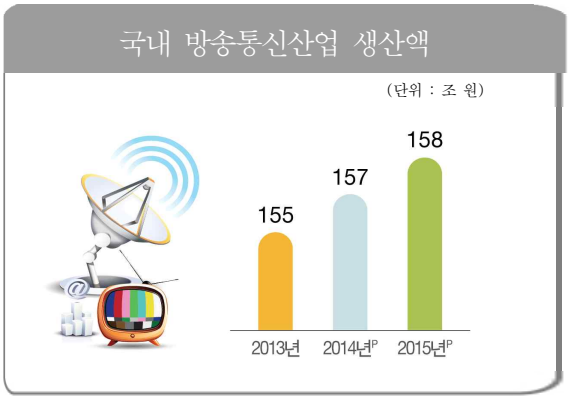

주) P : Preliminary(잠정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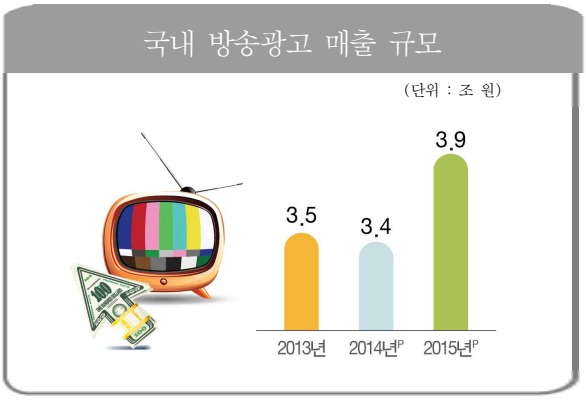

주) P : Preliminary(잠정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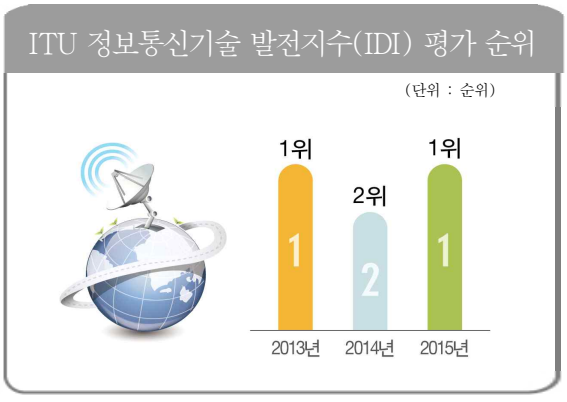

주) 미래창조과학부(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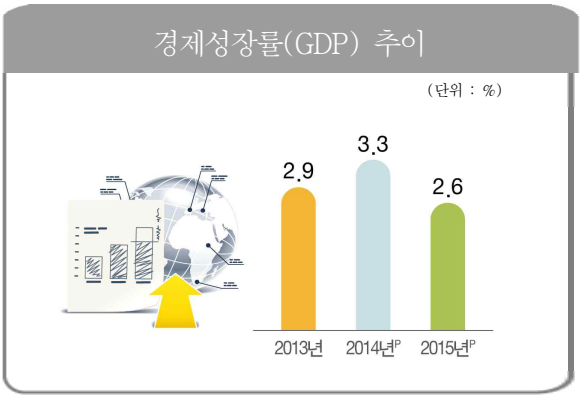

주) P : Preliminary(잠정치), 한국은행(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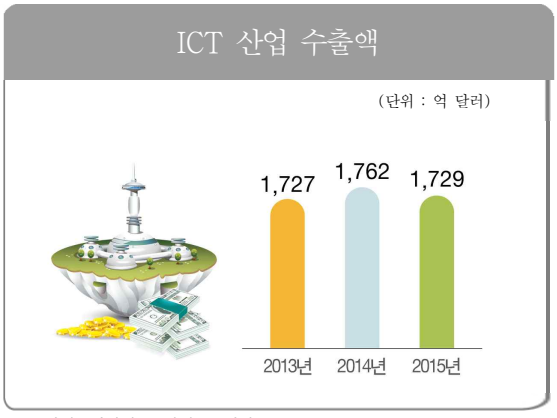

주)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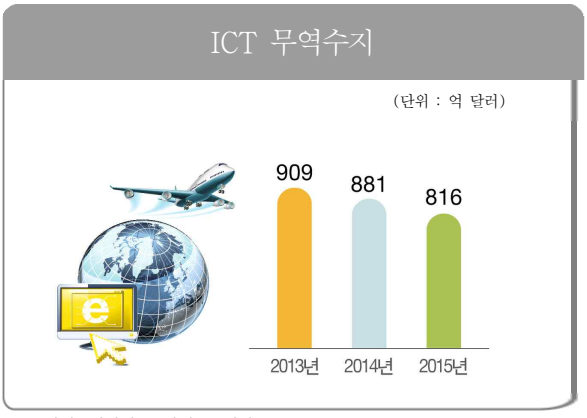

주)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2016)

□ 차세대 방송통신 서비스 확산으로 미래 방송통신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2,000만 명, IPTV 가입자 1,2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고품질의 방송통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 무선데이터 트래픽은 2014년 보다 43.3% 증가하였고, LTE 가입자가 4,169만 명으로 증가하는 등 초고속·대용량·고품질의 미디어 시대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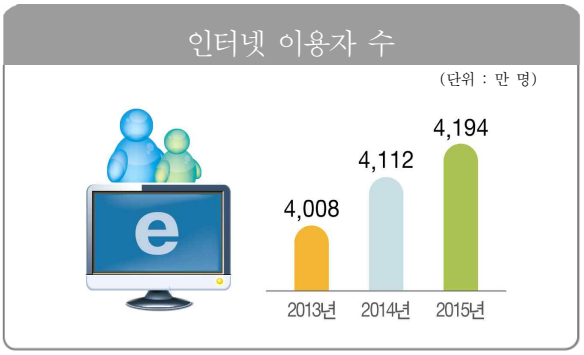

주) 한국인터넷진흥원(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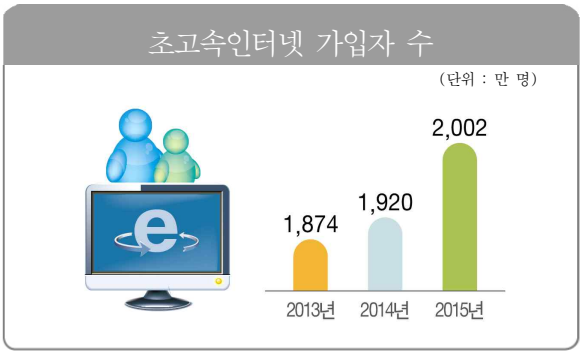

주) 미래창조과학부(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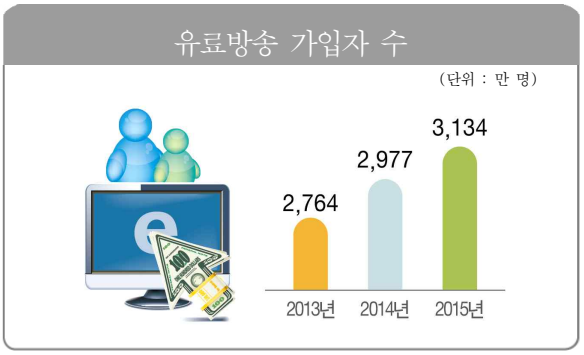

주) 중계유선 제외,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Skylife(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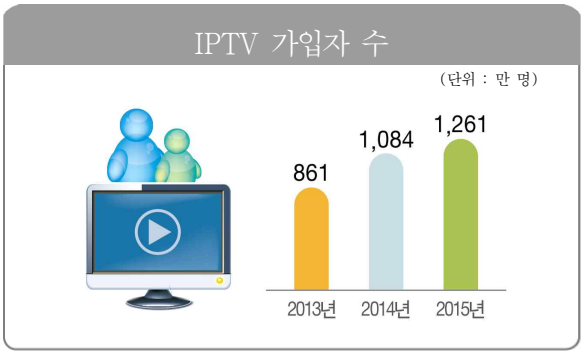

주) 미래창조과학부(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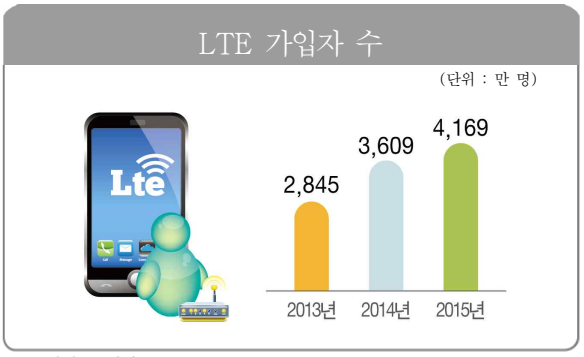

주) 미래창조과학부(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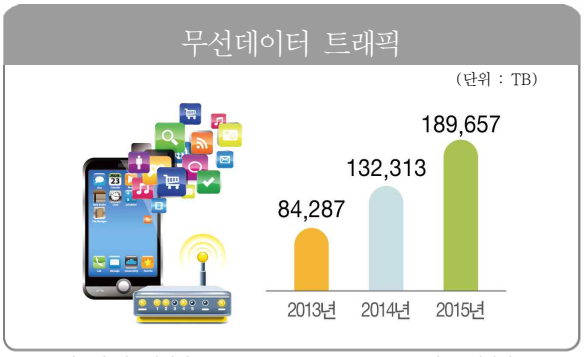

주) 무선통신 기술방식별(2G, 3G, 4G, WiBro, Wi-Fi) 트래픽, 해당연도 12월(1개월) 기준, 미래창조과학부(2016)

□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통해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였습니다.**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 시행을 통해 통신시장의 요금·서비스 경쟁을 촉진하였습니다.

○ 알뜰폰 가입자 500만 명 돌파, 부가서비스 및 고가요금제 가입 비중 감소 등 가계 통신비 경감에 기여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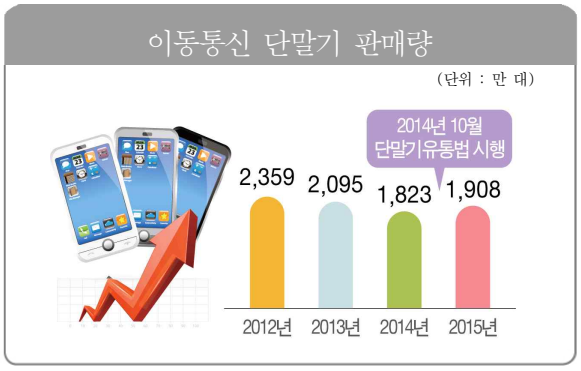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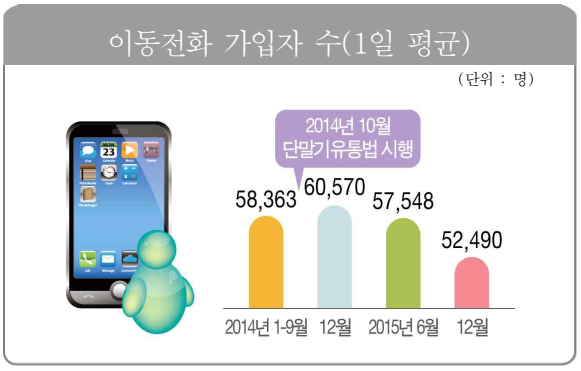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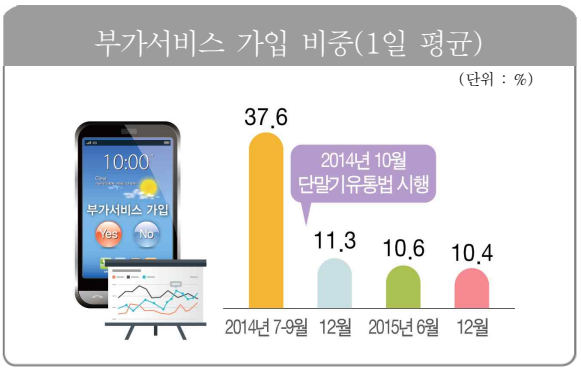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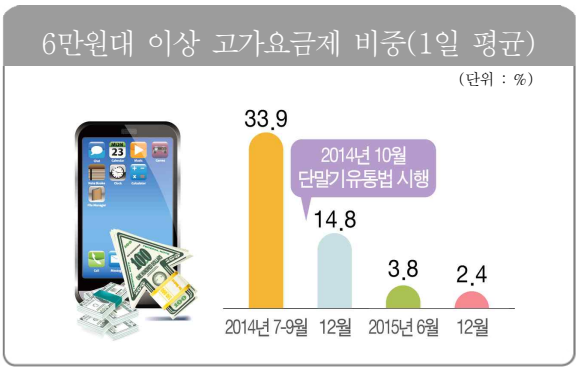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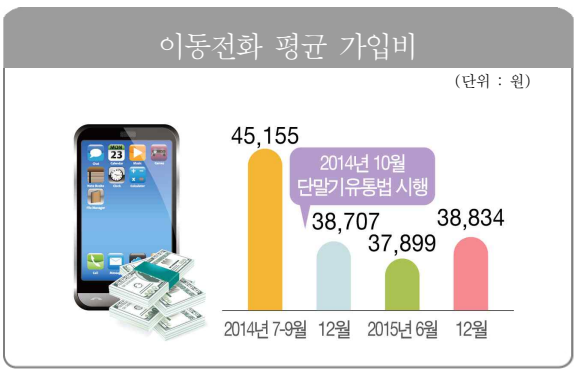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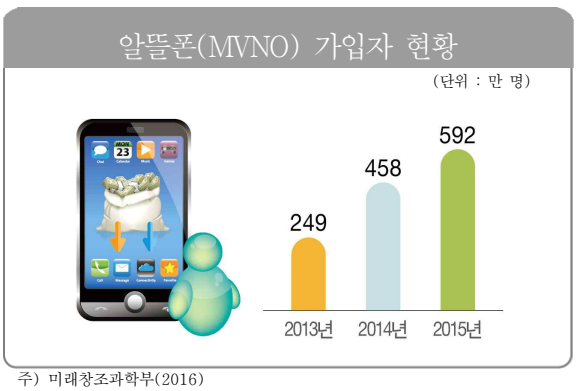

주) 미래창조과학부(2016)

□ 미디어 다양성 및 시청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지역·중소방송에 대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지역방송 내실화에 힘썼습니다.

○ 지역·중소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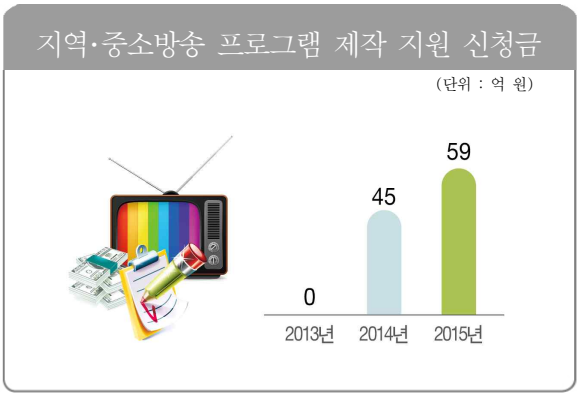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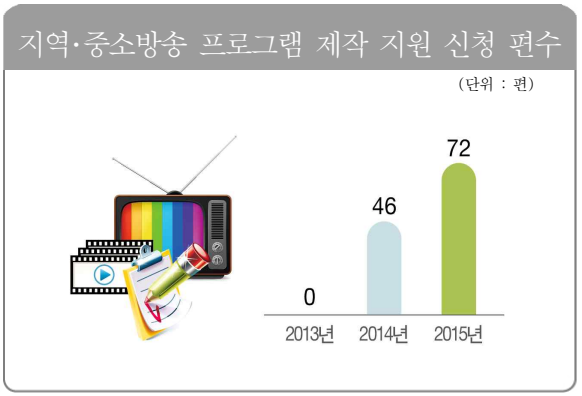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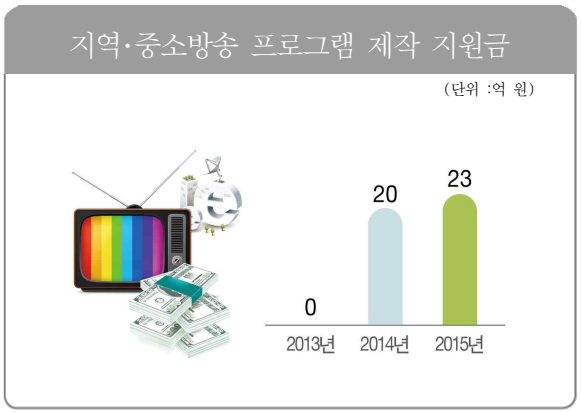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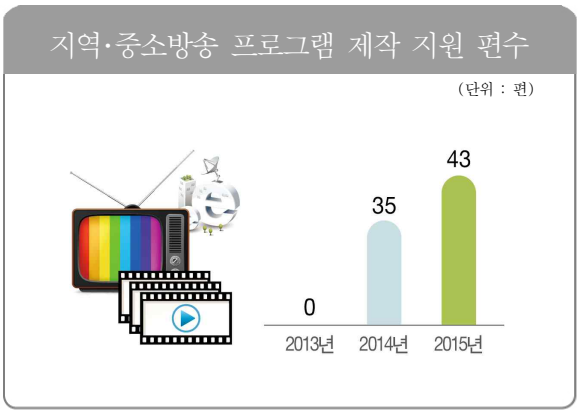

□ 소외계층 등 이용자의 방송접근 기회를 확대하여 시청자 복지를 증진하였습니다.

○ 시청자가 직접 참여하는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청자 미디어센터를 적극 활용하였으며, 자유학기제 미디어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창의성 및 자기주도 학습능력 함양에 기여하였습니다.

○ 시·청각장애인용 방송수신기 보급과 장애인방송 지원을 통하여 방송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권을 향상시켰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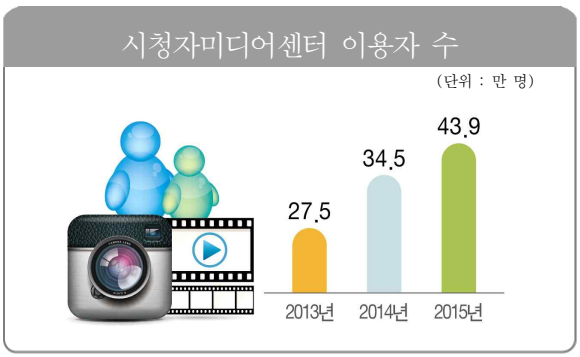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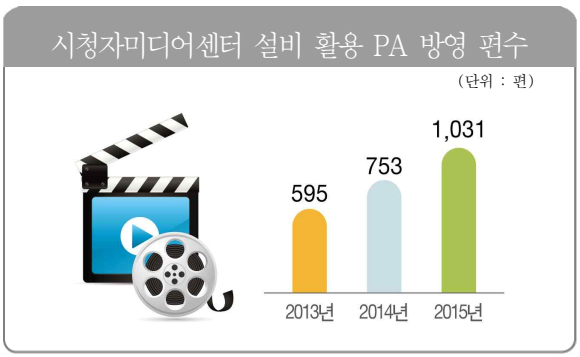

주) PA(Public Access) : 시청자가 직접 기획·제작한 영상 또는 라디오 방송물을 방송에 송출하는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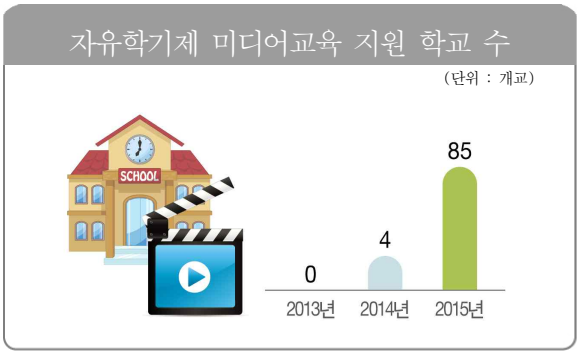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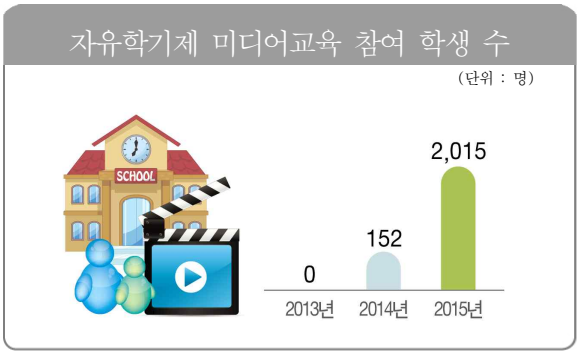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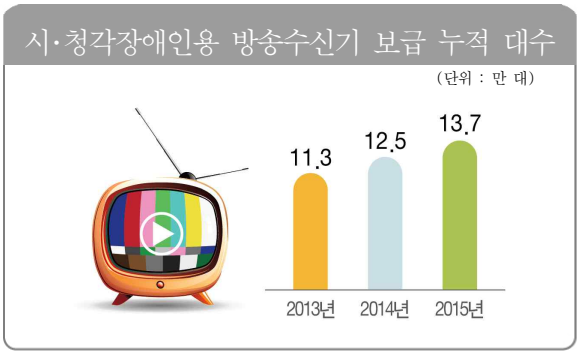

주) 수신기 보급은 누적대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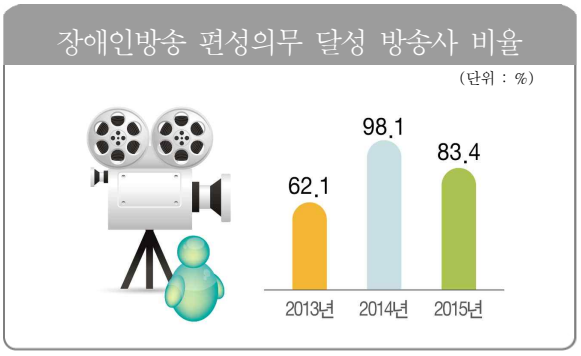

주) 2015년은 상반기 달성 비율임

□ 올바른 인터넷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 올바른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해 인터넷리터러시 체험활동과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운영 학교를 확대하여 운영하였습니다.

○ 인터넷 윤리교실과 한국인터넷드림단을 운영하는 등 인터넷 윤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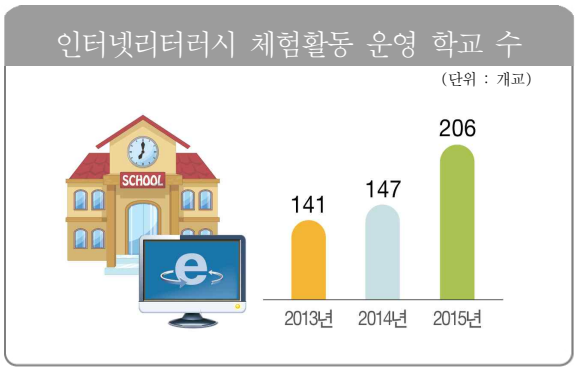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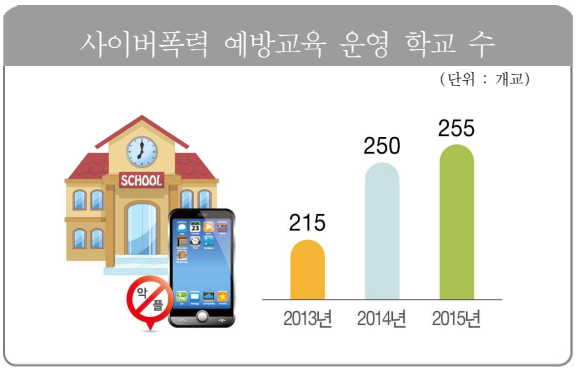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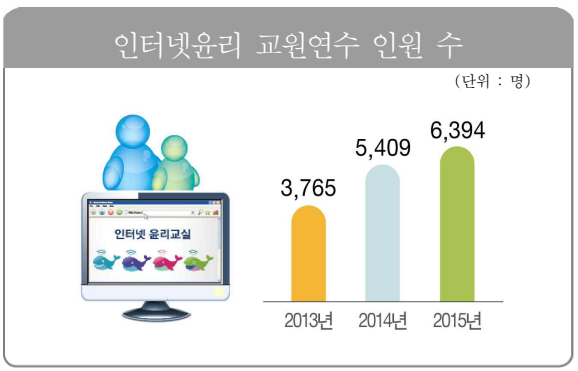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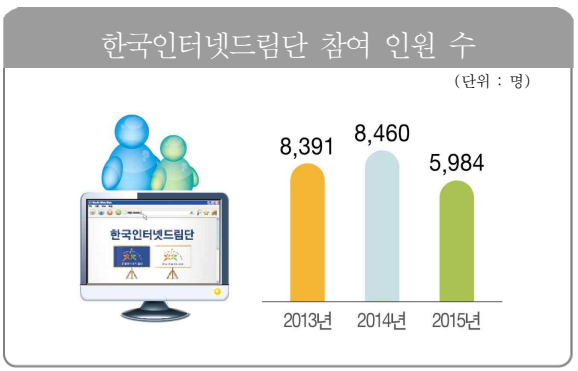

주) 2014년까지는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나,
2015년부터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참여인원 감소

□ 개인정보보호조치를 강화하고 방송통신서비스 이용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i-PIN 발급 2,338만 건, 휴대전화 본인 인증 5,893만 건으로 개인정보 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이메일 스팸 수신량은 1인 1일 평균 0.52건으로 나타났으며, 휴대전화 스팸 수신량은 0.15건으로 매년 감소하는 등 스팸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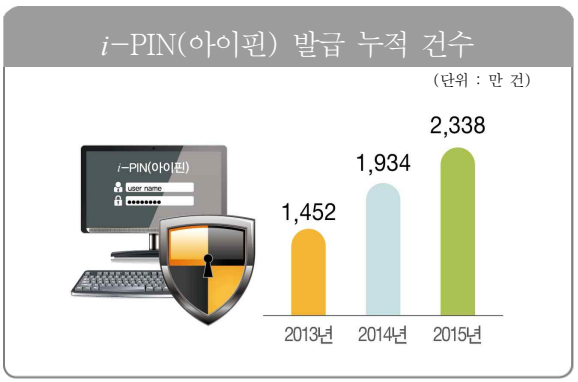

주) i-PIN 발급은 누적 건수임
주) i-PIN : 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를 대신하여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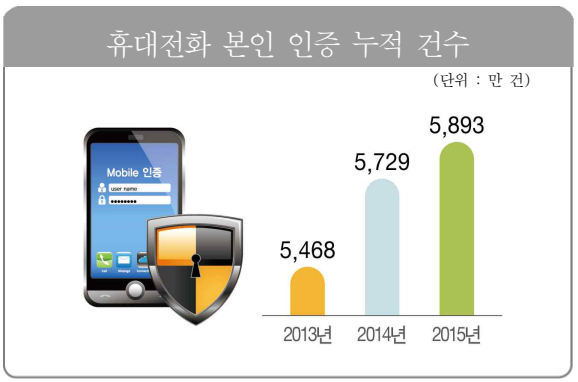

주) 휴대전화 인증은 누적 건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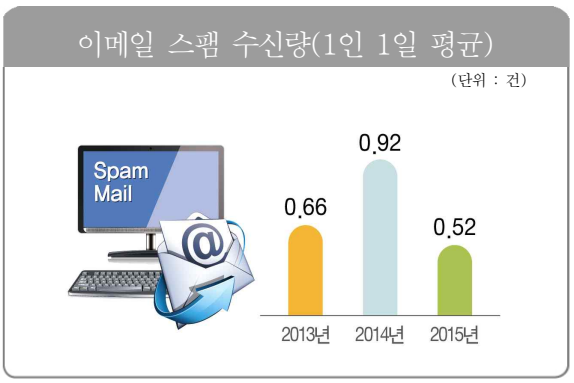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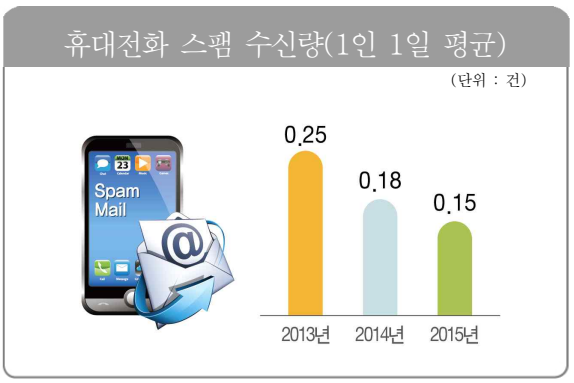

2. 2016년도 정책 추진방향

□ 방송의 공적책임 및 방송프로그램의 품격을 제고하겠습니다.

○ 공영방송의 재원 안정화를 위해 공영방송 재정연구 위원회를 구성해 수신료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어린이·청소년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등급제 개선 및 심의규정 반복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방송 심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 및 송출 지원, 공익광고 활성화 등을 통해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방송광고 법령 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법규준수를 유도하고, 시청자의 시청권 침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 미디어 다양성을 제고하고 미디어리터러시를 강화하겠습니다.

○ 전 국민 대상 계층별, 수준별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고 자유학기제 미디어교육을 확대 추진하는 등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저소득층 시청각 장애인용 TV수신기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스마트 수화방송 실험방송을 확대하는 등 방송 취약계층의 방송 접근권을 제고하겠습니다.

○ 최근 다양한 기기로 미디어를 시청하는 시청행태를 반영하여 올바른 콘텐츠 가치측정 방법을 마련하고, 미디어 다양성 증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지역·중소 지상파방송에 대한 재정지원과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역방송의 내실 있는 발전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 법 위반 기업 스스로 잘못을 시정하고 이용자 이익저해에 대해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점검·시정해 가도록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 단말기 유통법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결합상품 시장 등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 지상파방송사과 유료방송사간 재송신 분쟁 등 방송사업자 간 분쟁으로 인하여 시청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며, 사업자간 협의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겠습니다.

○ 방송시장 내 부당한 피해사례에 대해 상담해주는 전담 창구(금지행위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사업자간 불공정행위 및 시청자 이익 저해행위를 집중 점검·조사하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유해정보 차단을 위해 민간주도의 자율준수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대상별 참여형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에도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 **방송통신 이용자보호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생활밀접분야에 대한 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

○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할부금·약정 할인·위약금 등에 대한 계약서 표준 안내서를 마련하고 인터넷 플로팅 광고 개선 등 국민들이 방송통신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것들에 초점을 두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개인정보가 집적된 분야와 국민들이 자주 서비스 이용하는 분야, 위치정보가 빈번히 활용되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신규 방송통신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협찬고지 및 가상광고 제도개선 등을 통해 콘텐츠 제작재원을 확충하고 방송광고 제작의 창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중국 등 해외 주요국과 공동제작협정 체결 등을 추진하여 상호 협력을 증진하고 국내 방송프로그램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2017년 2월 수도권부터 시작되는 지상파 UHD 방송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10월 UHD 방송사업자를 허가하고 EBS의 다채널 방송(MMS) 도입을 위한 방송법령을 개정하여 국민들에게 고품질의 새로운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와 개인정보를 활용한 서비스 활성화를 균형있게 추진하겠습니다.**

○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 O2O 서비스, 맞춤형 광고 등 새로운 서비스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 이를 위해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조치의 근거를 신설하고 이러한 정보가 재식별화 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비식별화된 정보는 사전동의 없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위치정보 산업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차세대 비즈니스 모델 발굴, 맞춤형 컨설팅 제공 및 특허 출원 지원 등 위치정보 창업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 간이신고제·허가심사 기간 단축 등 위치정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아이디어를 가진 자가 쉽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위치정보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 **본격화되는 융합 환경에 부응하여 새로운 제도와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 OTT, 웹콘텐츠 등 신유형 서비스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신규 기법의 광고 활성화 정책과 차별화된 광고정책 등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추어 법·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Ⅱ 일반 현황 및 계획의 개요

1. 방송통신위원회 일반 현황

(1) 조 직 : 1실 3국 17과

(2) 정 원 ('16. 4. 현재)

총 계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218명	5명	212명	1명

(3) 부서별 기능

기 획 조정실	• 정책 및 예산 (기금 포함)의 종합·조정, 조직 및 정원 관리 • 대국회 업무, 법무·규제 개혁, 공영방송 임원 추천·임명 • 재무 관리, 부내 정보화, 정책 홍보 및 취재활동 지원 • 외국정부·국제기구 등과의 교류 및 협력
방 송 정책국	• 지상파 방송 및 종편·보도 방송채널 사용 사업자 정책 • 종합유선방송·위성방송 (재)허가 및 관련 법령 제·개정 시 사전 동의 • 방송용 주파수 관리, 방송사업자 불공정행위 조사·제재, 방송분쟁 조정
이용자 정책국	•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정책 수립 • 통신사업자 불공정행위 조사·제재, 통신 분쟁 재정·알선 • 개인정보 보호 정책 수립·시행 및 불법유해 정보 유통 방지 •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 송 기반국	•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및 방송 소외계층 지원 정책 수립 • 방송광고의 편성·운용, 방송광고 균형 발전 • 방송 프로그램 운용·편성, 방송평가 제도 운영 •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
운 영 지원과	• 인사, 교육훈련, 상훈 및 징계 • 연금, 급여 및 복리후생, 행정정보 공개, 산하단체 감사

(4) 재정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5	'16	'17	'18	'19
□ 재정사업 합계					
○ 총지출	2,204	2,273	2,802	2,704	2,573
(전년대비증가율, %)		(3.1)	(23.3)	(△3.5)	(△4.8)
□ 총지출 구분					
○ 인건비	155	167	179	190	205
(전년대비증가율, %)		(7.7)	(7.2)	(6.1)	(7.9)
○ 기본경비	41	42	43	45	46
(전년대비증가율, %)		(2.4)	(2.4)	(4.7)	(2.2)
○ 주요사업비	2,008	2,064	2,580	2,469	2,322
(전년대비증가율, %)		(2.8)	(25.0)	(△4.3)	(△6.0)
□ 예산					
○ (총)지출	556	556	859	858	891
(전년대비증가율, %)		(-)	(54.5)	(△0.1)	(3.8)
【일반회계】					
○ (총)지출	556	556	859	858	891
(전년대비증가율, %)		(-)	(54.5)	(△0.1)	(3.8)
□ 기금					
○ (총)지출	1,648	1,717	1,943	1,846	1,682
(전년대비증가율, %)		(4.2)	(13.2)	(△5.0)	(△8.9)
【방송통신발전기금】					
○ (총)지출	1,648	1,717	1,943	1,846	1,682
(전년대비증가율, %)		(4.2)	(13.2)	(△5.0)	(△8.9)

※ '15년은 예산기준, '16년 이후는 부처 예산요구안(기금운용계획요구안)에 포함된 요구 및 전망치를 사용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1) 시행계획의 주요특성

○ 방송통신위원회는 2013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주요 방송정책 및 방송통신 분야의 사후규제 기관으로 새롭게 구성됨

○ 2015년 4월에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국민에게 행복을 주고, 신뢰를 받는 방송통신실현”을 위원회의 비전으로 선포하여 국민행복에 기여하고자 함

○ 공영방송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방송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여 방송의 공공성 및 공익성을 강화하고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방송서비스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이 행복한 방송통신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인터넷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역기능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고,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개인정보 유출시 처벌강화 등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시행계획의 목표체계

○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과 공공복리를 증진하여 창조경제에 이바지 한다.”는 조직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공정하고 창의적인 방송통신 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제시

○ 성과목표와 관리과제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제를 선정하고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였음

○ **주요정책 세부과제**는

- “국민에게 행복을 주고 신뢰를 받는 방송 실현”을 위하여,
  1.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
  2. 신규 방송서비스의 시장안착 지원
  3.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시장질서 확립

- “국민을 위한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1.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및 권익증진
  2. 건전하고 안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

- “국민이 행복한 방송기반 환경 조성”을 위하여,
  1. 고품격 방송문화 기반 조성
  2. 방송접근 환경 개선
  3. 방송서비스 활성화

- “국민과 소통하는 방송통신행정 구현”을 위하여,
  1. 창조적인 방송통신 행정 관리
  2.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3. 방송통신정책 홍보 등 국제협력 지원 등

4개 전략목표와 11개 성과목표 및 30개 관리과제로 구성하였음

2016년 성과관리시행계획 목표체계

임무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과 공공복리를 증진하여 창조경제에 이바지 한다.

비전

국민에게 행복을 주고 신뢰를 받는 방송통신 실현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Ⅰ 국민에게 행복을 주고 신뢰를 받는 방송 실현

①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
- 지역방송 및 중소방송 활성화
- 방송재난 및 재난방송 관리 체계 강화

② 신규 방송서비스의 시장안착 지원
- EBS MMS 시장 안착 지원
- 지상파 UHD 방송 도입

③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시장질서 확립
-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 개선
- 방송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

Ⅱ 국민행복을 위한 이용자 보호

①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권익증진
- 통신시장 자율규제 환경조성 및 재정제도 활성화
-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 이동통신 유통질서 확립
- 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 강화

② 건전하고 안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
-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환경 조성
- 인터넷 윤리의식 제고 및 불법스팸 대응 강화

Ⅲ 국민이 행복한 방송기반 환경 조성

① 고품격 방송문화 기반 조성
-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향상
- 방송평가 세부기준 마련
-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위반 개선

② 방송접근 환경개선
-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강화
- 방송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
-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③ 방송서비스 활성화
- 방송콘텐츠 경쟁력 기반 확충
- 공동제작 협정 체결 추진
- 통합시청점유율 조사 기반 구축

Ⅳ 국민과 소통하는 방송통신정책 구현

① 창조적인 방송통신 행정 관리
- 정부3.0 변화관리를 통한 행정역량 강화
-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 사이버안전 및 비상대비 관리체계 강화

② 효율적인 행정관리와 신뢰받는 행정 지원
- 규제개혁 적극 추진
- 통합성과관리 효율성 제고
- 일잘하는 공직환경 조성

③ 방송통신정책 홍보 및 국제협력 지원
- 대국민·대언론 정책홍보 강화
-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3) 목표 및 과제 현황

(단위 : 개)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4	11	12	30	44

성과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조 연계
Ⅰ. 국민에게 행복을 주고 신뢰를 받는 방송 실현		
1.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		
	① 지역방송 및 중소방송 활성화	업무 1-④
	② 방송재난 및 재난방송 관리체계 강화	업무 1-①
2. 신규 방송서비스의 시장안착 지원		
	① EBS MMS 시장 안착 지원	국정 19-3 업무 3-②
	② 지상파 UHD 방송 도입	국정 19-3 업무 3-②
3.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시장질서 확립		
	①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 개선	업무 2-①
	②방송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	업무 2-①
Ⅱ. 국민행복을 위한 이용자 보호		
1.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및 권익증진		
	① 통신시장 자율규제 환경조성 및 재정제도 활성화	업무 2-①
	②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업무 2-①
	③ 이동통신 유통질서 확립	업무 2-①
	④ 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 강화	업무 2-③
2. 건전하고 안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		
	① 개인정보보호 강화	국정 81 업무 2-④
	②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환경 조성	업무 3-④
	③ 인터넷 윤리의식 제고 및 불법스팸 대응 강화	국정 46-2 업무 2-②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조 연계
Ⅲ. 국민이 행복한 방송기반 환경 조성		
1. 고품격 방송문화 기반 조성		
	①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향상	업무 1-①
	② 방송평가 세부기준 마련	업무 1-①
	③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위반 개선	업무 1-① 업무 2-①
2. 방송접근 환경개선		
	①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강화	국정 68-2 업무 1-②
	② 방송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	국정 50-2 업무 1-③
	③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업무 1-①
3. 방송서비스 활성화		
	① 방송콘텐츠 경쟁력 기반 확충	업무 3-①
	② 공동제작 협정 체결 추진	업무 3-①
	③ 통합시청점유율 조사 기반 구축	업무 1-④
Ⅳ. 국민과 소통하는 방송통신 행정 구현		
1. 창조적인 방송통신 행정 관리		
	① 정부3.0 변화관리를 통한 행정역량 강화	
	②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③ 사이버안전 및 비상대비 관리체계 강화	
2. 효율적인 행정관리와 신뢰받는 행정 지원		
	① 규제개혁 적극 추진	
	② 통합성과관리 효율성 제고	
	③ 일잘하는 공직환경 조성	
3. 방송통신정책의 홍보 및 국제협력 지원		
	① 대국민·대언론 정책홍보 강화	
	②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Ⅲ 세부 추진계획

전략목표 Ⅰ	국민에게 행복을 주고 신뢰를 받는 방송 실현

기 본 방 향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방송기술의 발전과 매체간 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UHD 방송, MMS 등 시청자의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방송시장에 안착되도록 지원 필요

○ 방송기술의 진화로 UHD 방송 환경이 도래하여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700㎒ 주파수 일부가 방송용으로 배정됨에 따라 세계최초 지상파 UHD 방송이 도입되어 조기 활성화 필요

○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난 예방과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안정적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난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

○ 지상파방송 재송신 관련 분쟁이 심화됨에 따라 방송시장 공정경쟁 시장질서 확립,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 개선 필요

○ 방송 및 방송광고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 조사 및 시정을 통해 시청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업자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 필요

◇ 그간의 성과

○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고 지역방송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방송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립·시행

○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심사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지상파·종편 등 매체·채널별 특성에 따른 (재)허가·승인 심사기준을 정비하여 사전 기본계획 의결

기 본 방 향

○ 700㎒ 주파수 일부를 방송용에 배정하여 지상파 UHD 방송 도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방통위·미래부를 중심으로 세계 최초로「지상파 UHD 방송 도입 정책방안」을 마련함

○ 방송재난 및 재난방송 기능 강화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을 개정하고, 터널·지하공간의 재난방송 수신환경 실태조사 등을 완료하여 방송재난 관리체계 확립 및 재난방송 강화 방안 마련

○ 방송 및 방송광고 시장에서 시청자 이익 저해행위 및 사업자간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실태점검, 조사 및 시정을 통해 공정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

◇ 중점추진 사항

○ 지역·중소방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콘텐츠 제작지원·유통 활성화, 방송종사자 교육 사업 추진

○ 방송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방송 실시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EBS 다채널방송이 시장에 안착되도록, 다채널방송의 법적지위 마련 등 관련 방송법령을 정비하고 EBS2 채널 시범서비스 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통해서 시청자 만족도를 제고

○ 지상파방송사의 투자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허가시 조건을 부과하여 UHD 방송시설 및 콘텐츠 제작기반 확충

○ 지상파방송 재송신 분쟁을 사전적으로 예방·조정하기 위한 지상파 방송 재송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청자 권익보호

○ 방송 및 방송광고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사례에 대해 점검 또는 조사를 통해 개선함으로써 시청자의 이익을 제고하고,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

기 본 방 향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마련으로 효율적인 방송재난 및 재난방송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중요 방송시설 안전점검을 확대하여 취약 요인을 사전 발굴 개선하여 중단 없는 방송 서비스 실시

◇ 전략목표와 임무간의 상관성

○ UHD방송과 MMS 등 시청자의 수요를 반영한 신규방송 서비스 도입을 통해 시청자가 양질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볼 권리를 강화하고, 사교육비 절감 등 지상파방송의 공적 역할을 제고

○ 무료보편 서비스인 지상파방송에 초실감방송인 UHD 방송을 도입하여 시청자들에게 고품격 방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청자 미디어 복지를 제고

○ 유료방송사의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통해 방송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 취약층의 행복을 증진하고, 거래 관계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차단을 통해 신뢰받는 거래환경 조성

○ 방송재난의 발생을 예방하고, 방송재난 발생 시 신속히 수습·복구함으로써 재난방송을 원활하게 수행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

<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 성과지표체계 >

(단위 : 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3	3	6	8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Ⅰ-1.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		①방송의 공익성 구현 만족도 조사
	① 지역방송 및 중소방송 활성화	①지역·중소방송 제작 지원 프로그램 만족도 ②지역·중소방송 제작 지원 프로그램 유통실적
	② 방송재난 및 재난방송 관리체계 강화	①재난방송관리 정책 만족도 ②방송재난 대비 중요 방송시설 안전점검률
Ⅰ-2. 신규 방송서비스의 시장안착 지원		① 신규방송서비스 활성화율
	① EBS MMS 시장 안착 지원	①EBS MMS 시범 서비스 시청자 인지도
	② 지상파 UHD 방송 도입	①지상파 UHD 방송 투자액
Ⅰ-3.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시장질서 확립		①방송시장의 공정경쟁 기반 조성률
	①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 개선	①지상파방송 재송신 가이드라인 추진율
	② 방송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	① 방송 및 방송광고 시장 불공정행위 개선율

성과목표 Ⅰ-1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

(1) 주요 내용

□ 지역방송 및 중소방송 활성화

○ 지역·중소방송이 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통해 지역민에 양질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발전기반을 조성

□ 방송재난 및 재난방송 관리체계 강화

○ 방송재난관리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방송 실시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3	'14	'15	'16			
방송의 공익성 구현 만족도 조사	신규	신규	신규	80점	정책 수혜자에 대한 만족도 측정	〔(지역·중소방송 제작지원 프로그램 만족도×0.5)+(재난방송 시청자 만족도×0.5)×100	설문조사 등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매체간 경쟁이 심화되었으나 전체 방송산업 성장률은 둔화되어 지상파방송의 광고시장 점유율 감소

- 지상파방송이 공익적 콘텐츠 제작 투자를 줄이고 광고수주 등 수익 창출에 집중함에 따라 방송의 공익성 훼손 우려 제기

○ 유료방송 및 모바일 기기 이용자의 증가에 따라 방송권역의 제한을 받는 지역 지상파방송의 위상과 기능은 약화

○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이 증가하고 있어 다양한 재난유형에 효율적 대응을 위한 방송재난 관리체계가 미흡

□ 갈등요인

○ 지상파방송의 공적책무 적극 수행을 위해서는 고품격 콘텐츠 제작 투자 확대 등이 필요하나 사업자는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非방송사업 등에 집중하는 등 공익성 구현에 소극적

○ 지역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존립 기반 구축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기대하나 정부의 예산상 지원에는 한계가 있어 대규모 지원은 곤란

□ 대응방안(갈등관리계획)

○ 지역방송에 대해 예산 및 정책 지원을 다각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중소방송사의 경쟁력 제고 및 자립기반 조성

○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 정보 전달과 안정적인 방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부처와 방송사업자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 재난 상황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전달 및 중단 없는 방송 서비스 제공

(4)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1 지역방송 및 중소방송 활성화(Ⅰ-1-①)

□ 추진배경 (목적)

○ 급변하는 방송환경 속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지상파 방송의 공적기능 제고 및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 필요 증대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의거하여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이 수립('15.6월)됨에 따라 지역방송의 지역성 · 다양성 구현을 위한 지원 강화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및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에 의거하여 지역방송의 공적책임 제고를 위한 '기금지원심사' 실시

○ 지역 · 중소방송의 프로그램 제작역량 강화 및 고품질 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지역 · 중소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추진

○ 지역방송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내·외 콘텐츠 마켓 참가 지원 및 지역방송 종사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제작지원 프로그램 공모 · 심사(기금지원심사 포함) 및 지원작 선정	'16.2~3월	
	지역방송 종사자 교육 관련 의견수렴(설문조사) 실시	'16.3월	
2/4분기	지역방송사 부산콘텐츠마켓(BCM) 참가 지원	'16.5월	
3/4분기	지역방송 종사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16.9월~12월	
	프로그램 제작지원 방송사 현장점검	'16.8월~9월	
4/4분기	지역방송사 아시아텔레비전 포럼(ATF) 참가 지원	'16.12월	
	제작지원 프로그램 시청자만족도 조사 실시	'16.12월~'17.1월	
연중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연7회 개최	수시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지역 · 중소방송 시청자) 우수한 지역 · 중소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함으로써 시청자에게 다양한 고품질 방송서비스 제공

- (지역 · 중소방송사) 프로그램 제작 · 유통 및 제작인력 교육을 통해 지역 · 중소방송사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 및 수익기반 창출

○ 이해관계자

- (중앙지상파방송사) 지역 · 중소방송 지원 정책이 중앙지상파 방송사와 이해관계 상충 시 양측의 의견조정 및 협조 필요

□ 기대효과

○ 지역·중소방송의 우수 프로그램 제작, 콘텐츠 유통 및 종사자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지역방송의 건전한 자립기반 조성 및 지역문화 창달 등에 기여

○ 지역성을 반영한 고품격 프로그램의 제작, 방영으로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지역민의 여론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지역 시청자의 프로그램 만족도를 향상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5	'16
행복한 방송통신 환경 조성(Ⅱ-2-일반재정①)			
① 방송인프라 지원(3131)	방송통신 발전기금	828	898
		(828)	(898)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308)		23	4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3	'14	'15	'16			
지역·중소방송 제작지원 프로그램 만족도	-	-	85.0	85.5점	전년도('15년도) 만족도 조사 결과를 감안하되, 만족도 조사는 주관적인 평가로서 예측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목표치 산정	리커트 척도를 이용한 시청자만족도 조사 (100점 만점 환산)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지역·중소방송 제작지원 프로그램 유통실적	-	6	12	17건	최근 2년간 유통실적 결과(12건)를 기준으로 제작지원 사업 예산증가율(43.5%) 반영	최근 2년간 제작지원 프로그램 중 유통된 프로그램 건수	사업수행 결과보고서

② 방송재난 및 재난방송 관리체계 강화 (Ⅰ-1-②)

□ 추진배경 (목적)

○ 효율적인 방송재난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방송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방송 실시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이 증가하고 있어 다양한 재난유형에 효율적 대응을 위한 방송재난 관리체계 확립 및 재난방송 강화 필요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 ~ 제40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 ~ 제28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제35조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고시) 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방송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방송으로 효율적인 방송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재난방송 실시 체계 확립

- 지진, 태풍 등 대규모 재난으로부터 사전에 방송시설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방송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터널,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음영지역에 라디오, DMB 중계설비 구축으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방송의 원활한 수신을 가능하도록 하여 재난피해 예방

-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을 통한 재난 예방·대비·대응 활동 전개, 신속한 피해상황 접수 및 전파 등 위기대응체계 구축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해빙기 대비 중요 방송시설 안전점검	’16.3월	
2/4분기	1분기 재난방송 실시결과 점검	’16.4월	
	201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16.5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정	‘16.6월	
	하절기 대비 중요 방송시설 안전점검	‘16.6월	
3/4분기	2분기 재난방송 실시결과 점검	‘16.7월	
4/4분기	2017년도 방송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	‘16.9월	
	3분기 재난방송 실시결과 점검	‘16.10월	
	동절기 대비 중요방송시설 안전점검	‘16.11월	
	2016년도 재난방송 수신용 방송중계설비 지원 사업 완료	‘16.12월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고시(안) 마련	‘16.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국민(방송서비스 이용자 포함) : 방송서비스에 대한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재난 상황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전달 및 중단없는 방송서비스 제공

○ 이해관계자

- 정부부처(국민안전처, 기상청 등), 방송사업자(지상파·종편·보도PP 등) :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 정보 전달과 안정적인 방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부처와 방송사업자의 유기적인 협력 필요

□ 기대효과

○ 종합적인 방송재난관리를 통해 각종 재난, 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신속한 재난방송 실시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

- 중요 방송시설에 대한 취약요인 개선, 안전점검 등을 통해 방송재난 체계 강화 및 중단 없는 방송 서비스 실시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15	'16
방송통신운영지원(Ⅱ-3-일반재정(1)) [2]			
① 방송재난관리(7131-307)[3]	일반회계	276	206
▪방송재난관리 강화		220	150
▪방송재난관리 활동지원		39	39
▪비상대비 및 보안업무 활동지원		17	17
방송인프라지원(Ⅱ-2-일반재정(1)) [2]			
① 재난방송 수신용 방송중계설비 지원(3131-310)[3]	방송통신발전기금	915	906
▪재난방송 중계시설 설치 지원		456	906
▪중계시설 연구용역		45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3	'14	'15	'16			
재난방송관리 정책 만족도	신규	80.3	83.2	83.5점	수혜자 및 이해관계자의 재난방송관리 정책에 대한 만족도 측정	(재난방송 시청자 만족도×0.6) + (재난방송 관련 유관기관 만족도×0.4)	설문조사
방송재난 대비 중요 방송시설 안전점검률	19.4	23.3	38.8	58.2%	중요 방송시설 취약·위협요인을 사전 발굴 개선하여 중단없는 방송 서비스 실시를 위해 설정	['16년도 안전점검 시설수(60개소)/ 안전점검 대상 총 시설수(103개소)] × 100	내부자료

성과목표 Ⅰ-2 신규 방송서비스 시장안착 지원

(1) 주요 내용

□ EBS MMS 시장 안착 지원

○ 국민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무료보편 지상파 방송서비스의 확대를 위해서 개시된 EBS MMS 채널*이 안착화 되도록 방송법령 정비 등 지원

* '15.2.11일부터 전국을 권역으로 초중학 학습 및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EBS2 시범서비스가 개시되었으며 시청가능가구가 1,800여만에 달함('15.12월기준)

□ 지상파 UHD 방송 도입

○ 방송기술의 진화로 보다 선명하고 실감나는 UHD 방송환경이 도래함에 따라, 지상파 UHD 방송서비스 도입을 위한 허가절차 등을 진행하여 UHD 서비스의 본격적 활성화 추진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3	'14	'15	'16			
신규방송서비스 활성화율	신규	신규	신규	80%	MMS 시범사업에 대한 정책수혜자 인지도 조사 실사와 UHD방송 목표대비 투자비율을 목표치로 선정	(MMS 시범서비스 시청자 인지도 조사×0.5)+(UHD방송 목표대비 투자비율×0.5)×100	만족도 조사 및 자상파방송사(KBS·MBC·SBS·EBS) 투자금액 자료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 주요 선진국(미국 '98년, 영국 '03년, 프랑스 '05년)에서 이미 다채널 방송이 실시되었고 국내 시청자 및 시민단체의 무료 보편적 방송 서비스의 확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다채널방송 개시 공감대 형성

- 과도한 국민 사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교육방송인 EBS에 '15.2월에 EBS-2 다채널방송 시범서비스가 개시된 이후, 조속한 본방송 전환을 통한 채널 안착이 요구되고 있음

○ 해외 주요 국가들은 UHD 방송의 성장가능성에 주목하여 표준화·실험방송 및 업계 간 제휴·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 UHD 산업 태동기에 국내에서는 선제적으로 지상파 UHD 방송을 도입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성 제기

□ 갈등요인

○ 지상파사업자 전체로 MMS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및 지상파 방송사와 방송 시장과 광고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도입 대상 사업자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유료방송사업자의 이해관계가 대립됨

○ 지상파 UHD 방송 개시 이후 본격적인 서비스 활성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장기 지원 및 규제개선 방안 수립이 필요함

○ 지상파방송사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행될 때, UHD 방송시설 및 콘텐츠 제작기반 확충을 통한 지상파 UHD 방송시장 안착 가능

□ 대응방안(갈등관리계획)

○ 방송의 공익성 제고의 필요성과 유료방송사업자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송시장에 영향이 적고 이미 시범서비스로 도입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EBS-2TV에 MMS를 우선 허용

○ 방통위, 미래부, 지상파방송사, 가전사, 학계,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상파 UHD 방송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파수 확보, UHD 방송 활성화, 시청자 지원 등에 관한 실무방안 논의

○ 방송사가 제출한 UHD 방송장비 및 콘텐츠 제작에 대한 투자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UHD 방송사업자 선정 시 허가 조건을 부과하고 허가 유효기간 동안 매년 이행실적 점검

(4)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1 EBS MMS 시장 안착 지원 (Ⅰ-2-①)

□ 추진배경 (목적)

○ 현재 방송법령에 MMS 채널 허용 규정이 없어 EBS MMS의 안정적인 방송을 위해서는 법령 개정을 통한 MMS 본방송 허용 근거규정 마련이 필요함

* MMS(Multi Mode Service) : 디지털 압축기술을 활용하여 1개 방송용 주파수대역(6Mhz)을 논리적으로 분할해 2개 이상의 채널을 제공하는 서비스

- 방통위는「다채널방송 도입방안」을 발표하였고 EBS를 다채널방송 도입 대상자로 검토하고 향후 관련법령 정비를 추진하기로 하였음('15.1.28.일)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방송법 개정을 통하여 다채널방송(MMS)의 방송법상 정의 및 채널 허용을 위한 승인제도 규정을 마련하여 MMS의 법적 지위 안정화 추진

※ MMS 채널을 지상파방송사업자가 기 지정받은 주파수대역을 활용하여 추가로 운용하는 채널(부가채널)로 정의

- MMS 채널이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방송법 및 하위 법령 정비를 통하여 편성·광고 등 채널운용에 규제방안을 마련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방송법」 일부개정안 관련 의견수렴	'16.3월	
2/4분기	「방송법」 일부개정안 마련	'16.4~5월	
	「방송법」 일부개정안 위원회 의결	'16.6월	
4/4분기	「방송법」 일부개정안 국회제출	'16.10월	
	MMS 채널 운용 규제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16.11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일반국민(시청자)

- 무료보편적 지상파 방송채널인 EBS-2TV는 주시청층인 초등·중등학생과 영어학습자에게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음

* EBS-2TV 시범서비스는 '15.2월부터 초중학 학습 및 영어교육 콘텐츠를 매일 19시간(06:00~익일 01:00) 방송중

○ 이해관계자 : 지상파방송사업자, 유료방송사업자, 시민단체

- (지상파방송) 무료지상파채널 확대를 통하여 디지털 방송 전환 혜택을 시청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제작 재원마련 대책과 함께 MMS 전면 허용 필요

- (유료방송) MMS 도입이 지상파방송에 대한 특혜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송 및 광고시장을 고려한 정책 추진 필요

- (시민단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MMS 본방송 도입과 채널 확대를 통한 보편적 방송서비스 강화가 필요함

□ 기대효과

○ (사교육비 절감) EBS-2 채널 안착을 통하여 초·중학 학습 및 영어 교육 프로그램 제공이 확대되어 국민 사교육비 부담 완화가 기대됨

* EBS-2TV 시범서비스의 연간사교육비 절감효과는 약 1,750억원으로 추정됨 (미디어미래연구소, '15.8월)

○ (시청자복지 제고) EBS-2TV 다채널방송 도입으로 무료로 제공되는 지상파방송서비스가 확대되어 시청자 채널 선택권이 확대됨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3	'14	'15	'16			
EBS MMS 시범서비스 시청자 인지도	신규	신규	신규	70점	방송법 등 MMS 근거 법령 마련이 추진 중이고 16년도 EBS2 채널 신규 프로그램 제작지원 예산 규모가 적으므로 70% 수준이 적절함	EBS MMS 시범서비스 시청자 인지도	외부 전문기관의 시청자 만족도 조사 결과 자료

2 지상파 UHD 방송 도입 (Ⅰ-2-②)

□ 추진배경 (목적)

○ 선명하고 실감나는 UHD 방송 환경이 도래하여 차세대방송을 둘러싼 국가 간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 우리나라는 700㎒ 주파수 일부를 방송에 배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세계 최초로 지상파 UHD 방송을 도입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17.2월 수도권 지역의 지상파 UHD 본방송 개시를 위해 허가 기본계획 수립(심사항목·배점, 심사기준, 허가조건 등), 허가 심사 등 허가 절차를 진행하여 UHD 방송사업자 선정

- 사전에 방송사별 채널번호 배정안을 마련하고, 허가 시에는 UHD 방송시설·콘텐츠에 대한 지상파방송사의 투자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허가 조건으로 부과

○ 지상파 UHD 방송의 원활한 도입과 본격적인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실무방안 논의 진행

- 방통위·미래부·방송사 등이 참여하는 '지상파 UHD 추진위원회' 구성, 지상파 UHD 수신환경 개선 TF 운영, 지상파 UHD 방송 프로그램 인정기준 마련 등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2/4분기	지상파 UHD 방송 허가심사 기본계획 수립	'16.5월	
	지상파 UHD 방송 수신환경 개선 관련 TF 운영	'16.6월	
3/4분기	지상파 UHD 추진위원회 구성	'16.7월	
	방송사별 수도권 채널번호 배정안 마련	'16.7월	
4/4분기	수도권 지상파 UHD 방송사업자 허가	'16.10월	
	지상파 UHD 방송프로그램 인정기준 마련	'16.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일반국민(시청자)

- 지상파 UHD 본방송이 개시되면, HD 방송보다 4배 선명한 UHD 초고화질 방송 서비스를 누구나 무료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됨에 따라 시청자들의 미디어 복지 제고

○ 이해관계자 : 중앙 지상파방송사업자(KBS·MBC·SBS·EBS)

- 정부의 지상파 UHD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규제개선 방안과 지상파 UHD 방송서비스의 수행 주체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경우 협조가 필요

□ 기대효과

○ 세계 최초 UHD 방송 시작으로 한류 확산, 방송콘텐츠 수출 증대 및 UHD TV와 디스플레이 등 연관 고부가가치 산업 활성화가 예상됨

○ 무료 보편적 방송 서비스인 지상파 UHD 방송이 도입됨에 따라 시청자의 미디어 복지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3	'14	'15	'16			
지상파 UHD 방송 투자액	신규	신규	신규	358억원	'15.12월,「지상파 UHD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마련시 지상파 방송사가 제출한 UHD 시설·장비 및 콘텐츠에 대한 '16년도 투자계획(511억원) 대비 70% 이상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UHD 시설·장비 투자액 + UHD 콘텐츠 투자액	지상파방송31개사 투자금액 (KBS, MBC, SBS, EBS, 지역MBC17개사, 지역민방 9개사, OBS)

성과목표 Ⅰ-3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시장질서 확립

(1) 주요 내용

□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 개선

○ 지상파방송 재송신 관련 분쟁이 심화됨에 따라 방송시장 공정경쟁 시장질서 확립,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해 재송신 제도 개선 추진

□ 방송 및 방송광고 시장 불공정행위 시정

○ 방송 및 방송광고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사례에 대해 점검 또는 조사를 통해 개선함으로써 시청자의 이익을 제고하고,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

- 유료방송사가 거짓고지·중요사항 미고지 방식으로 방송상품을 판매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계약을 유도하는 행위에 대한 점검을 통한 개선

- 홈쇼핑PP의 납품업자에 대한 방송법상 금지행위 규정 신설에 따라 홈쇼핑PP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태점검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3	'14	'15	'16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기반 조성률(%)			신규	100%	신설지표로서 가이드라인 제시 및 불공정개선을 목표치로 설정	〔(재송신 가이드라인 추진율×0.5)+(불공정행위 개선 건수÷개선 목표×0.5)〕×100	보도자료 또는 결과보고서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 방송환경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 IPTV와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의 디지털 가입자 증가로 인해 지상파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신호의 재송신에 대한 저작권 분쟁 심화

- 2013년 초반까지 이어진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 간 법적 분쟁 결과, 지상파방송 재송신에 따른 저작권 및 저작 인접권에 대한 인식에는 상호 공감

○ 최근 케이블 가입자는 감소하는 반면, IPTV 가입자는 증가하는 추세 속에 유료방송 사업자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입자 확보를 위한 과열 마케팅 등 불공정행위 가능성 상존

○ 홈쇼핑PP가 납품업자에 대하여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분량 및 제작비용을 불공정하게 결정, 취소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방송법상 금지행위로 규정

□ 갈등요인

○ 지상파방송사와 유료방송사 간 재송신 분쟁이 방송시장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현재 지상파 및 유료방송사 등 당사자간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자칫 방송중단(Black-Out) 우려 제기

- VOD 송출 중단, 방송광고 송출 중단 위협 등으로 지상파방송 재송신 분쟁으로 파생된 갈등으로 인한 시청자 피해 우려 현실화

○ 불공정행위 조사 업무의 특성상 규제기관과 사업자간 이해관계와 입장차이로 인해 사실관계 규정, 법리 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현장조사권 등 조사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 대응방안(갈등관리계획)

○ 사업자간의 갈등에 따른 시청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업자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

- 지상파방송 재송신 관련 협상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지상파 방송 재송신 가이드라인을 마련 등 제도개선 추진

○ 법규상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면서 최대한 사업자의 협조를 얻어 점검 및 조사 추진

(4)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 개선 (Ⅰ-3-①)

□ 추진배경 (목적)

○ 지상파방송 재송신 관련 분쟁 발생 사전 예방, 방송시장 공정경쟁 시장질서 확립,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해 재송신 제도 개선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지상파방송 재송신 관련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지원하는 '지상파 방송 재송신 협의체'를 운영

○ 지상파방송사와 유료방송사 간 재송신 분쟁 관련 쟁점 및 지상파 방송 재송신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 지상파방송 재송신 관련 협상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사 간 재송신 협상절차와 재송신 대가 산정시 고려요소 등을 명시한 '지상파 재송신 가이드라인' 마련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지상파 재송신 협의체 회의	'16.1월	
2/4분기	지상파 재송신 제도 개선방안 연구	'16.4월	
	지상파 재송신 협의체 회의	'16.5월	
	지상파 재송신 협의체 회의	'16.6월	
3/4분기	지상파 재송신 제도 개선방안 연구 중간점검	'16.8월	
	지상파 재송신 협의체 회의	'16.9월	
4/4분기	지상파 재송신 가이드라인 시행	'16.10월	
	지상파 재송신 제도 개선방안 연구	'16.11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지상파방송사업자, 유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 IPTV사업자 · 위성방송사업자 등), 시청자

-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 개선으로 방송사업자간 재송신 관련 분쟁을 사전 예방 또는 최소화 할 수 있고, 시청자 권익보장에 기여

○ 이해관계자 : 지상파방송사업자, 유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 IPTV사업자 · 위성방송사업자 등)

-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는 자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위원회의 재송신 제도개선을 반대할 가능성도 있음

□ 기대효과

○ 지상파 재송신 분쟁 해결을 위한 재송신 가이드라인 마련 등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통하여 제도개선 추진에 활용

○ 지상파방송 재송신 관련 협상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상파 재송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장에 제시

- 사업자간 분쟁 최소화를 도모함으로써 시청자 권익보호에 기여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3	'14	'15	'16			
지상파방송 재송신 가이드라인 추진율	신규	신규	신규	75%	지상파의 재송신 협의체 불참 등으로 지상파 재송신 가이드라인 마련의 어려움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마련 여부와 가이드라인에 대한 만족도를 성과지표로 설정	(재송신 가이드라인 마련×0.5) + (지상파방송 재송신 가이드라인 만족도×0.5)	위원회 안건 홈페이지 신문 기사 설문조사 등

② 방송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 (Ⅰ-3-②)

□ 추진배경 (목적)

○ 방송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를 통해 시청자 이익을 보호하고, 사업자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

- (시청자 이익 보호) 가입자 확보를 위한 유료방송사업자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상품에 대한 거짓고지 및 가입동의 없는 서비스 제공 등 시청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영업행위 근절

- (공정경쟁 환경 조성) 홈쇼핑PP-납품업자, 유료방송사와 PP간 불공정 거래행위 시정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립하고, 중소 사업자가 고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플랫폼 사업자인 유료방송사와 지상파방송사(재송신료), PP(채널계약, 프로그램 사용료) 및 홈쇼핑PP(송출수수료) 간 계약조건 등 분쟁 발생 시 적극 대응

○ ’15년 방송분쟁조정, 재산상황 공표, 보편적 시청권 금지행위 관련 방송법 개정에 따라 하위규정 정비를 통해 공정경쟁 환경 조성 기반 구축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홈쇼핑PP의 납품업자에 대한 방송법상 금지행위 규정 신설에 따라 홈쇼핑PP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태점검

○ 유료방송사가 거짓고지·중요사항 미고지 방식으로 방송상품을 판매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계약을 유도하는 행위에 대한 실태점검

○ 방송사업자, IPTV사업자, 미디어렙의 부당한 행위가 방송법, IPTV법, 미디어렙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상담을 통해 영세 사업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금지행위 규정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금지행위 상담센터 운영

○ 재산상황 공표 대상에 IPTV 사업자를 추가하는 등 재산상황 공표 자료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보편적 시청권 금지행위 관련 방송법 시행령 또는 고시 개정 추진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SO, 위성방송 불법영업 관련 실태점검	'16.3월	
	홈쇼핑PP 금지행위 신설 관련 홍보 및 간담회 개최	'16.3월	
2/4분기	IPTV 불법영업 관련 실태점검	'16.6월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	'16.6월	
	금지행위 상담센터 운영	'16.6월	
	홈쇼핑시장 불공정행위 관련 설문조사	'16.6월	
	유료방송시장 불공정행위 관련 설문조사	'16.6월	
3/4분기	방송분쟁조정 관련 방송법 시행령 개정	'16.9월	
	재산상황 관련 방송법 시행령 개정	'16.9월	
4/4분기	방송광고시장 불공정행위 관련 설문조사	'16.12월	
연중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개최(4회)	연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혜택을 누리는 서비스 이용자

- 불공정거래 근절, 분쟁조정 등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통한 혜택을 누리는 방송사업자, IPTV사업자 및 방송광고판매대행자 등

- 재산상황 자료를 정책수립, 사업계획 및 연구 등에 활용하는 정부, 학계 및 산업계 종사자 등

○ 이해관계자

- 방송법령, IPTV법령, 미디어렙법령상 금지행위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분쟁조정 및 재산상황 제출 대상이 되는 방송사업자, IPTV사업자 및 방송광고판매대행자 등

□ 기대효과

○ 사업자간 과열경쟁 해소 및 불공정행위 개선을 통해 요금 및 서비스 품질 등 공정한 방송시장 경쟁환경 조성

○ 홈쇼핑PP-납품업자, 유료방송사-PP 간 거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지위 남용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 차단을 통해 중소·영세 사업자의 부당한 피해 예방 및 권익 보호

○ 방송서비스 이용 등에 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노인 등 방송시청 주권 취약층의 피해 예방을 위한 유료방송사의 불법 영업행위 개선 및 근절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3	'14	'15	'16			
방송 및 방송광고 시장 불공정행위 개선율				100%	신설 지표로서 과거 유사한 실적을 감안하여 개선계획을 설정하고, 이를 모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	실태점검 또는 시정조치 등을 통한 불공정행위 개선실적 ÷ 개선계획(3건)	공문, 사실조사 보고서 등

전략목표 II	국민행복을 위한 이용자 보호

기 본 방 향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 확산 등 사업자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됨에 따라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시장질서 확립 및 이용자 피해예방 강화

○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지원, 불법 음란물 유통방지 및 사이버 폭력예방 등을 통해 안전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

◇ 그 간의 성과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 관련 제재기관을 방통위로 일원화 하여 규제의 실효성 제고

○ 이용자 후생 증대와 사업자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 방안」마련

○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대한 엄정한 조사·제재와 자율적인 법규 준수 유도 등 법 안착 노력을 통해 단말기 지원금 경쟁에서 요금과 서비스 경쟁으로 전환

○ 결합판매 허위·과장 광고, 과다경품, 이동통신 다단계영업 등 불공정행위 실태점검 강화를 통해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 계층별 피해예방 교육, 대국민 피해예방 문자메시지 발송, 매체를 통한 홍보, 이용자 전용 홈페이지 운영 등을 통한 이용자 역량 강화

○ 인터넷 상 주민번호 수집·이용 금지, 과징금 부과금액 상향 등 사업자 책임성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을 개선하고, 개인정보보호 조치 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사·제재를 통해 안전한 개인정보 이용환경 조성

기 본 방 향

○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웹하드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의무화, 청소년 대상 스마트폰 유해정보 차단 SW 보급 확대, 사이버안심존 운영학교 확산 등을 통해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 촉진

◇ 중점 추진내용

○ 통신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등에 대한 엄중한 제재는 지속적으로 실시하되,

- 이용자 피해구제, 법규준수 의지 강화 등 사업자의 자율 시정을 유도하는 제도 도입을 통해 시장의 자율규제 환경 구축 추진

○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및 활용방법 교육 실시를 통해 이용자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통해 자발적인 이용자 보호환경 유도

○ 빅데이터 등 개인정보 활용 서비스 확산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조화할 수 있는 법 제도 정비

○ 국민생활 밀접분야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집중점검, 개인정보 관리체계 인증(PIMS) 활성화 등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

○ 사이버폭력 예방 및 인터넷 윤리교육 실시, 범국민 캠페인 전개 등 선진 인터넷 이용문화를 확산하고 불법음란물 유통 방지, 불법 스팸 차단 시스템운영 등을 통해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 전략목표와 임무와의 상관성

○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재제는 엄정하게 하되,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유도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지원과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를 조성하여 사업자와 이용자가 모두 상생하는 국민행복 실현

<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성과지표체계 >

(단위 : 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2	3	7	11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Ⅱ-1.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및 권익증진		① 통신시장 불공정행위 개선률
	① 통신시장 자율규제 환경조성 및 재정제도 활성화	① 통신시장 자율규제 제도 도입 기업수 ② 이용자 재정처리 단축일수
	②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	① 통신시장 불공정행위 개선율
	③ 이동통신 유통질서 확립	① 이동통신 유통구조 개선율
	④ 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①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교육 성취도 ② 무선데이터 서비스 개선도
Ⅱ-2. 건전하고 안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		①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시정명령 이행률 ② 불법스팸 대응지수
	① 개인정보보호 강화	① PIMS 인증 획득 사업자수 ② 국내외 웹사이트 주민번호 일평균 노출 페이지수
	②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 환경 조성	① 긴급구조 플랫폼 활용 만족
	③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	① 인터넷 윤리의식 향상도 ② 1인당 1일 스팸 수신량

성과목표 II-1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권익증진

(1) 주요 내용

○ 급변하는 방송통신융합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정비

○ 금지행위 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사·제재는 엄정하게 하되 기업 스스로 관계법령 준수 의지 및 이용자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토록 유도하여 시장의 자율성 제고

○ 방송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복잡·다양한 서비스의 충분한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 지원 및 역량 강화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3	'14	'15	'16			
통신시장 불공정행위 개선율	-	-	신규	100%	유·무선 통신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태점검 및 시정조치는 통신시장의 건전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므로 동 지표를 성과지표로 설정	실태점검 및 시정조치를 통한 개선실적/개선계획(목표 : 7건)	내부자료, 제재조치 관련 상정안건, 실태점검 보고서 등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 이동통신사업자의 케이블방송 사업자 인수합병 신청, 해외 플랫폼 사업자(넷플릭스)의 국내시장 진입 등 방송통신 융합 가속화

- 이통사, SO, 제조사, 포털, CP 등 사업자간 경쟁심화 전개

○ 결합상품 등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가 복잡·다양하게 신설됨에 따라 신유형의 이용자 이익 침해 발생, 통신사업자의 위반행위 증가 추세

<통신서비스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관련 행정처분 현황>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행정처분 건수	41	57	68	131
과징금·과태료(천원)	16,278,930	180,400,480	90,939,790	39,260,860

* 단말기유통법('14.10월 시행) 위반행위 포함

○ 또한,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확대는 이용자 선택의 폭을 확대한 반면, 합리적인 선택은 보다 어려워지고 위약금, 해지절차 등 이용자 보호 사각지대 발생 우려

□ 갈등요인

○ 복잡·다양한 서비스에 대하여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 지원과 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자의 경영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보호와 경쟁 정책의 조화 필요

○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명령, 과징금 등을 부과해도 이용자가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손해배상 등 별도의 소송을 거쳐야 하므로 이용자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음

-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조사·재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통신시장의 자율규제 환경을 조성하여 이용자 보호 강화 필요

○ 단말기유통법 안착 및 성과 가시화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페이백 등 불법 보조금 경쟁이 지속되고 일부 언론,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 잔존

□ 대응방안

○ 가입·이용·해지 등 이용 전 단계별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를 세분화 하여 시장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이용자 피해 예방

○ 자율준수프로그램, 동의의결제 등 시장의 자정기능을 회복하고, 이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루어 질수 있는 제도 신설

○ 결합상품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이용자 후생제고를 위해 부당한 시장지배력 전이 여부, 금지행위 위반여부 중점 조사

○ 단말기유통법의 그동안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토대로 제도 보완 추진

○ 사이버폭력, 음란물 유통 등 인터넷 부작용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추진과 불법스팸 차단 대응 등을 통해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

○ 금감원, 경찰청 등 통신서비스 모니터링 관계 기관과 피해사례를 공유하고, 이용자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이용자 교육 및 정보 제공 강화

○ 무선데이터 과금 검증 강화,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확대, 계약서 표준 안내서 도입 등 이용자 보호 환경 조성

(4)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1 통신시장 자율규제 환경조성 및 재정제도 활성화(Ⅱ-1-①)

□ 추진배경 (목적)

○ 정부의 일방향적인 제재가 아닌 사업자의 자율적인 법 준수 이행 및 이용자피해 구제를 유도하여 통신시장의 자율적 규제환경 조성

○ 결합상품 등 복잡·다양해지는 방송통신서비스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공정성 제고

○ 사업자와 이용자간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여 이용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법 위반 전 단계에서 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교육 등 내부시스템(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한 사업자가 법 위반시 과징금 감경 등의 혜택 부여

*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예시 :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및 내부 감독체계 구축, 자율준수 편람 제작·배포, 법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자율준수 교육, 문서관리체계 구축 등

○ 조사 단계에서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위반 행위를 중지하고 시정방안을 제시하여 조사기관이 시정방안의 타당성을 인정하면 사건을 종결하도록 하는 동의의결제 도입

○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시장분석을 위해 방송통신결합시장에 대한 경쟁상황평가를 실시하여 결합판매를 둘러싼 영향 분석

- 시장 획정방안, 결합상품을 통한 시장지배력 전이 판단기준 등 결합시장 분석틀 연구·개발 및 평가 시행

○ 주요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통신분쟁 관련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 방안 도모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사업자 간담회	'16.1월~3월	
2/4분기	결합시장 경쟁상황평가 연구반 운영	'16.4월~12월	
	자율준수프로그램 지침(안) 마련	'16. 4월	
	재정 관련 통신사업자 간담회 개최	'16. 5월	
3/4분기	결합시장 경쟁상황평가 연구반 운영	'16.4월~12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마련	'16. 8월	
	재정 관련 통신사업자 간담회 개최	'16. 9월	
4/4분기	사업자의 자율준수프로그램 지침 도입 및 운영 실적 조사	'16. 11월	
	결합시장 경쟁상황평가 결과 마련	'16. 12월	
	재정 관련 통신사업자 간담회 개최	'16.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및 사업자

- 이용자 : 사업자가 실효적인 이용자 구제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별도로 손해배상 등 후속 분쟁을 제기할 필요가 없어짐

- 사업자 : 사업자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 및 실질적인 피해구제 방안 제시로 사후규제 대응을 위한 사회적 비용·시간 감소

○ 이해관계자

-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시 사업규모에 따라 실행이 용이한 대기업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리책임자 임명 등의 업무 부담 가중으로 인해 실행이 어려운 중소기업간 격차 발생

- 통신사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배상을 신청하는 재정제도는 사업자-이용자간 첨예한 이견발생 상존

□ 기대효과

○ 통신사업자의 자율규제 촉진을 통해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가 사후규제 대응에 소요하는 시간·비용 등을 감소시켜 통신시장의 경쟁력 강화 촉진

○ 결합시장 경쟁상황평가 결과를 토대로 방송통신 결합판매와 관련한 제도개선, 정책수립 등 공정경쟁 환경 조성 촉진

○ 동의의결제도 도입 및 재정제도 활성화로 이용자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손해배상) 제공 등 이용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3	'14	'15	'16			
통신시장 자율규제 제도 도입 기업수	-	-	신규	3개사	법적근경 통신시장의 자율규제 환경조성을 위한 자율준수프로그램 제도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 중심의 기업수를 성과목표로 설정	자율규제 제도 도입 기업수	실태점검결과, 내부자료
이용자 재정처리 단축일수	-	-	신규	3일	'15년도 재정사건 평균처리일수(49일) 보다 3일(7%) 단축을 목표로 설정 ※ 법정처리일수는 90일임	'15년도 재정사건 평균처리일 수 - '16년도 재정사건 평균처리일 수	재정사건 처리대장, 내부자료 등

2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Ⅱ-1-②)

□ 추진배경 (목적)

○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를 통해,

-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

○ 공정경쟁 효과 및 이용자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불공정 행위에 대한 선제적 대응조치 및 제도개선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를 금지행위로 포섭하여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자율적 법규준수 환경조성

○ 유선·결합통신 시장에서 공정경쟁이나 이용자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경품의 과다지급,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한 실태점검 실시, 법위반행위 확인 시 조사·제재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금지행위 연구반회의체 구성·운영	'16.1.~3월	
	KT, 기업인터넷시장 불공정행위 제재	'16.2월	
	다단계지침 준수여부 점검	'16.3월	
2/4분기	결합상품 경품 과다지급 사실조사	'16.5월	
3/4분기	결합상품 허위과장광고 자율준수협의체 구성·운영	'16.7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16.8월	
4/4분기	알뜰폰 도매제공관련 실태점검	'16.11월	
	기업인터넷시장 공정경쟁 실태점검	'16.11월	
연 중	통신시장 동향분석 보고서 발간 (4회 이상)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이용자 : 불법지원금(과다경품), 허위·과장광고 등 이용자이익 저해행위를 시정, 개선하여 이용자 편익 제고

- 사업자 : 불공정 행위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자간 소모적인 마케팅 경쟁에 드는 비용을 서비스품질 향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

○ 이해관계자 :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및 관련 지침 등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 대리점 및 유통·판매점 등

□ 기대효과

○ 통신 시장 모니터링 강화 및 조사 체계 개선을 통해 시장 투명성 확보, 이용자 차별 해소 및 요금과 서비스 경쟁 강화 유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15	'16
공정경쟁환경 조성(Ⅰ-1-일반재정①)			
① 공정경쟁 환경 조성(2141)	일반회계	43.03	45.33
▪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 환경 조성(301)		40.81	42.27
- 서비스분야별 시장모니터링		16.13	17.78
▪ 방송통신시장 환경조사 분석(302)		2.22	2.56
- 방송통신시장 상시 조사분석체계 운영		1.12	1.1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3	'14	'15	'16			
통신시장 불공정행위 개선율			22.2%	40%	이용자피해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결합상품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불공정행위 개선 결과로 보아 성과지표에 반영 ※ '15년도 허위·과장광고 평균준수율은 22.2%로 '16년도는 적극적인 이행을 위해 경품지급 수준을 점검항목에 추가하고 전년대비 20%증가한 40%로 목표설정	결합상품 가이드라인 준수율 ※ 결합상품 가이드라인 준수항목 : 경품 지급 수준 및 허위·과장광고 수준	내부자료,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3 이동통신 유통질서 확립(Ⅱ-1-③)

□ 추진배경 (목적)

○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으로 이동통신시장의 건전한 발전 및 이용자의 권익 보호 강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단말기유통법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토대로 제도 보완 등을 추진

- 경품 및 카드사 연계 단말기 할인 등 시장 활성화 방안 시행, 20% 요금할인제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한 현장점검 등 실시

○ 20% 요금할인제 미고지, 가입거부 등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및 이용에서 나타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위법행위 유형에 대한 조사 확대로 이동통신 유통구조 개선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현상경품 및 카드사 연계 단말기 할인 활성화 등 시장활성화 방안 마련	'16. 1월	
	단말기유통법 종합 성과 점검	'16. 3월	
2/4분기	20%요금할인제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한 현장점검 및 개선 방안 마련	'16. 4월	
	단말기유통법 제도 보완 추진	'16.1~6월	
3/4분기	이용자 체감 밀접 분야에 대한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실태점검 실시	'16. 8월	
4/4분기	민원 신고 유통점의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 실태점검	'16. 11월	
연중	불공정행위 실태점검 및 사실조사	'16.1~12월	
	통신시장 동향 분석 보고서 발간 (4회 이상)	'16.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서비스 이용자 : 단말기 불법 지원금 등으로 인한 이용자 차별 해소, 20%요금할인제 가입 활성화로 이용자 편익 제고 도모

- 통신사업자 : 사업자간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으로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기업 이미지 제고

○ 이해관계자

-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및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전기통신사업자, 제조사, 유통점 등

□ 기대효과

○ 통신사업자간 통신서비스 이용요금 및 서비스 품질에 기반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권익 증진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3	'14	'15	'16			
이동통신 유통구조 개선율			94%	95%	이용자 차별금지 및 이동통신 시장의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해 제정된 단말기유통법의 세부 항목별 평균 준수율을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 개선 결과로 보아 성과지표로 선정 ※단말기유통법 시행직후 ('14.10월~12월)의 준수율 (92.3%)을 토대로 '15년도의 시장 안정화 기조등을 고려하여 95% 목표설정	단말기 유통법 세부항목별 평균 준수율 * ※ 단말기유통법 세부항목 : 지원금 공시게시 위반, 지원금 과다지급, 특정 요금제 강요, 판매점 사전 승낙서 게시 위반 등	내부자료,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등

④ 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Ⅱ-1-④)

□ 추진배경 (목적)

○ 정보취약계층 및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방송통신서비스 활용방법 및 피해예방·구제방안 등의 교육을 통해 이용자 역량강화 및 안전한 통신서비스 이용환경 조성

○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해 각 사업자가 시행하고 있는 이용자 보호 노력을 평가하고 결과공표를 통해 자발적인 이용자 보호업무 개선 유도

○ 무선인터넷 이용자의 피해예방·구제 및 이동전화사업자의 공정 경쟁을 위한 무선인터넷 서비스 등 개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장노년층, 장애인, 농어민, 다문화가정, 정보취약계층 및 일반인 대상 방송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 지자체 및 정보취약계층 관련 기관 등과 교육협력 체계 구축, 계층별 교육 콘텐츠 제작, 강사단 육성을 통한 전국적 교육 보급

○ 통신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시 이용자에게 중요사항(할부금, 약정할인, 위약금 등)을 쉽게 안내할 수 있는 '계약 표준 안내서'도입

○ 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대상 서비스를 확대하고,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평가 시행 및 결과 공개

○ 스마트폰·테블릿PC 및 무선데이터 트랙픽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예방 및 불편사항 등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방송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기관 협의	'16.2월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지표 개선	'16.3월	
	무선인터넷 웹 브라우저별 데이터 소모량 측정 및 분석	'16.3월	
	방송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콘텐츠 제작	'16.3월	
	통신서비스 '계약서 표준안내서' 사업자 및 전문가 회의	'16.3월	
2/4분기	방송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강사단 발대식 및 집합교육	'16.4월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사업자 간담회	'16.4월	
	무선인터넷 '데이터 활용 정보' 제공	'16.6월	
3/4분기	피해예방 홍보용 영상 제작 및 CATV 송출	'16.8월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실시	'16.8월	
	다문화가정 e-learning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16.9월	
4/4분기	무선인터넷 교통, SNS 등 주요앱 데이터 소모량 측정 및 분석	'16.10월	
	통신서비스 '계약서 표준안내서' 마련	'16.12월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종합 및 공개	'16.12월	
	방송통신서비스 교육만족도 집계 및 분석	'16.12월	
연중	방송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실시	연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를 통해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가 이용자를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이용자 편익 증진

○ 이해관계자 : 통신사업자

-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업무평가와 이용자 이익저해행위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자의 적극적인 이용자 권익 보호 기반 마련

□ 기대효과

○ 정보취약계층 및 모든 국민의 방송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확대를 통해 이용자 역량제고 및 통신서비스 선택권 보장

○ 통신사업자들의 이용자 보호업무에 대한 관심제고 및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통한 이용자 권익 증진 및 만족도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15	'16
공정경쟁환경 조성(Ⅰ-1-일반재정①)			
① 공정경쟁 환경 조성(2141)	일반회계	43.03	45.33
▪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 환경 조성(301)		40.81	42.77
-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		10.89	12.38
- 모바일 앱 결제 피해예방 및 이용자 보호		4.99	5.99
- 무선인터넷 과금검증 체계 운영		4.80	2.3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3	'14	'15	'16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교육 성취도	-		신규	10%	계층별 교육 이전의 교육성취도와 교육 후 교육성취도 조사결과 성취도를 성과지표로 선정하고 10%증가를 목표로 설정	[(계층별 교육 후 역량 향상 점수 / 교육 전 역량 점수)] x 100	설문지를 이용한 서베이(Survey) 및 교육 결과보고서
무선데이터서비스 개선도			신규	80%	무선데이터 과금검증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설정	[(검증측정건수/계획(30건))×0.4+(제도개선 실적/계획(3건))×0.6]×100	과금검증 및 제도개선 결과보고서

성과목표 II-2 건전하고 안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

(1) 주요 내용

○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IoT) 등 개인정보 활용 서비스 분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 정비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활성화,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등을 통해 개인정보 자율규제 환경 조성 촉진

○ 개인정보 활용이 많은 개인정보 직접분야, 국민생활 밀접분야 등에 대해 보호조치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환경 조성

○ 청소년 대상 맞춤형 인터넷 윤리교육 실시, 사이버안심존 운영학교 확대, 대국민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해 인터넷 윤리의식 제고

○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 운영 확대를 통해 불법스팸 유통 최소화와 신종 불법스팸 차단 대응 등을 통해 이용자의 불편 해소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3	'14	'15	'16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시정명령 이행률	신규	91%	100%	100%	과거 추세와 '15년도 실적이 100%인 점을 고려(폐업사업자 제외)하여, 지속적인 이행점검 강화를 통해 '16년에도 이행률이 100%가 되도록 목표 설정	[(시정명령 이행건수/시정명령 건수) X 100]	시정명령이행점검 관련 자료
불법스팸 대응지수	신규	100%	100%	100%	3개의 세부지표를 달성해야 하는 당위지표로 구성	[(스팸 수신량 달성도*) x 0.4 + (스팸 대응 기술 보급 달성도**) x 0.4 +(스팸 정보 공개달성도***) x 0.2] x 100	휴대전화·이메일 스팸 수신량 조사결과 및 내부자료

* 스팸 수신량 달성도 : 1인당 1일 휴대전화 및 이메일 스팸 수신량 목표 달성도
** 스팸대응 기술보급 달성도 : 게시판 스팸차단서비스 보급 확대 및 화이트 도메인 등록 달성도
*** 스팸정보 공개 달성도 : 스팸 유통현황 분석결과 공개 및 스팸 관련 정책홍보 발표 달성도

① 1인당 1일 스팸 수신량 달성도(40%) - '16년 목표 : 0.67통

※ 외부 통계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휴대전화·이메일 각각 1,500명의 패널을 통해 1인당 1일 스팸 수신량을 측정

o 최근 3년간('13년~'15년) 휴대전화 및 이메일의 연간 1인당 1일 스팸 수신량(합계) 실적치와 정책효과를 감안하여 '15년 실적(0.70통) 대비 5% 더 상향한(하향목표*) 0.67통으로 목표치 설정

* 스팸 수신량은 목표대비 실적이 낮게 나와야 달성도가 높게 나오는 하향지향 지표임

- 최근 3년간 실적 : 0.86통('13년) → 0.94통('14년) → 0.70통('15년)

* 연도별 실적치는 매년 발표되는 상·하반기 실적의 평균치를 말함

· 휴대전화 스팸 수신량 : 0.27통('13년) → 0.20통('14년) → 0.17통('15년)

· 이메일 스팸 수신량 : 0.59통('13년) → 0.74통('14년) → 0.53통('15년)

② 스팸 대응 기술 보급 달성도(40%) - '16년 목표 : (1) 2,274개 (2) 48,677건

(1) 인터넷상 스팸 게시글 차단서비스 보급 수 (목표 2,274개)

※ 인터넷상 불법스팸 게시글을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서비스로서 보급·확산을 위한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인터넷 게시글 스팸을 차단하기 위해 웹서버에 스팸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한 이용자 수 임

o 최근 3년간('13년~'15년)의 실적치와 정책효과를 감안하여 '15년 실적(2,067개) 대비 10% 상향한 2,274를 목표치로 설정 : 최근 3년간 실적 : 963개('13년 누적) → 1,363개('14년 누적) → 2,067개('15년 누적)

(2) 화이트 도메인 등록건수 (목표 : 48,677건)

o 최근 3년간('13년~'15년)의 실적치와 정책효과를 감안하여 '15년 실적(46,359건) 대비 5% 상향한 48,677개를 목표치로 설정 : 최근 3년간 실적 : 41,442건('13년 누적) → 44,018건('14년 누적) → 46,359건('15년 누적)

③ 스팸 정보 공개 달성도(20%) - '16년 목표 : 6회

(1) 대외 정책홍보

o 불법스팸 관련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분기 1회 이상을 관련 정책 홍보 필요(4회)

(2) 스팸 유통현황 분석결과 보고서 발표

o 휴대전화 문자스팸과 이메일 스팸의 발송량·수신량 등의 현황을 조사·분석한 유통현황을 대외에 발표함으로써 불법스팸 차단에 적극 대응(2회)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 사이버공간 확장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경로가 다양화되고 지속적인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 뽐뿌 195만명 ('15.9월), 배달통 11만명 ('14.12월) 등

○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개인정보를 활용한 서비스의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개인정보 유노출에 대한 우려 증가

○ 주민번호 수집 금지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도 준수를 위하여 중소·영세 사업자 지원 및 인식 제고 필요

○ 청소년의 스마트기기 이용 확산에 따라 SNS를 통한 유언비어 유포, 언어폭력, 음란물 유통 확산 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

○ 정부의 불법스팸 대응이 강화됨에 다라 기존 스팸차단시스템을 우회하는 신종스팸이 지속적으로 출연

□ 갈등요인

○ 중소·영세 사업자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미준수하는 사례 발생

○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함에 따라 규제 준수에 따르는 비용 증가로 인해 사업자들의 규제 저항 예상

○ 영세사업자들의 개인정보 관리 인식 부족으로 인한 소극적 태도 및 실태조사 인력 부족으로 관리에 한계 발생

○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회구성원의 자발적 참여 확대, 민관 협력 강화 등 범국민 공감대 확산 필요

□ 대응방안

○ 개인정보 법규위반에 대한 조사·제재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활용 서비스분야에서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도 정비

○ 중소·영세사업자 대상 현행 및 개정법령에 대한 인지도 제고

○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필요성과 법적 의무 등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교육·홍보 실시

○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부모·교사 대상 스마트폰 유해정보 차단, 스마트폰 중독, 사이버폭력 예방에 대한 필요성 및 인식 전환 관련 사이버안심존 교육 확대 실시('14년 127개→'15년 165개)

○ 인터넷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국민 참여형 공모전 등을 개최하여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확산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 점차 지능화·조직화돼가고 있는 신종스팸 대응을 위해 기술 개발 및 연구 등을 추진하고, 법·제도 규제 정비

(4)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1 개인정보보호 강화(Ⅱ-2-①)

□ 추진배경(목적)

○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개선, 교육·홍보 등 인식제고를 통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 조성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내지 제31조, 제47조의3, 제52조, 제64조

○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분야 개인정보 취급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강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빅데이터·사물인터넷 등 신규 ICT 산업 활성화와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조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

○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및 「디지털 사이니지 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발

○ 사업자·이용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 추진

○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인증 체계인 APEC CBPRs 가입 추진

○ 개인정보 유·노출 대응시스템 운영을 통해 웹사이트 상에 노출된 개인정보 및 불법유통 게시글을 신속히 탐지·삭제*

* 유·노출 대응시스템의 검색주기 단축(2주→3일), 검색엔진 개선 등을 통해 개인정보 및 불법유통 게시글 탐지 실적이 증가될 전망

○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한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PIMS)제도 운영

○ 개인정보 집적·국민생활 밀접분야 등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조치 집중 점검

○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유효기간제(1년), 주민번호 파기 관련 법령 준수여부 점검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스마트폰앱 접근권한 관리 실태점검	'16.1~3월	
	사업자·이용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16.1~12월	
	「정보통신망법」 및 하위법령 개정 추진	'16.1~12월	
	개인정보 관리 실태점검 및 조사원 교육	'16.1~12월	
	생활밀접분야 앱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16.2~4월	
2/4분기	검경통보, 민원신고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16.1~12월	
	위치정보 분야 법규준수 여부 실태점검	'16.1~12월	
	주민번호 파기 의무 이행점검	'16.5~6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마련	'16.6월	
	개인정보 노출대응 시스템 고도화 추진	'16.4~12월	
3/4분기	국내·외 개인정보 노출, 불법유통 게시물 검색 및 삭제	'16.1~12월	
	개인정보 관리체계 인증제도(PIMS) 운영	'16.1~12월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안) 마련	'16.7월	
	인터넷 내정보 지킴이 캠페인 실시	'16.8월	
	웹호스팅사 등 개인정보 집적분야 실태점검	'16.8~9월	
4/4분기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이행점검	'16.10~11월	
	본인확인기관 정기점검 실시	'16.10~12월	
	「디지털 사이니지 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16.12월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16.12월	
	'16년 시정명령 이행점검	'16.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 개인정보 보호조치 및 실태조사 강화를 통해 이용자가 온라인 및 스마트폰 앱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구축

○ 이해관계집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

  · 실태조사 강화를 통해 사업자가 사전에 자율적으로 보호조치를 구축하고,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여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예방

-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업 및 연구단체 :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분야 투자 확대로 관련 보안기술 업체와 연구기관의 전문성 향상

□ 기대효과

○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법규 강화 및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역량 제고를 통해 개인정보의 보호수준 향상 도모

○ 주민번호 수집·이용 금지 및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정책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 예방

○ 개인정보 유·노출 신속 대응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 3차 피해 위험 최소화

○ 개인정보의 자율관리 환경 조성 및 관련 사업자 지원을 통해 국민의 사생활 보호 및 이용환경의 안전성 강화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강화를 통해 사업자들이 사전·사후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15	'16
안전한 정보이용 환경조성(Ⅰ-1-정보화①)			
① 안전한 정보이용환경조성(2151)	일반회계	107.52	150.41
▪ 개인정보보호 강화(302)		105.67	89.9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3	'14	'15	'16			
PIMS 인증 획득 사업자 수	28	27	41	46개	전년 실적(41개사) 대비 10% 상향된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 ※ 대상사업자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온라인 사업자)	기존 PIMS 인증 획득 기업 수 + 당해년 PIMS 인증 신규 획득 사업자 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PIMS) 심사를 통해 자격을 획득한 사업자 수
국내외 웹사이트 주민번호 일평균 노출 페이지 수			신규	35개	16년 신규지표로 작년대비 검색대상에 국외 웹사이트를 추가하고 검색주기를 단축(14일→3일)등 주민번호 유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 추가	$\frac{(a_1+\cdot+a_n)+(b_1+\cdot+b_n)}{n}$ n=점검일수 ai(국내), bi(국외)=점검일에 주민번호가 노출된 웹페이지 수	구글 검색엔진에 노출된 주민번호 점검 (전문S/W 활용)

②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환경 조성(Ⅱ-2-②)

□ 추진배경 (목적)

○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위치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사생활 보호와 위치정보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 도모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스마트폰 앱을 대상으로 위치정보 무단 수집 등 위치정보 불법 활용여부를 모니터링하여 건전한 위치정보 활용 기반 마련

○ 위치정보 관련 사업자의 위치정보보호 관련 보호조치 컨설팅 및 교육 수행을 통해 법·제도 자율적 준수환경 조성

○ '위치정보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정보기반서비스사업자의 허가·신고절차 안내 및 애로사항 지원

○ 위치정보 관련 사업화 지원을 통해 스타트업 기업의 사업자원으로 위치정보를 활용토록 하여 새로운 ICT 산업기반 마련

○ 국내·외 위치정보 산업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위치정보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향후 관련 정책 수립 시 활용

○ 정확하고 끊김없는 실내·외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운영 및 긴급전화에 대한 정밀측위 시험을 통해 긴급구조 관련 위치정보 활용의 실효성 제고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스마트폰 앱 개인·위치정보보호 법규준수 모니터링	'16.1~12월	
	중소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 등 애로사항 지원	'16.1~12월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 활용플랫폼 운영 및 실내·외 Wi-Fi AP DB구축	'16.1~12월	
2/4분기	중소·영세 위치정보 사업자를 위한 온·오프라인 컨설팅	'16.4~12월	
	위치정보 산업 관련 동향 및 실태조사	'16.5~12월	
	긴급구조 위치측위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실증시험 방안 연구 및 시험	'16.4~12월	
	위치정보사업자 대상 위치정보보호수준 제고 상반기 교육	'16.6월	
3/4분기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 비즈니스모델 경진대회	'16.8~10월	
4/4분기	비즈니스모델 경진대회 입상팀 대상 교육·특허 지원 등 추진	'16.10~12월	
	위치정보사업자 대상 위치정보보호수준 제고 하반기 교육	'16.11월	
	실내·외 Wi-Fi AP DB 위치측위 신뢰도 및 정확도 검증	'16.1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중소·영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 위치정보를 활용한 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컨설팅

- 일반국민(긴급구조 신청자) : 기존의 GPS, 기지국방식의 긴급구조 위치측위의 기술적 한계를 보완하는 Wi-Fi 신호기반의 위치측위로, 긴급구조시 빠르고 정확한 측위 가능

○ 이해관계집단

- 위치정보/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 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보호 조치 강화를 통해 개인·위치정보 침해사고 등 근본적 예방

□ 기대효과

○ 스마트폰 앱 모니터링 범위 확대를 통한 위치정보 불법 활용 근절 및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에 기반한 위치정보 서비스 활성화 지원

○ Wi-Fi를 활용한 위치측위 긴급구조 실효성 제고를 통한 국가 안전망 제고 효과 제고

○ 중소·영세 위치정보 사업 경쟁력 제고 및 신규사업 활성화 지원으로, 신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위치정보 산업의 창조적 선순환 체계 마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15	'16
안전한 정보이용 환경조성(Ⅰ-1-정보화①)			
① 안전한 정보이용환경조성(2151)	일반회계	170.52	150.41
▪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환경 조성(301)		6.0	6.0
② 안전한 정보이용환경 조성(3251)	방발기금	26.28	38.38
▪ 위치정보 활용기반 구축(304)		9.88	17.3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3	'14	'15	'16			
긴급구조 플랫폼 활용 만족도			신규	70점	긴급구조 위치정보 플랫폼을 활용하는 긴급구조기관의 시스템 만족도를 지표로 설정	위치정보 플랫폼 수요자(경찰청, 소방방재청) 대상 만족도 조사	설문지를 이용한 서베이(survey)* * 서비스타임의 신속성, 긴급구조 활용도 등 포함

3 인터넷 윤리의식 제고 및 불법스팸 대응 강화(Ⅱ-2-③)

□ 추진배경 (목적)

○ ‘아름다운 인터넷세상 만들기’와 같은 범국민 캠페인 실시와 청소년 대상의 인터넷윤리교육 등을 통해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 및 윤리의식 제고

○ 사이버안심존 운영으로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위험성을 학교 및 가정에서 조기에 인지하게 하고, 학부모·교원 대상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청소년의 올바른 스마트폰 이용 환경 조성

○ 지속적인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운영 확대를 통해 불법스팸 유통을 최소화하고 스팸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 해소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올바른 인터넷윤리의식 함양을 위해 대상별 맞춤형 교육 실시

- 유아동·초등학생·장애청소년·학부모·교원 등을 대상으로 예술체험 공연 교육, 강사파견형 순회강연 등 실시
- 교육 현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대상 교안공모대회 및 수요자 중심의 콘텐츠 제작

○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 활동 전개

-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주간을 지정·운영하여 선포식, 언론홍보 및 이용자 참여형 캠페인 기획·추진

- 국민참여형 공모전 ‘2016 인터넷 윤리대전*’ 개최

* 접수분야 : UCC, 지면광고, 4컷만화, 그림일기, 슬로건 등

○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사이버안심존 운영 확대

-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 확산에 따른 역기능 인식제고와 자녀 지도를 위해 지속적으로 학부모 및 교사 교육 실시

-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상담관리프로그램*을 보급하여 사이버안심존 전국 확대

* 상담관리프로그램 : 청소년 이용행태 정보를 통해 중독 위험 학생을 초기 파악 후 예방 및 상담·치료 등의 지도 관리 가능

○ 지속적인 스팸유통 현황 공개를 통해 ISP사업자 등의 자발적 스팸감축을 유도 및 알뜰폰사업자의 실시간 스팸 차단체계 확대

○ 신종스팸인 음성스팸 차단을 위해 민·관 협력을 확대하여 음성스팸 차단시스템의 운영 효과를 제고하고, 수시 발생 불법스팸에 대한 효율적·체계적인 상시 대응 강화

○ ‘16.11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8항(수신동의 의사 확인) 시행에 따른 법 준수 계도 등 대국민 스팸방지 인식 제고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독자전산 알뜰폰(MVNO) 사업자 실시간 차단서비스(M-RBL) 추진	1월	
	○ 인터넷윤리교육 지원 대상학교 모집 및 선정	3월	
	○ 사이버안심존 참여 학교 신청·접수	3월	
	○ '15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 분석 및 공개	3월	
2/4분기	○ 인터넷윤리 및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추진(계속)	4월	
	○ 학부모·교원 대상 사이버안심존 상반기 교육	4월~7월	
	○ '16년 상반기 휴대전화 및 이메일 스팸 수신량 조사	5월	
	○ 인터넷윤리교육 콘텐츠 개발	5월	
3/4분기	○ 교안공모대회 운영	8월	
	○ 학부모·교원 대상 사이버안심존 하반기 교육	9월~11월	
	○ '16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 분석 및 공개	9월	
4/4분기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8항에 대한 법 준수 홍보	연중	
	○ 인터넷 윤리대전시상식 개최	11월	
	○ '16년 하반기 휴대전화 및 이메일 스팸 수신량 조사	11월	
	○ 사이버안심존 우수사례집 제작 및 운영 우수학교 시상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

○ 이해관계자

- 통신사업자 및 포털사업자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사이버안심존 참여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사 및 학부모

□ 기대효과

○ 맞춤형 인터넷윤리 교육 확산과 범국민 참여 제고로 바람직한 인터넷 사용문화 확산

○ 사이버안심존 전국 확대로 가정과 학교에서 청소년의 안전한 스마트폰 이용 환경 조성

○ 불법스팸 차단 대응 강화로 도박·불법대출 등의 스팸 유통 방지, 불필요한 정신적 피해 예방, 원치 않는 과금 발생 등 이용자의 불편 해소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15	'16
안전한 정보이용 환경조성(Ⅰ-1-정보화①)			
① 안전한 정보이용환경조성(2151)	일반회계	170.52	150.41
▪ 바람직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303)		29.29	29.29
▪ 불법스팸대응체계구축(304)		29.56	25.13
② 안전한 정보이용환경조성(3251)		26.28	38.38
▪ 클린인터넷 이용환경 조성(306)		10.40	15.00
▪ 사이버폭력예방 및 피해자지원활동강화(307)		6.0	6.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3	'14	'15	'16			
인터넷 윤리의식 향상도	-	-	신규	5%p	윤리교육 이전의 윤리의식도와 교육 후 윤리의식 조사결과 의식 향상도를 성과지표로 선정하고 5%p증가를 목표로 설정	[(윤리의식 교육 후 의식도 향상 점수 / 윤리의식교육 전 의식도 점수)] x 100	설문지를 이용한 서베이(Survey) 및 인터넷윤리교육 결과보고서
1인당 1일 스팸 수신량 ※ 본 지표는 목표 대비 실적이 낮아야 달성도가 높은 하향지표임	0.91	0.94	0.70	0.67통	과거추세·정책효과 등을 고려 '15년 실적 대비 5% 감축	외부 통계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휴대전화·이메일 각각 1,500명의 이용자가 수신하는 스팸량을 측정	스팸 수신량 조사 결과(연 2회 측정)

전략목표 Ⅲ	국민이 행복한 방송기반 환경 조성

기 본 방 향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방송의 공적책임은 방송서비스의 본질적 가치로 미디어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확보되어야 함

- 다매체·다채널의 스마트 미디어 시대 상업적 시청률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방송의 품격과 공적책임 유지는 더욱 중요

○ 방송사 간 시청률 경쟁심화 등에 따라 방송에서의 막말이나 선정·폭력적 방송프로그램이 여전하므로 방송프로그램이 청소년 등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방송 프로그램의 품격 제고 추진 필요

○ 방송광고·협찬고지 위반사업자에 대한 사후규제를 통해 방송광고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

○ 스마트 시대 미디어는 지식습득, 문화향유, 관계망 형성, 소통 등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중요성은 증대되나 세대 간, 계층 간 미디어 격차는 심화되는 양상

-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 국민 대상 미디어교육 및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확대 필요

○ 지상파-외주제작사간 방송프로그램 제작 계약 시 수익배분 등 일부 중요사항을 관행에 의존함에 따라 불공정 거래 논란 발생

- 외주제작 거래 관행을 개선하여 상생의 콘텐츠 제작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를 추진

○ 방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및 방송의 공적 책임 확보를 위해 재허가·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방송평가 실시

○ 한류콘텐츠의 해외진출 확대와 방송협력 강화를 위해 FTA를 활용하여 중국 등과 공동제작 협정 체결 추진 및 공동제작 협정에 따라 제작된 프로그램의 국내물 인정기준 마련

○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N스크린(스마트미디어)을 통한 방송시청 증가, 방송시장에서의 OTT 서비스 이용 증가 등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필요

◇ 그간의 성과

○ 올바른 방송언어 사용을 위한 청소년 언어순화 특집프로그램 및 공익성 스팟 제작·송출, 방송언어가이드라인 발표(방심위 공동) 및 '아름다운 언어문화 확산을 위한 어울림 한마당' 개최 등을 통한 자율규제 강화 유도

○ 방송사업자들의 방송광고 법규 준수 여부 감독 및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실시

○ 시청자의 미디어 접근 및 참여 능력 향상을 위한 미디어 교육, 미디어 체험·제작 활동 지원,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 지원 등 시청자 권익증진 기반 강화

○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시청자미디어센터 추가 설립('14년 강원·대전·인천센터, '15년 서울센터) 및 센터를 총괄하는 시청자미디어재단 설립

○ 장애인방송 의무화로 지상파방송 및 유료방송까지 장애인방송 제공을 확대, 장애인용 TV 보급 등을 통해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제고

○ 국정과제인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의 일환으로 혁신형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방송광고 제작 및 송출비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마케팅 역량 향상에 기여

○ 시청점유율 조사 결과를 기초로 텔레비전 방송채널을 운영하는 총 217개 방송사업자의 375개 채널에 대한 시청점유율을 산정·발표

- 시청점유율 조사 패널규모를 4,0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고, N스크린 시청기록 산출조사를 시범 실시하여 조사의 신뢰성 제고

○ 재허가·재승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방송평가를 실시하여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 및 품격 향상을 위한 사업자의 자발적 노력 유도

- 방송환경 변화에 부합하고 매체별 특성을 반영하는 등 방송평가 규칙 개정을 통해 방송평가 실효성 제고

◇ 주요 추진 내용

○ 막말, 선정, 폭력 등 저품격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사후심의와 함께 방송심의사례집 제작.배포, 심의책임자 회의 개최, 자체 심의기구 운영실태 점검 등을 통해 방송사의 자율규제 기능 강화를 유도

○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준수여부,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 위반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재처분을 통해, 방송의 공익성·시청자의 시청권을 보호하고 대국민 실천의식 확산이 필요한 비상업적 공익광고에 대한 적극 편성 유도

○ 방송법 개정('15.6.22)으로 특수관계자 편성비율 제한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순수외주비율을 규정하는 시행령 및 고시 개정 추진

○ 불공정한 외주제작 거래 유형, 표준계약서 사용 장애요인 등을 파악하여 외주제작 거래 관행 개선 추진

○ 한중 공동제작 협정체결을 위해 양국의 국장급 공무원(한국 : 방통위, 중국 : 광전총국)을 반장으로 하는 공동연구반 운영하여 협정을 체결하고 협정에 따라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의 국내물 인정기준 및 절차를 국가별 협정에 근거하여 마련

○ 방송평가 규칙 개정('16.1.22.)에 따른 평가 세부기준 개정안 마련 및 '15년 방송실적에 대한 방송평가 실시

○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및 확충, 세대·계층별 미디어교육·체험 지원, 자유학기제 미디어교육 및 미디어 거점학교 운영 등 미디어 꿈나무 양성지원 확대,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 지원 강화

○ 시·청각 장애인 등 방송소외계층을 위한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및 장애인용 TV 보급을 통해 정보격차 해소 및 방송접근 환경 개선

○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 방송광고 제작지원을 확대하고, 방송광고에 대한 맞춤형 원스톱 컨설팅 및 교육을 통해 방송광고 지원의 효과성 제고

○ 스마트미디어 보급 확대로 매체이용행태가 변화함에 따라 고정형 TV위주의 시청점유율 제도 개선

◇ **전략목표와 임무간의 상관성**

○ 방송의 품격 향상, 방송평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방송의 공익성을 제고하고, 시청자가 방송에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대하여 시청자 미디어 복지 및 권익증진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

○ 시의적이고 체계적인 방송광고 모니터링 및 사후규제를 통해 방송광고 및 협찬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시청자의 시청권을 보호

○ 방송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고 품질 제고를 통해 상생의 콘텐츠 제작 생태계 활성화 기반 조성

○ 방송광고를 통한 중소기업 성장을 도모하여, 방송광고시장과 중소기업간 상호 성장의 선순환 구조 확립

○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를 반영하는 통합시청점유율 제도 마련, 스마트미디어 시장을 포괄하는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추진으로 미디어 다양성 기반 조성

<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성과지표체계 >

(단위 : 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3	3	8	12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Ⅲ-1. **고품격 방송문화 기반 조성**		①방송 공익성 제고율
	①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향상	①방송프로그램의 품격 향상도
	② 방송평가 세부기준 마련	①방송평가 만족도
	③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위반 개선	①방송광고 법규 준수율
Ⅲ-2. **방송접근 환경개선**		①방송접근환경 개선율
	①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강화	①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 수 ②자유학기제 미디어교육 지원학교 수
	② 방송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	①방송수신기 저소득층 누적 보급률 ②장애인방송 이용자 만족도
	③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①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용도 ②제작지원 중소기업 매출성장율
Ⅲ-3. **방송서비스 활성화**		①방송서비스 활성화 구현율
	① 방송콘텐츠 경쟁력 기반 확충	①방송콘텐츠 판매액 ②공동제작 활성화 기반 구축율
	② 통합시청점유율 조사 기반 구축	①통합시청점유율조사 신뢰성 개선도

성과목표 III-1 고품격 방송문화 기반 조성

(1) 주요 내용

○ 시청률 경쟁 심화 등에 따라 시청자 권익 증진, 정서 함양을 위해 방송 품격 제고 추진

○ 방송프로그램 내용·편성 및 운영 등에 대한 '15년도 방송평가를 실시하고, 방송평가 규칙 개정에 따른 세부기준 개정안 마련

○ '선완화 후규제' 원칙에 따라 광고총량제 및 협찬고지 규제 개선 등 규제완화를 통해 방송광고 시장을 활성화 하고, 법규 위반에 대한 사후규제를 강화하여 시청자의 시청권을 효과적으로 보호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3	'14	'15	'16			
방송 공익성 제고율	신규	신규	71.2	72.4	방송의 공익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관리과제별 성과지표의 달성률로 구성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향상 기여도 × 0.3) + (방송평가 만족도 × 0.3) +방송광고 법규준수율 × 0.4)	내부자료 및 사업결과 보고서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 지나친 시청률 경쟁에 따른 자극적인 방송·막말 방송 등으로 인해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강화에 대한 시청자의 요구 증대

○ 다양한 사회적 이슈와 관련한 방송프로그램의 객관성·공정성 논란 및 종합편성 등 채널 간 시청률 경쟁 심화에 따른 막말·저품격 방송프로그램의 확대 가능성 존재

○ 방송사의 방송 공적 책임 준수를 위해 정부차원의 제재와 함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측정 방안 필요

□ 갈등요인

○ 방송사업자는 방송내용의 공정성·공공성 유지와 공적 책임 준수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한 방송내용 심의 필요성이 요구되나, 과도한 심의제재는 방송프로그램 수준 제고에 역효과 유발 우려

○ 방송평가 결과가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일정 비율 반영되는 등 방송사업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세부기준 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자별로 의견이 상이할 수 있음

□ 대응방안

○ 저품격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사후심의와 함께 자체 심의기구 운영실태 점검 등을 통해 방송사의 자율규제 기능 강화 유도

○ 방송평가 세부기준 개정안에 대한 방송사업자, 관계부서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기준 마련 추진

(4)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1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향상(Ⅲ-1-①)

□ 추진배경

○ 방송사 간 시청률 경쟁심화 등에 따라 방송에서의 막말이나 선정적, 폭력적 방송프로그램 여전

○ 방송프로그램이 청소년 등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제고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건전한 방송문화 조성과 방송 제작인의 사기 진작 및 창작 의욕 고취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과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시상

○ 방송언어 순화를 위해 방송사와 협력하여 방송언어 순화 캠페인을 전개하고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특집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 막말, 선정, 폭력 등 저품격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사후심의와 함께 방송심의사례집 제작·배포, 심의책임자 회의 개최, 자체 심의기구 운영실태 점검 등을 통해 방송사의 자율규제 기능 강화 유도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사후심의 및 제재처분	연중	
	방송언어특별위원회 운영	연중	
	방송심의 책임자 회의 개최	연중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방송심의사례집 발간·배포	‘16.3월	
	방송언어 위반 중점심의 실시(상반기)	‘16.3월	
2/4분기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식 개최	‘16.4월	
	방송언어실태 조사결과 발간·배포	‘16.4월	
	방송언어순화 자막고지 등 캠페인 실시(상반기)	‘16.5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바른 방송언어 특별상’ 시상(상반기)	‘16.6월	
3/4분기	방송언어 위반 중점심의 실시(하반기)	‘16.8월	
4/4분기	방송언어순화 자막고지 등 캠페인 실시(하반기)	‘16.10월	
	방송언어문화 개선 특집프로그램 제작·방영	‘16.10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바른 방송언어 특별상’ 시상(하반기)	‘16.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방송사업자 : 품격있고 창의적인 방송프로그램 제작환경 조성
- 시청자 : 막말·선정성 등이 배제된 고품격 방송프로그램 시청

○ 이해관계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방송내용 규제 기관
- 방송사업자 : 방송제작 당사자 및 내용규제 대상 기관
-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 청소년(시청자) 보호 등 관련 기관

□ 기대효과

○ 방송언어 문화 개선, 방송사 자율규제 유도 및 사후심의·제재 등을 통해 방송프로그램의 품격을 향상하고 청소년을 비롯한 시청자의 미디어 복지 구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5	'16
방송기반구축(Ⅱ-2-일반재정②)			
①방송기반구축(3134)	방송통신발전기금	289.2	294.4
▪방송분야 시상(301)		4.7	4.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운영지원(304)		284.5	290.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3	'14	'15	'16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향상도	61.5	61.6	61.8	62	최근 3년간 실적이 61점대임을 감안하여 '16년에 목표점수를 62점으로 설정	(방송심의활동 효과 만족도 3개 항목 각 7점척도 평균점수)/7*100 * 3개 항목 : ①프로그램품질저하 방지기여도 ②규정위반프로그램에 대한 제재수준의 적절성 ③방송관련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 만족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청자, 방송업계, 학계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2 방송평가 세부기준 마련(Ⅲ-1-②)

□ 추진배경

○ 방송 프로그램의 품격 향상 및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를 위한 재허가·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평가 실시

○ 방송평가 규칙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방송평가 신뢰성 및 실효성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15년도 방송평가 실적에 대한 방송평가 실시 및 결과공개

-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해 방송·법학·회계·시청자대표 등 각계 전문가 7명으로 방송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내용·편성·운영 영역으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평가

○ 방송평가 세부기준 마련

- 방송평가 규칙 개정이 완료(’16.1.22)됨에 따라 신설, 개정된 평가 항목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3/4분기	방송평가 규칙 개정에 따른 세부 기준 개정안 확정 및 공개	‘16.7월	
	‘15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 수립	‘16.7월	
	‘15년도 방송평가 실시	‘16.8월	
4/4분기	‘15년도 방송평가 결과 의결	‘16.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방송사업자 : 방송환경에 부합하는 방송평가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내용·운영·편성 영역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획득 가능

- 시청자 : 우수한 방송서비스 시청이 가능하여 시청자 복지 제고

○ 이해관계자

- 방송사업자 : 방송평가의 직접적인 대상(재허가/재승인 연계)으로 세부 기준에 대한 의견이 사업자별로 상이할 수 있음

□ 기대효과

○ 방송평가 실시 및 결과 공개를 통해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 및 프로그램 품질 향상을 위한 방송사업자의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여 고품격 방송환경 문화 조성에 기여

○ 방송 공정성 제고, 매체별 특성 반영 등 방송평가 규칙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세부기준 마련을 통해 방송평가의 신뢰성·실효성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5	'16
방송기반구축(Ⅱ-2-일반재정②)			
①방송기반구축(3134)	방송통신 발전기금	1.5 (9.1)	1.5 (9.1)
▪방송평가기반조성(302)		1.5 (9.1)	1.5 (9.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3	'14	'15	'16			
방송평가만족도(점)	73.6	74.6	75.1	75.2점	방송평가 만족도 3년 평균 실적치(74.4)에 평균 증가율(약 1%)을 반영하여 '16년 목표치 설정	방송평가 만족도* [(평가절차의 타당성 x1/3)+(평가항목의 적절성x1/3)+(평가결과의 활용성 x1/3)]*100	설문조사

3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위반 개선(Ⅲ-1-③)

□ 추진배경

○ 방송광고 형식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건수가 '11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과도한 방송광고 및 협찬고지에 따른 시청권 침해 우려가 국회 등을 통해 지속적 제기

* ('13년) 80.6% → ('14년) 75.8% → ('15년) 75.2%

- 시청자의 시청권 침해방지 및 보호를 위해 방송자업자의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광고시간 정기모니터링

- 매체별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광고총량, 중간광고 횟수·시간·고지여부, 자막광고 크기 및 위치 준수 여부 모니터링

○ 가상·간접광고 모니터링 정기모니터링

- 가상광고는 운동경기 중계, 오락 및 스포츠 분야의 보도에 관한 프로그램, 간접광고는 교양 및 오락에 한하여 고지여부, 크기, 시간 및 방식 등 규정 준수여부 모니터링

○ 협찬고지·비상업적 공익광고 정기모니터링

- 협찬고지의 방식·시간·횟수·위치·크기 등 형식 규제 및 협찬고지 허용장르 및 금지품목 관련 규정 준수여부 및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 비율 준수여부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위반 사항에 대해 사후제재 실시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o 방송광고 정기 모니터링 실시	'16.1월~12월	
	o 월별 분석 보고서 작성	'16.1월~12월	
	o 방송광고 분석 시스템 구축	'16.2월~11월	
2/4분기	o 협찬고지·비상업적 모니터링	'16.6월~12월	
	o 방송광고 집중 모니터링	'16.6월	
3/4분기	o 방송광고 집중 모니터링	'16.9월	
4/4분기	o 방송광고 집중 모니터링	'16.12월	

□ 기대효과

o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 제재를 통해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 및 방송사업자의 사전적 예방 효과 기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5	'16
방송기반구축(Ⅱ-2-일반재정②)			
①방송기반구축(3134)	방송통신 발전기금	11.2	15.2
▪방송광고·협찬고지 모니터링 기반구축(302)		11.2	15.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3	'14	'15	'16			
방송광고 법규 준수율(%)	80.6	75.8	75.2	78%	방송광고 등 관련 제도개선, 위반 사업자 대상 개선회의·설명회 등 사업자 계도 및 방송광고 관련 법규 중복 위반 사업자의 준수율을 방송광고 법규준수율의 성과지표로 구성 *최근 3년간 방송광고 법규 위반 건수를 평균하여 준수율을 산정(77.2%)해서 78%를 목표치로 설정 - '13년 준수율 80.6% - '14년 준수율 75.8% - '15년 준수율 75.2%	방송사업자 305개 채널수 모니터링* 결과 * { 전체 사업자수 - [1회 위반 사업자 수 + (2회 이상 중복 위반 사업자 수 x 1.5) + (3회 이상 위반 중복 사업자 수 x 2)] / 전체 사업자 수 } x 100	방통위 행정처분 자료,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등

성과목표 III-2 방송접근 환경 개선

(1) 주요 내용

- ㅇ 스마트미디어, 1인 미디어 시대의 미디어리터러시 제고 및 시청자 권익증진을 지원하는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용 활성화 추진
- ㅇ 시·청각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장애인용 TV 보급 추진
- ㅇ 장애인의 방송접근 환경개선을 위한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강화
- ㅇ 비용 부담으로 방송광고를 하지 못하는 혁신형 중소기업에게 TV 및 라디오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마케팅 능력 강화 및 인지도 제고 추진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3	'14	'15	'16			
방송접근 환경 개선율	신규	신규	100	100%	방송접근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율을 결합하여 설정 -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지원 관련 성과지표는 경기 불황 등 외생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표인 점을 감안하여 비중을 10%로 설정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 수 목표달성율 × 02) + (자유학기제 미디어교육 지원학교 수 목표달성율 × 0.2) + (방송수신기 저소득층 누적 보급률 목표달성율 × 0.2) + (장애인방송 이용자 만족도 목표달성율 × 0.2) +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용도 목표달성율× 0.1) + (제작지원 중소기업 매출성장 목표치 달성율× 0.1]	외부기관자료 및 사업결과 보고서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 ㅇ 최근 스마트미디어의 확산 등으로 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활용의 중요성은 증대되는 반면, 지역·계층 간 미디어 격차는 더욱 심화
- ㅇ 스마트 미디어기기의 출현, 방송장비의 디지털 전환 등으로 센터의 장비수준에 대한 이용자의 기대 증대
- ㅇ 시·청각 장애인용 TV 보급이 한정된 예산으로 장애인 수에 미치지 못해 누적 보급률은 27%대에 머물고 있음
- ㅇ 장애인 방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는 증가된 반면, 방송광고시장 축소 등으로 방송사업자의 재정상황은 악화
- ㅇ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나 규모가 영세하여 방송광고 재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방송광고 접근성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 필요

□ 갈등요인

- ㅇ 지역적 차별 없는 시청자 권익증진 인프라 마련을 위해 센터가 미설치된 광역자치단체에 추가 확충 필요
- ㅇ 시청자미디어센터의 디지털전환 지연 및 장비 노후화에 따라 센터 이용자의 방송장비·시설에 대한 만족도 저하
- ㅇ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 위주로 보급할 필요가 있으나,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맞춤형 홍보와 보급에 어려움 산재

○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목표 상향에 따른 일부 재정상황이 어려운 방송사들의 의무이행 애로 호소 및 장애인방송물 편성에 대한 질적 향상 요구 증대

□ 대응방안

○ 시청자미디어센터 추가 구축을 통한 서비스 지역 확대 및 전 국민 대상 생애단계별·계층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미디어교육 강화

○ 노후화된 부산·광주센터의 방송장비·시설을 디지털 방송제작 환경에 부합하는 장비로 단계적 교체 추진

○ 시·청각 장애인용 방송수신기 보급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예산 확보 및 광역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우선 보급

○ 장애인방송 제공의무사업자의 재정상황 및 제작여건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제작비 지원 및 장애인방송 제작가이드라인 마련 등 질적 수준 향상 도모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강화(Ⅲ-2-①)

□ 추진배경

○ 1인 미디어 출현 등 방송환경 변화로 시청자의 미디어 참여 욕구 증대

- 센터 확충 등을 통해 시청자의 방송제작 및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시청자 권익증진 및 세대·계층 간 소통 활성화

○ 미디어를 통한 소통, 자기표현 및 자아실현 등의 수요 급증에 대응,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미디어 수용 능력 함양과 사회통합에 기여

○ 추진근거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
- 방송법 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재단) 제1항~제8항
- 방송법 시행령 제65조의2(시청자미디어센터)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적성개발이 시작되는 초·중등에서 대학까지 연계한 다양한 미디어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확대하여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보편적 미디어교육 시행

- 정부의 자유학기제 연계 미디어교육 프로그램과 미디어거점학교 및 대학연계 미디어 전공과정 운영 확대 등 미디어분야 꿈나무 양성을 위한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체험·교육 인프라 적극 지원

○ 전 국민 대상 생애단계별·계층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미디어 교육 지원 확대

○ 시청자 방송참여를 위한 미디어교육, 방송제작 시설·장비 대여, 지역 방송사 장애인방송 제작 등을 상시 지원하는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및 추가 설립 추진(울산 센터)

< '16년도 과제 추진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시청자미디어재단 기본 운영계획 수립	'16.2월	
	· 시청자미디어센터 미설치 지역 대상 추가건립 설명회	'16.2월	
	· 자유학기제 및 미디어 거점학교 운영 지원	'16.3월~12월	
	· 지역대학 연계 미디어교육 전공과정 운영 지원	'16.3월~12월	
	· 부산·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방송장비·시설 개선	'16.3월~7월	
	· 자유학기제 미디어교육 교재 개발	'16.3월~8월	
2/4분기	· 방송환경조사 중간 평가	'16.5월	
	· 미디어교육 강사 신규 양성	'16.6월~9월	
3/4분기	· 미디어교육 단체활동 지원사업 중간 평가	'16.7월	
	· 방송환경조사 최종 평가	'16.7월	
	· 지역 센터별 시청자 참여행사 개최	'16.9월~12월	
4/4분기	· 시청자미디어축제 개최	'16.10월	
	·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	'16.11월	
	·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	'16.11월~12월	
	· 미디어교육 단체활동 지원사업 최종 평가	'16.12월	
	· 미디어교육 강사 워크숍 개최	'16.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전 국민

○ 이해관계집단 : 지자체, 지역 방송사업자, 지역 소규모 미디어센터 등

□ 기대효과

○ 전국적인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으로 체계적이고 보편적인 대국민 미디어 서비스 지원

○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한 전국민 대상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미디어 체험·제작 활동을 지원하여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 시청자의 방송참여 활성화를 통해 국민 소통증진, 건전한 방송문화 조성 및 방송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 제고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5	'16
시청자권익증진(Ⅱ-2-일반재정③)			
①시청자권익증진(3133)	방송통신발전기금	112.4	109.3
▪시청자권익보호활동지원(303)		112.4	109.3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3	'14	'15	'16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 수(만명)	27.5	34.5	43.8	46.1	기존 센터(부산, 광주)의 이용자수 감소 추세(△3.1%)와 신규 센터(강원,대전,인천, 서울)의 2년차 증가율(10.4%)을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전국 시청자 미디어센터 이용자 수 합계	사업 수행결과 자료 (시청자미디어센터 전체 이용자 수)
자유학기제 미디어교육 지원학교 수	-	4	85	100	'16년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전년도 보다 18% 상향된 100개교로 목표치 설정	자유학기제 미디어교육 지원학교 수 합계	사업 수행결과 자료 (자유학기제 미디어교육 지원학교 수)

2 방송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Ⅲ-2-②)

□ 추진배경

○ 미디어 융합, 신규 서비스의 등장 등 방송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장애인등 방송소외계층의 정보격차 심화

○ 시·청각 장애인 등이 방송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송접근 환경을 개선하여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이념 구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시·청각 장애인 등의 TV 시청을 돕기 위한 장애인용 TV 보급을 통해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 광역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정보소외가 더 심각한 저소득층 시·청각 장애인에게 TV 보급 확대

〈 시·청각 장애인용 방송수신기 보급현황 〉

(단위 : 명, 대, %)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시·청각장애인 수		전체	511,153	508,494	505,604	503,208
		저소득층	102,231	97,809	105,982	97,675
보급 대수	해당연도	전체	16,675	12,330	12,514	12,524
		저소득층	5,552	3,722	4,662	10,731
	누적	전체	100,450	112,780	125,294	137,818
		저소득층	15,875	19,597	24,259	34,990
누적 보급률		전체	19.7	22.2	24.8	27.4
		저소득층	15.5	20.0	22.9	35.8

○ 장애인방송 의무제공사업자 지정·공표, 장애인방송 제공실적 평가, 장애인방송 시청보장위원회 운영, 장애인방송 편성현황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등 장애인방송 의무제도 정착 지원

< '16년 방송사업자별 장애인방송 편성비율 목표(장애인방송 고시) >

전체	대상사업자			최종 편성비율 목표(%)		
				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142개사	지상파 (50)	중앙지상파	4개사	100	5	10
		지역지상파	46개사	100	5	10
	유료 방송 (92)	보도.종편PP	6개사	100	5	10
		SO, 위성방송	70개사	70	4	7
		일반PP	16개사	70	3	5

○ 장애인의 방송접근 환경개선을 위한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강화

- 의무사업자 재정상황 및 제작여건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지원 추진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사업 기본계획 수립	'16.2월	
	· 시청각장애인용 TV 제조 업체 입찰공고	'16.2~3월	
	· 장애인방송 제작비 지원 방송사 선정	'16.3월	
2/4분기	· 시청각장애인용 TV 제조 업체 선정	'16.4월	
	·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 관련 지자체 업무협약	'16.5~6월	
	·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사업 홍보 및 신청자 접수	'16.5~8월	
	· '15년도 장애인방송 편성 실적 평가	'16.4~6월	
3/4분기	· 지역 방송에 대한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16.7~12월	
	·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자 선정·보급	'16.7~10월	
4/4분기	· '17년도 장애인방송 고시의무사업자 선정	'16.10월	
	· 시청각장애인용 TV 및 장애인방송 만족도 조사	'16.10~12월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16	'17	'18	'19	'20
추진 내용	방송수신기 보급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시·청각 장애인

○ 이해관계집단 : 방송사업자, 장애인(단체)

□ 기대효과

○ 장애인방송제작 지원 및 시청각 장애인용 TV 보급을 통해 방송 소외계층의 방송접근 환경을 개선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시청자 권익증진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

○ 장애인방송 의무화 제도 정착 및 방송사업자에 대한 장애인방송 제작지원을 통해 방송접근환경을 개선하여 장애인의 권익 향상

○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에서 스마트 수화방송서비스 기반을 구축하여 장애인 및 일반시청자의 방송시청 편의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5	'16
시청자권익증진(Ⅱ-2-일반재정③)			
①시청자권익증진(3133)	방송통신발전기금	94.4	94.4
▪소외계층방송접근권보장(301)		94.4	94.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3	'14	'15	'16			
방송수신기 저소득층 누적 보급률(%)	20.0	22.9	35.8	45	최근 3년간 실적치의 평균 증가폭(6.8%p)과 '16년도 총보급 수량을 감안하여 '15년까지 누적보급률 35.8% 대비 약 9%p 상승한 적극적 목표치 설정	(저소득층 시청각 장애인 누적 보급 대수 / 저소득층 시청각 장애인 수) × 100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시청각 장애인 통계자료, '16년도 장애인 방송수신기 보급 현황자료
장애인방송 이용자 만족도(점)	신규	신규	74.8	75.5	최근 4년간 유형별 실적치의 평균 증가율(자막방송 0.4%, 수화방송 2.3%, 화면해설방송 4.3%)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적용한 유형별 합으로 목표치 설정	장애인방송 만족도 조사(5점 만점) (100점 만점 환산) [(자막방송 만족도 × 0.87) + (수화방송 만족도 × 0.04) + (화면해설방송 만족도 × 0.09)]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신기 보급대상자를 대상으로 권역별·장애등급별 인구비례할당 설문조사 (전화, 대면 등)

3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Ⅲ-2-③)

□ 추진배경

○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나 막대한 광고비용으로 방송광고를 활용하지 못하는 영세한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

-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등을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들의 방송광고 접근성을 제고하여 중소기업의 성장과 방송광고 시장의 활성화 유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혁신형 중소기업 광고소재 제작 지원

-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마케팅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TV 및 라디오 광고소재 제작비 지원

*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기업/우수 녹색 경영·녹색인증 중소기업/IP(지식재산) 스타기업 등

- 방송광고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광고교육 및 맞춤형 원스톱 컨설팅 제공

-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협의회* 운영을 통해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 금액 검증

*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청,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관련기관, 광고업계, 학계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o 방송광고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16.1월	
	o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협의회 구성·운영	'16.2월~12월	
2/4분기	o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기업 선정(1차)	'16.4월	
	o 선정 기업 광고제작 집행 기본 교육 실시	'16.4월	1차 선정기업 대상
	o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지원	'16.4월~8월	1차 선정기업 대상
	o 맞춤형 광고 컨설팅 지원	'16.4월~8월	1차 선정기업 대상
	o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효과평가('15년 지원기업 대상)	'16.6월	
3/4분기	o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기업 선정(2차)	'16.8월	2차 선정기업 대상
	o 선정 기업 광고제작 집행 기본 교육 실시	'16.8월	2차 선정기업 대상
	o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지원	'16.8월~12월	2차 선정기업 대상
	o 맞춤형 광고 컨설팅 지원	'16.8월~12월	2차 선정기업 대상
4/4분기	o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효과평가('16년 지원기업 대상)	'16.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으로 혁신형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진입이 용이해져 중소기업의 마케팅 능력 강화 및 성장 기대

- (광고대행사 및 제작사)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제작에 따라 광고 제작에 참여하는 대행사 및 제작사의 시장확대 예상

○ 이해관계자

-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지원 대상을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제한하여 일반 중소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기대효과

○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마케팅 능력 강화와 인지도 제고를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 기대

- 새로운 광고주로서 혁신형 중소기업이 방송광고 시장에 진입하게 됨으로써 방송광고시장 활성화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5	'16
방송기반구축(Ⅱ-2-일반재정②)			
①방송기반구축(3134)	방송통신발전기금	20.0	25.4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지원(315)		20.0	25.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3	'14	'15	'16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용도(점)	신규	신규	3.77	3.96	'15년 지원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활용도에 적극적 목표치 설정을 위해 5% 상향	(기업인지도 상승(5점 만점) x 0.5) + (매출증가 도움(5점 만점) x 0.5) * 지원기업대상 설문조사 결과 활용	방송광고 효과평가 (지원대상기업 설문조사결과)
제작지원 중소기업 매출성장율(%)	신규	신규	4.3	4.5	'15년 지원 중소기업의 전년도 대비 매출액 증가율에 적극적 목표치 설정을 위해 5% 상향	[(지원이후 매출액 - 지원전 매출액) / 지원전 매출액] x 100 * 지원전후 매출액 산출이 곤란할 경우 전년도와 지원년도의 매출액으로 비교	방송광고 효과평가 (지원대상기업 설문조사결과)

성과목표III-3 방송서비스 활성화

(1) 주요 내용

- ㅇ 불공정 거래유형, 표준계약서 사용 실태 점검 및 방송평가 반영 등을 통해 외주제작 거래 관행 개선 추진
- ㅇ 협찬고지 규제완화, 가상광고 활성화 추진 등을 통한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 및 방송사업자 경쟁력 제고
- ㅇ 중소PP 육성을 위해 지상파·MSO·위성 등 계열PP와 개별 PP를 구분하여 콘텐츠 제작역량을 평가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
- ㅇ 한·중 공동제작 협정 체결 추진 및 공동제작 협정에 따른 프로그램의 국내물 인정 기준 마련
- ㅇ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을 조사·산정하여 방송의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한 규제 및 정책 자료로 활용
- ㅇ PC 및 스마트폰의 시청기록 조사방안 개발 및 시범조사를 실시하여 변화하는 방송환경에 맞는 통합시청점유율 도입 기반 마련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3	'14	'15	'16			
방송서비스 활성화 기반 조성율	-	-	신규	88%	방송서비스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해 필요한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율을 결합하여 설정 -공동제작 활성화의 경우 목표 달성을 위해 중국 측 협조가 필수적인 사안임을 감안하여 비중을 20%로 설정	[(방송콘텐츠판매액 달성율x0.4) +(공동제작 활성화 기반 구축 달성률x0.2)+통합시청점유율 조사 신뢰성 개선도 x0.4]]	내부자료, 전문 조사기관, 검증연구반 결과보고서, 제도개선 관련, 민관협의회 회의록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 소수의 드라마 제작사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자본금 및 인력 등이 영세한 외주제작사가 대부분이고,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 불공정 거래 논란 등으로 상생의 외주제작 환경은 미흡한 실정

○ 중국을 비롯한 타국의 해외 방송프로그램 규제 극복을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 마련 필요 증대

- 공동제작 협정 체결 대상국 증가에 따른 공동제작 활성화에 대비하여 협정에 따라 제작된 프로그램의 국내물 인정기준 마련 필요

○ 일간신문의 방송사업 진출에 따른 여론 독과점 폐해를 예방하고, 방송의 여론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운영 및 시청점유율 제한제도 도입

※ 미디어다양성위원회(방송법 제35조의4) 및 시청점유율 제한(제69조의2)

○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 추세 가속, IPTV방송사업자의 성장 등 방송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 미디어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따라 매체이용행태 급변

□ 갈등요인

○ 외주제작 시장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필요가 있으나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거 표준계약서는 권고사항임에 따라 이를 강제하기 곤란

- 표준계약서 사용을 위한 방송사와의 이해관계 조정에 어려움 예상

○ 한·중 공동제작 협정 체결 시 한류콘텐츠의 중국진출뿐 아니라 중국 콘텐츠의 한국 진출이 용이해지므로, 콘텐츠 경쟁력·자본 등 사업자 상황에 따라 이해관계가 상충 될 수 있음

○ PC・스마트폰 및 VOD 등을 통한 N스크린 활성화에 따라 고정형 TV수상기의 이용 시간이 감소하는 등 변화하는 시청 행태를 정확히 반영할 필요성 증가

□ 대응방안

정부기관, 방송사, 제작사,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국내연구반을 구성·운영하여 협정문 주요 항목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초안 및 협상전략 마련 추진

○ 고정형 TV, PC, 스마트폰의 실시간 및 비실시간(VOD) 시청 시간을 측정하여 TV시청행태의 변화를 시청점유율 조사에 반영

○ '시청점유율조사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VOD, PC・스마트폰 시청시간 조사에 따른 통합시청점유율 조사방법 및 산정방안 등에 대한 사업자 의견수렴 및 이해관계 조정

(4)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1 방송콘텐츠 경쟁력 기반 확충(Ⅲ-3-①)

□ 추진배경

○ 외주제도 도입으로 지상파방송의 외주제작 비율이 40% 이상에 달하는 등 국내제작 시장에서 외주제작 시장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으나,

- 지상파-외주제작사간 방송프로그램 제작 계약 시 수익배분 등 일부 중요사항을 관행에 의존함에 따라 불공정 거래 논란 발생

○ 외주제작 거래 관행을 개선하여 상생의 콘텐츠 제작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 추진

○ 광고매출 감소로 인한 제작비 부족과 제작인력 해외유출 등으로 한류 핵심인 방송 콘텐츠 제작환경이 악화

- 방송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방송광고 규제 개선 필요

○ 방송콘텐츠 산업 활성화 유도를 위해 계열PP와 중소PP별로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 제작역량 평가 결과를 제작지원 사업에 활용되므로 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평가 방안 점검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방송법 개정('15.6.22)으로 특수관계자 편성비율 제한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순수외주비율을 규정하는 시행령 및 고시 개정 추진

- 외주제작사 보호를 위해 현재 외주비율에서 특수관계자 비율을 제외한 비율보다 높게 설정

○ 외주제작사를 분쟁조정대상에 추가하고, 간접광고를 허용하는 방송법 개정에 따른 세부기준 및 절차 등 마련 추진

○ 불공정한 외주제작 거래 유형, 표준계약서 사용 장애요인 등을 파악하여 외주제작 거래 관행 개선 추진

- 외주제작 시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 실태조사 및 지상파방송사 상생협력방안 이행점검 실시

- 방송평가규칙에 '방송프로그램 제작·유통상 공정거래 질서 확립 노력 평가항목'을 반영하여 외주거래 관행 개선 추진

○ 방송사, 외주제작사, 전문가 등으로 상생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상생의 외주제작 생태계 조성

○ 협찬고지 시간·횟수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협찬고지 내용을 협찬주명·로고·기업표어·상품명·상표 중에서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협찬고지 규제완화 추진

- 오락, 스포츠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가상광고 허용방법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가상광고 활성화 추진

○ 등록PP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방식 개선

- 콘텐츠 제작 노력 강화를 위해 제작비 관련 항목 상향 조정

- 우수 콘텐츠 유통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유통 항목 상향 조정 및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 제출 거부에 따른 평가가 어려운 항목 삭제

- 대상 사업자간의 형평성 확보 및 평가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출시한 준수 조항 추가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외주거래 관행 개선 관련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	'16.2월	
	외주제도 협의체 운영	'16.3월~	
2/4분기	순수외주비율 규정 관련 방송법시행령 개정	'16.6월	
3/4분기	방송평가 규칙 개정에 따른 세부 평가기준 마련	'16.7월	
	'16년도 등록 PP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방안 위원회 보고	'16.8월	
	분쟁조정기준, 간접광고 판매 절차 등을 규정하는 방송법시행령 개정 추진	'16.9월	
4/4분기	외주제작 거래관행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정책연구 추진	'16.11월	
	'16년도 등록PP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결과 위원회 보고	'16.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외주제작사) 외주제작사를 분쟁조정대상에 추가하고, 간접광고를 허용함으로써 외주제작시장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되어 외주제작사의 권익보호 기대

- (방송사, 광고주, 광고회사) 방송광고 규제완화를 통해 광고의 효과적인 집행, 프로그램 제작재원 확보, 광고시장 활성화 촉진

○ 이해관계자

- (외주제작사)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표준계약서 사용이 필요하고, 표준계약서에 따라 외주제작사에게 저작권이나 수익배분 필요

- (방송사) 표준계약서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서 권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간 자율적으로 사용토록 할 필요

□ 기대효과

○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 방송분쟁조정 절차를 마련하고, 방송평가시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평가 등을 통해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에 기여

○ 외주제작 시장의 불공정 거래관행 실태조사 등을 통해 외주제작 관행이 개선 될 것으로 기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5	'16
방송기반구축(Ⅱ-2-일반재정②)			
①방송기반구축(3134)	방송통신발전기금	2.0 (9.1)	2.0 (9.1)
▪방송평가기반조성(302) - 방송콘텐츠 경쟁력 평가		2.0 (9.1)	2.0 (9.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3	'14	'15	'16			
방송콘텐츠 판매액	3,276	4,380	5077	5,178억원	'16년도 목표치를 '15년도 5,077억원에서 2% 증가한 5,178억원으로 설정	'15년 방송영상산업백서 및 '15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방송사 제출자료

* 최근 5년간 방송콘텐츠산업 매출액 평균추세를 고려하여, '16년 목표치는 '15년도 방송콘텐츠 판매액 5,077억원에서 2% 증가한 5,178억원으로 설정(2015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보고서 : 콘텐츠 진흥원)

② 공동제작 협정 체결 추진(Ⅲ-3-②)

□ 추진배경 (목적)

○ 한류콘텐츠의 해외진출 확대와 방송협력 강화를 위해 FTA를 활용하여 중국 등과 공동제작 협정 체결 추진 및 공동제작 협정에 따라 제작된 프로그램의 국내물 인정기준 마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한·중 공동연구반 구성·운영)** 협정문 초안 및 양국의 콘텐츠 환경변화와 협정 체결의 유용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양국의 국장급 공무원(한국 : 방통위, 중국 : 광전총국)을 반장으로 하는 공동연구반 운영

○ **(국내연구반 운영)** 공동연구반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동제작 협정에 포함할 내용 및 협상 전략 마련을 위해 방송사, 제작사 협회,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국내연구반 운영

※ 한·중 공동연구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공동제작 협정 체결 추진

○ **(공동제작 컨퍼런스 개최)** 한류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공동제작 협정 체결의 유용성 및 확대 필요성, 협정 체결국과의 공동제작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컨퍼런스 개최

○ **(협정별 국내물 인정기준 마련)** 공동제작 협정에 따라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의 국내물 인정기준 및 절차를 국가별 협정에 근거하여 마련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한·중 공동제작협정문 초안 마련	'16.3월	
	한·중 공동연구반 1차 회의(예정)	'16.3월	
	국내연구반 회의	'16.3월	
	인정기준 마련을 위한 공동제작 협정문 분석	'16.5월	
2/4분기	국내연구반 회의	'16.5월	
	한·중 공동연구반 2차 회의(예정)	'16.6월	
3/4분기	국내연구반 회의	'16.8월	
	공동제작협정에 따른 국내물 인정기준 관련 관계자 의견수렴	'16.8월	
	한·중 공동연구반 3차 회의(예정)	'16.9월	
4/4분기	국내연구반 회의	'16.10월	
	컨퍼런스 개최	'16.11월	
	공동제작협정에 따른 국내물 인정기준(안) 마련	'16.12월	
'17년도	한·중 공동제작 협정 체결 추진	'17년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방송사·제작사 : 공동제작 협정 체결 시 한류콘텐츠의 중국 진출확대와 더불어 한·중 공동제작이 더욱 활발해 질것으로 기대

※ 공동제작 협정에 따라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은 양국에서 국내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제작진 일시 입국 등의 혜택이 부여 될 수 있음

- 시청자 : 우수한 방송콘텐츠 시청이 가능하여 시청자 복지제고

○ 이해관계자

- 방송사·제작사 : 중국콘텐츠 사업자의 한국 진출도 용이해지므로, 콘텐츠 경쟁력·자본 등 사업자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상이할 수 있음

□ 기대효과

○ 협정 체결 시 공동제작 프로그램의 국내물 인정을 통한 수출 증대, 제작기술과 노하우 공유 및 문화교류를 통한 상호이해 증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공동제작협정에 따라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의 국내물 인정 기준·절차를 정비하여 공동제작협정의 실효성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5	'16
방송통신운영지원(Ⅱ-2-일반재정⑤)			
①방송통신운영지원(3135)	방송통신 발전기금	- (5.8)	2.5 (8.3)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302) - 한·중 공동제작 연구반 운영		- (5.8)	2.5 (8.3)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13	'14	'15	목표치 '16	'1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공동제작 활성화 기반 구축율			신규	80	한·중 공동제작 협정 체결을 중국측와 협상 결과에 따라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목표치를 80%로 설정	한국측 협정문 초안 마련(30%) + 공동연구반 회의(10%, 2회 이상) + 양국 협정문(안) 교환(20%)+ 국내물 인정기준 마련(20%)+ 협정 체결(20%)	

3 통합 시청점유율 조사 기반구축(Ⅲ-3-③)

□ 추진배경

○ 일간신문과 대기업의 방송시장 진입에 따른 여론 독과점 방지를 위해 도입된 시청점유율 규제 제도 시행(방송법 제69조의2)

※ 시청점유율 산정결과는 해당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승인), 변경승인 심사에 반영

○ VOD시청과 PC·스마트폰을 통한 시청이 증가하는 매체이용 행태 변화를 반영하여 시청점유율 조사방법을 개선하고 시청점유율 조사 결과의 타당성 및 신뢰도 제고 필요

○ 젊은 층의 고정형TV 실시간 방송 시청시간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반면,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TV시청이나 VOD를 통한 시청시간 조사를 통해 누락된 젊은 층의 TV시청시간 현황 집계 추진

- 현행 시청기록 조사 기술의 한계로 인해 VOD와 PC·스마트폰의 시청시간 측정결과에 대한 정책 자료 활용 한계

- 조사기술 발전과 더불어 조사지역, 조사인원을 확충하고 조사기간도 늘려 조사결과의 신뢰성 확보할 필요

○ VOD, PC와 스마트폰을 통한 시청시간 조사의 경험을 활용하여 시청률 조사 분야에서 해외 기술협력 등 산업진흥 도모

○ 시청점유율 기초조사 방식과 관련, 유선전화RDD 방식의 기초조사로 인해 젊은 층과 1인가구 등의 비율이 조사패널 구성에 정확히 반영되지 않아 모집단 포함률이 떨어진다는 지적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기초조사)** 전국 20,000 가구를 대상으로 성·연령·지역 등 인구통계학적 속성 및 TV시청환경을 가구방문 면접방식으로 조사

- 기존 유선전화RDD 조사방식을 '15년부터 가구방문 면접방식으로 변경

· 유선전화RDD는 집전화 없는 가구의 증가로 인해 모집단 포함률이 낮으며, 1~2인 가구와 젊은 층 가구의 접촉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음 · 가구방문 면접방식은 주소를 기반으로 응답자를 추출하므로 모집단 포함률이 제고되며, 1~2인 가구와 저연령 가구도 접촉이 늘어날 수 있음

※ 고정형TV의 시청점유율 기초조사와 N스크린(PC·스마트폰)시청기록 산출조사의 기초조사를 통합 실시하여 각 조사결과의 연계를 원활히 하고자 함

○ **(TV시청점유율 본조사)** '16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4,000가구의 고정형TV를 대상으로 실시간 방송채널 시청시간 측정

※ '15년부터 고정형TV 비실시간(VOD) 시청조사(3,000가구)

○ **('15년도 시청점유율 산정)** '15년도 방송채널 시청점유율 조사결과, 방송사업자 소유구조 현황 분석 등을 통해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시 심사에 반영 및 방송사업 소유 제한, 방송광고시간 제한, 방송시간의 일부 양도 등 제재조치를 명령

○ **(N스크린 조사 측정기술 사전평가 실시)** '시청기록 검증연구반'을 별도로 구성·운영하여 패널의 대표성, 이상 시청현황 등에 대한 상시 점검·평가 기능을 강화

○ **(N스크린 조사기준·절차 등 체계화)** N스크린 조사기준·절차 등에 대한 제반사항을 체계화한 지침을 마련

○ **(N스크린 시청기록조사)** PC·스마트폰 대상 시범조사

- 전국 5,000명을 대상으로 PC, 스마트폰을 통한 실시간 TV 방송 채널 및 비실시간(VOD) TV 방송프로그램 시청시간 조사

○ **(시청기록 상시검증체계 구축)** '시청기록 검증연구반'을 별도로 구성·운영하여 패널의 대표성, 이상 시청현황 등에 대한 상시 점검·평가 기능을 강화

○ **(시청점유율조사 민관협의회 운영)** VOD, PC·스마트폰 시청시간 조사에 따른 통합시청점유율 조사방법 및 산정방안 등에 대한 사업자 의견수렴 및 이해관계 조정

※ 민관협의회 : 지상파,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사업자, PP 등 방송사업자,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업자, 시청률조사회사, 광고주협회 등 약 30여명('14. 7. 구성)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16년도 시청점유율 조사 시작	'16.1월	
	2016년도 고정형 시청기록조사 용역 사전 공고	'16.2월	
	2015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자료 접수	'16.3월	
	2016년도 N스크린 시청기록조사 용역 사전 공고	'16.3월	
2/4분기	2016년도 N스크린 시청기록조사 용역 본공고 및 BMT 실시	'16.4월	
	2016년도 N스크린 시청기록조사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16.4월	
	2016년도 시청점유율 기초조사 시작	'16.5월	
	2015년도 매체교환율 산정결과 도출	'16.6월	
	2015년도 시청점유율 산정결과 도출	'16.6월	
	2016년도 TV·신문 이용행태조사(1차)	'16.6월	
3/4분기	2015년도 시청점유율 산정결과 발표	'16.7월	
	2016년도 N스크린 시청기록 산출조사 시작	'16.7월	
4/4분기	2016년도 TV·신문 이용행태조사(2차)	'16.10월	
	2016년도 시청점유율 기초조사 종료	'16.10월	
	시청점유율조사 개선방안 마련	'16.11월	
	2016년도 시청점유율 조사 종료	'16.12월	
	2016년도 N스크린 시청기록 산출조사 종료	'16.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규제를 통해 방송의 여론다양성을 증진하여 시청자의 방송 선택권을 확대하고

- 광고주의 경우 연령·세대별로 VOD나 스마트폰을 통한 TV 프로그램 시청현황의 파악이 가능해져 효율적으로 광고비 집행

- 방송사업자는 시청점유율 조사·산정 결과에 따라 방송사업 소유제한, 방송광고시간 제한, 방송시간 일부양도 등의 제한

□ 기대효과

○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규제를 통해 방송의 여론다양성을 보장하여 미디어영향력의 독과점 방지

- VOD와 PC·스마트폰 시청시간 조사를 병행하여 매체이용 행태변화를 시청점유율에 반영함으로써 여론다양성 보장을 위한 시청점유율 규제의 타당성 제고

○ 콘텐츠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받을 수 있어 콘텐츠 제작과 유통이 활성화되어 미디어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 시청점유율 조사를 통해 시청 현실에 대한 정확한 기초자료 제공을 통해 광고와 방송산업 발전 도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5	'16
미디어다양성 및 공정경쟁 촉진(Ⅱ-2-일반재정②)			
①미디어다양성 및 공정경쟁 촉진(3132)	방송통신발전기금	45.7	45.7
▪ 미디어다양성증진(301)		45.7	45.7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3	'14	'15	'16			
통합시청점유율조사 신뢰성 개선도	-	-	신규	80	- 패널 대표성 향상률 · '15년도 30%인 20-30대 저연령 패널 영입률을 '16년도는 35%로 5%p 상향하여 목표치 설정 - N스크린조사 개선사항 이행률 · N스크린상시검증연구반의 개선 및 시정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율을 측정 · 개선요구사항(월2건*6월)중 50%(6건)를 이행완료 목표로 설정	<측정방법> (조사패널 대표성 개선율*0.6) + (N스크린 조사 개선사항 이행률*0.4) <측정산식> [(패널실적치)/(패널목표치)*100]*0.6 + [(개선사항이행건수)/(개선사항도출건수)*100]*0.4 =[(35/35)*100]*0.6+[(6/12)]*0.4 =80	전문 조사기관, 검증연구반

▷ 패널대표성 향상률 : 조사 패널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저연령(20-30대) 1인 가구주의 패널영입률을 실제 인구분포 대비 '15년도 30%에서 '16년도에는 35%로 5%p 상향

※ 20-30대의 패널영입률은 실제 인구분포 대비 50%를 달성하는 것이 최종 목표임

▷ N스크린 조사 개선사항 이행율* : 통합시청점유율 상시검증 연구반('16.2월구성 완료)을 통해 7월부터 시작되는 N스크린 조사의 측정기술 신뢰성, 패널의 운영관리 등에 대한 정기점검(매월)을 실시하여 월평균 2건정도의 개선요구사항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도출된 문제점의 당해연도 개선이행정도를 측정

* 표준화된 조사기술의 부재 등 사업초기임을 고려하여 '16년에는 50%로 설정하고 '17년도부터는 전년도 실적치을 비교하여 조정)

전략목표 Ⅳ 국민과 소통하는 방송통신행정 구현

기 본 방 향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공정하고 창의적인 방송통신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민과 소통하는 방송통신행정을 구현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목적을 실현하도록 지원

○ 2016년 정부업무평가 주요내용인 국정과제, 규제개혁, 정상화과제, 정부3.0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내부고객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행정지원과 행정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

◇ 그간의 성과

○ 민간 및 자치단체와의 협업, 타기관의 정부3.0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한 정부3.0 핵심 가치 내재화 중점 추진

○ 직원별 특성과 상황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 자기개발을 유도하고, 창의인재 양성 및 전문성을 향상하고,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으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직원들의 자기계발, 업무생산성 제고

○ 위원회 소관 본인확인기관의 개인정보 침해 사고 예방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주요정보통신시설로 지정

○ 전 직원 규제개혁 교육, 내실있는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규제개혁 역량을 강화하고, 범정부 차원의 경제활성화 노력에 기여하도록 규제개혁과제 성공적 추진

○ 제3기 방통위 출범에 따른 새로운 방통위의 정책기조 기획홍보와 현장소통의 기획홍보를 추진함

기 본 방 향

◇ 중점 추진내용

- ㅇ 공공데이터의 개방·공유 및 사전정보 공표·원문 정보공개 확대와 PC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1인 방송 활성화로 기관 내외 소통과 협력의 가치를 실무행정에 구현

- ㅇ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관점에서 관리하고 전자통합평가시스템을 활용한 정책과제 추진 및 실적 관리

- ㅇ 재정조기집행과 상황점검을 통하여 재정집행 효율성을 제고하고 방송·통신 분야 산업활성화에 기여

- ㅇ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마련·이행 점검을 실시하고, 충무계획 작성·시행 및 점검을 통해 보안 및 비상대비 태세 강화

- ㅇ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정책을 홍보하고 국민에게 정책정보를 제공하여 정책의 체감도와 신뢰도를 제고

◇ 전략목표와 임무간의 상관성

- ㅇ 국정기조에 부응하는 방송통신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인재개발, 직장문화, 창의적 역량, 규제개선, 법제, 재정관련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 국민과 소통하는 방송통신 행정 구현에 기여

<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성과지표체계 >

(단위 : 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3	3	8	14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Ⅳ-1. 창조적인 방송통신 행정 관리		①신뢰받는 방송통신 행정 추진율
	① 정부3.0 변화관리를 통한 행정역량 강화	①공공데이터 공개율 ②영상회의 활용율 ③서비스정부 국민평가단 평가 점수
	②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①기관별 조기집행 목표 달성률
	③ 사이버안전 및 비상대비 관리체계 강화	①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호 수준율 ②비상대비 및 보안점검 달성률
Ⅳ-2. 효율적인 행정관리와 신뢰받는 행정 지원		①효율적인 행정관리 및 신뢰받는 행정지원 추진율
	① 규제개혁 적극 추진	①규제개혁과제 이행률
	② 통합성과관리 효율성 제고	①통합성과 관리율
	③ 일잘하는 공직환경 조성	①유연근무제 활성화 추진율 ②인재개발 활성화 및 효과성 ③공공구매 법정의무 구매율 달성도
Ⅳ-3. 방송통신정책의 홍보 및 국제협력 지원		①방송통신정책의 홍보 및 국제협력 지원 추진율
	① 대국민·대언론 정책홍보 강화	①정책홍보 만족도
	②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①방송통신 국제협력 향상도

성과목표Ⅳ-1 창조적인 방송통신 행정 관리

(1) 주요 내용

□ 정부3.0 변화관리를 통한 행정역량 강화

○ 개방과 공유,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정부의 행정 운영 방식 변화에 대응하여 방통위내 정부3.0의 가치를 확산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변화 관리를 추진

- 공공데이터 개방·공유, 영상회의 확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정부3.0 정책을 적극 추진

- 방송통신 정책고객 대표자회의, 정부3.0 핵심가치 내재화를 위한 교육 등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 및 홍보 강화

○ 정부3.0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중심의 국정운영을 정착

□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 예산 편성, 집행 결산 및 평가 환류를 통해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

○ 중기 중점투자방향, 투자우선순위 및 방송통신 환경변화에 따른 신규 예산 소요 등을 반영한 중기('16~'20년) 재정계획 수립 및 세출구조조정과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을 통한 '17년도 예산안 편성

○ 재정 집행계획 수립을 통한 집행 현황 점검·관리와 예산집행심의회를 통한 재정집행의 적정성 강화

□ 사이버안전 및 비상대비 관리체계 강화

○ 사이버 침해 등 보안위협에 대응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

○ 안전한국훈련, 충무계획 수립, 을지연습 수행, 방송시설에 대한 보안관리를 통해 안보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비상대비태세를 구축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3	'14	'15	'16			
신뢰받는 방송통신 행정 추진율	-	100%	100%	100%	신뢰받는 방송통신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추진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100% 달성을 목표로 함	(공공데이터 공개율×0.2)+(영상회의 활용율×0.2)+(기관별 조기집행 목표 달성률×0.3)+(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호수준율×0.3)	내부자료, 만족도 조사자료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 정부3.0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나, 위원회 업무 특성 상 국민이 체감할 성과는 내기 어려움

○ 국회 결산심사 결과 시정 요구한 사항이 타 기관과의 협력, 법·제도 개선 등이 지연되어 처리기한내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북한 도발, 핵 실험, 사이버 침해 등 남북간 긴장관계가 지속되고 보안위협이 증대하는 상태임

□ 갈등요인

○ 정부3.0 정책 추진을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나 기관 단위의 의식·문화·일하는 방식 변화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고 직원들이 변화에 대한 피로감 표출

○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 편성 시 사업부서 및 지원 기관간 재정지원 규모 등에 대한 갈등이 발생

○ 최근 북한 등에 의한 위협의 증대로 테러 및 사이버 침해 등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으나 정보보호, 비상대비 업무의 중요도 인식은 저조함

□ 대응방안

○ 정부3.0 정책의 핵심가치 확산을 위하여 정책단계별 자체진단 계획을 수립하고 성과평가와 연계하여 평가결과에 따른 취약 및 미흡사항을 보완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조직내에 정부3.0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

○ 직원들이 정부3.0 정책을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정부3.0 추진 공감대 형성 및 성과 공유·확산을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는 경진대회 개최 추진

○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 등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주요사업 및 국정과제를 원활히 추진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 충무계획 및 보안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이행 점검을 철저히 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위원회와 산하·유관기관의 관심도 제고

(4) 기타

□ 참고자료

○ 행정자치부 정부3.0 백서

○ 201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정보통신기반보호법(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련)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1 정부3.0 변화관리를 통한 행정역량 강화(Ⅳ-1-①)

□ 추진배경 (목적)

○ 개방과 공유,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정부 운영방식 변화에 대응하여 조직 내 정부3.0의 가치를 확산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변화관리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투명한 정부) 공공데이터의 개방·공유 및 사전정보공표·원문정보공개를 확대하여 정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민간 활용도 제고

- 국장급 이상 결재 문서의 55% 이상 공개

○ (유능한 정부) 각종 회의에 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을 통한 영상회의를 확대 적용하여 업무효율성 제고

- 영상회의 의무지정 대상을 확대('15년 5종 → '16년 17종)하고, 영상회의 실적을 부서성과평가에 반영하여 업무효율화 도모

○ (서비스 정부) 불법스팸 대응, 장애인용 방송프로그램, 중소기업 광고지원,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위치정보 창업 활성화를 위한 스타트업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

○ (기타) 국민과의 소통 및 홍보 강화

- 방송통신 정책고객 대표자회의, 정부3.0 체험마당 참가 등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 강화
- 핵심가치 내재화를 위한 교육 강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실시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16년도 정부3.0 실행계획 수립	'16.1월	
	2016년도 영상회의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16.2월	
	2016년도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16.2월	
	2016년 상반기 정책고객 대표자 회의 개최	'16.3월	
2/4분기	상반기 정부3.0 체험마당 참가	'16.6월	
	정부3.0 직원교육(1차) 실시	'16.6월	
3/4분기	정부3.0 직원교육(2차) 실시	'16.9월	
4/4분기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 실시	'16.11월	
	하반기 정부3.0 체험마당 참가	'16.11월	
	2016년 하반기 정책고객 대표자 회의 개최	'16.12월	
	정부3.0 변화관리 교육 실시	'16.12월	
연중	정부3.0 추진실적 점검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구 분	수혜자	이해관계자
투명한 정부	민간 기업(방송통신 사업자)	시민단체
유능한 정부	일반국민(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 내부직원	내부직원, 타부처
서비스 정부	정보취약계층(노령층, 시청각 장애인, 다문화가족, 외국인), 민간기업	방송통신사업자, 시민단체, 지자체

□ 기대효과

○ 정부3.0의 본격 추진을 통해 국민중심의 국정운영을 정착시키고 국민의 체감도를 제고하여 '신뢰받는 방송통신 행정' 구현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3 '14	'15	'16			
공공데이터 공개율	- 신규	55	55%	'16년 공공데이터 공개율 목표를 '15년도와 동일한 55%로 설정 ※ '15년 중앙부처 평균 : 45.1%	(공개 설정된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수 / 전체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수) ×100	정보공개 포털 내부 자료
영상회의 활용율	- 신규	90	80%	영상회의 활용대상 회의는 행정자치부의 <16년도 영상회의 활성화 계획 및 평가지침>에 따라 17종 313회로 설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회의개최 목표를 행자부 만점기준인 80%로 설정	(영상회의 개최 건수 / 영상회의 활용 대상 전체 건수(313회))×100	정부통합 의사소통 시스템, 내부자료
서비스정부 국민평가단 평가점수	- -	신규	80점	서비스 제공 이후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파악하고, 분석결과를 향후 업무개선에 참고할 수 있도록 환류체계 구축을 위해 국민평가단에 의한 정성평가를 도입하였으며, '16년은 시행 첫해임을 감안 원시값을 일반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80점으로 목표치를 설정	3대 분야별(국민불편개선, 정보취약계층 접근성 제고, 창업 및 기업활동 지원) 대표사례 각 1건에 대한 국민평가단 평가 *국민평가단 : 정부3.0 국민디자인과제 추진단, 정책수혜자, 일반국민등 50여명으로 구성	3.0 서비스정부 사례로 제출하는 과제에 대한 정성평가

2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Ⅰ-1-②)

□ 추진배경 (목적)

○ 재정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배분 필요

○ 상반기 조기집행을 통한 경제성장의 추진력 확보 및 국가 재정의 경기부양 효과 제고 필요

○ 국회 상임위 및 예결위의 예·결산 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통해 재정의 효율성 제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방송통신 분야의 중기 중점투자방향, 투자우선부야 등을 반영하여 중기('16~'20년) 재정계획 수립

○ 사업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투자하여 '17년도 예산안 편성

○ 집행실적 점검을 통해 집행이 미진한 사업을 독려하여 상반기 조기집행률 달성 추진

○ 예산집행심의회 운영을 통해 재정집행의 적정성 강화

○ '15년도 결산국회 시정요구사항 조치 및 '17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심사 결과 적극 반영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16~'20년 중기사업계획 수립	'16.1월말	
	결산보고서(성과보고서) 제출	'16.2월말	
2/4분기	'17년도 예산안(기금포함) 자체 편성 및 부처요구서 마련	'16.4~5월	
3/4분기	'17년도 예산안(기금포함) 기재부 심의 대응	'16.6~8월	
	'15회계연도 결산 국회 심의	'16.8월	
4/4분기	'17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16.9~12월	
연중	예·결산 관련 요구자료 제출	수시	
	'15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 조치	수시	
	월별 집행실적 보고서 제출	매월	
	재정조기집행 점검	매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방송·통신 사업자 : 효율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방송통신시장에 공정한 경쟁체제 도입 및 방송 인프라 개선

- 국민 : 재정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통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보호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이용자 편익 증진

○ 이해관계자

- 방송·통신 사업자 : 각 재정사업자들에게 우선순위조정 등을 통한 재원 배분 시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해관계가 성립

□ 기대효과

○ 유사·중복 사업의 통폐합,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의 축소·폐지 등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배분

○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및 재정집행 상황점검을 통해 정부의 재정집행 기조에 부응하고 방송·통신 분야 산업 활성화에 기여

○ 체계적이고 정확한 예·결산 업무 처리를 통해 재정관리 전반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효과적인 국회업무 수행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3	'14	'15	'16			
기관별 조기집행 목표 달성률	87%	107%	113%	100%	재정당국과 협의한 '16년 목표치에는 최근 3년간의 집행실적이 기반영되어 있어 목표치를 100%로 설정함 ※'15년도 조기집행 목표치 : 54.9%, '16년도 조기집행 목표치 : 55.2%	(상반기 일반회계 집행률/상반기 일반회계 집행계획률)*100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위원회와 미래부가 공동 관리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집행계획은 미래부 사업의 집행실적 달성여부가 유동적이므로 제외함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상으로 수립된 계획액 및 집행액

3 사이버안전 및 비상대비 관리체계 강화(Ⅳ-1-③)

□ 추진배경 (목적)

○ 안전한국훈련, 을지연습 수행과 보안시설로 지정된 방송시설에 대한 보안관리를 강화하여 국가의 위기관리체계 확립에 기여

○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충무계획 수립과 중점관리대상 지정업체에 대한 정확한 자원조사 실시로 비상대비태세 구축

○ 사이버 테러 등 신규 보안위협의 출현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및 신규 IT서비스에 대한 취약점 제거 및 보호대책 강화

* 근거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제35조
- 통합방위법 제21조,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8조, 제10조, 제14조, 보안업무규정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5조, 제6조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방통위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분석·평가 및 보호대책 수립 강화를 통해 관리기관의 정보보호 수준 향상

○ 중요 방송사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여 방송재난 유형별 대비태세 강화

○ 안보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충무계획 작성·시행 및 실시계획 승인

○ 비상대비분야 확인평가 및 중점관리지정업체(동원지정업체) 자원조사 실시로 비상대비 관련 문제점 개선과 우수업체 선정

○ 보안시설로 지정된 방송시설에 대한 자체 보안경비 계획의 수립·시행 관련 사항 확인, 출입자 통제의 적정성 등에 대한 보안감사 강화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동원자원조사 실시	'16.2월	
	2016년도 보안업무추진계획 수립	'16.2월	
2/4분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정	'16.5월	
	201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16.5월	
	충무집행계획 수립 및 검토·승인	'16.5 ~ 11월	
	상반기 보안감사 실시	'16.6 ~ 7월	
3/4분기	2016년도 을지연습 실시	'16.8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 이행 점검	'16.9 ~ 10월	
4/4분기	비상대비 확인 점검	'16.10 ~ 11월	
	하반기 보안감사 실시	'16.11 ~ 12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추진실적 및 익년도 계획 보고	'16.11 ~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국민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사이버 침해사고 대비와 주요 방송사의 재난 및 전시 대비를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이해관계자

- (사이버안전) 정부·공공기관(미래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본인확인서비스, 민간아이핀 제공기관)
- (비상대비) 주요 방송사를 포함한 동원지정업체 및 비밀특례기관

□ 기대효과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정보보호 수준향상을 통한 침해사고 대응 능력 강화 및 신규 IT서비스의 사전 취약점 제거를 통한 정보보호 조치의 효율성 제고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및 을지연습으로 위기상황 대비 능력 향상과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안전한국(Safe Korea) 기반 마련

○ 현실성 있는 위기상황을 고려한 충무계획 수립 등을 통해 전시 위기상황에도 중단없는 방송기능 유지 태세 확립

○ 중요 방송시설에 대한 취약요인 개선, 안전점검 등을 통한 안전 및 보안 체계 강화로 대국민 생활안정과 재산보호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3	'14	'15	'16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호 수준율	신규	신규	신규	65%	'16년 신규 지표로서 목표치는 미래부 소관의 신규 지정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최초 평균 수준율을 참조 ※ 방통위는 '15.12월에 6개 업체가 최초로 지정됨	AL(%)=(T/5)x100 ※ AL:수준율, T:전체 기관의 수준평가 점수 평균 (5점 만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서
비상대비 및 보안점검 달성률	신규	신규	신규	100%	목표대비 실적지표로서 100% 달성해야하는 당위 지표임 <'16년도 목표> -자원조사 대상업체수:47개 -비상대비 점검 목표:8개 -보안점검 목표 : 16개	{[(자원조사실시업체/자원조사대상업체)×0.3]+[(비상대비 점검기관수/비상대비 점검 목표기관수)×0.3]+[(보안점검기관수/보안점검 목표기관수)×0.4]}×100	내부자료

성과목표 Ⅳ-2 효율적인 행정관리와 신뢰받는 행정지원

(1) 주요 내용

□ 규제개혁 적극 추진

○ 양적 과제 발굴 방식을 지양하고 국민과 기업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성과·질적지표 중심으로 규제개혁과제를 선정하고 연내 성공적 이행 추진

□ 성과관리 및 국민만족도 효율성 제고

○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립, 중간점검 및 자체평가를 시행, 평가결과 환류를 통하여 위원회 정책성과 수준을 제고하여 국민이 행복한 방송통신 환경조성에 기여

□ 일잘하는 공직환경 조성

o 유연근무제, 가정의 날 등을 활성화하여 생산적인 근무문화를 정착시키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삶의 추구

o 공직가치가 확고한 인재, 전문성을 갖춘 인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o 중소기업 및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 지원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3	'14	'15	'16			
효율적 행정관리 및 신뢰받는 행정지원 추진율	신규	신규	100	100	효율적인 행정관리 및 신뢰받는 행정지원 추진을 위한 요소별 목표달성률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100% 달성을 목표로 함	[(규제개혁과제 이행 목표달성률×0.3)+(정책평가 만족도 목표달성률×0.4)+(유연근무 활성화 추진 목표달성률×0.3) × 100	내부자료, 각종 계획 수립 및 실적자료, 홍보자료 권익위 통보문서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관한 국민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이 다수 존재

○ 방송통신 정책은 국민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깊은 정책으로 다양한 창구를 활용한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요구

○ IT 기술 발달로 UHD TV 등 고화질 디스플레이 시장을 두고 국가 간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고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인터넷 新서비스, 위치정보 시장 등은 더욱 확대될 전망

- 현재 국내 방송·통신 시장의 잠재적 발전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여러 규제로 인해 시장 활성화가 지연

○ 기업들은 관련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있으나,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는 위치정보 보호 등의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국민의 프라이버시권 약화, 시청권 침해 된다는 우려 제기

○ 일·가정의 양립 확산과 공직생산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근무행태를 통한 공직자의 역량 강화 필요

- 유연근무제 등의 제도들은 마련되어 있으나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기관장 및 부서장 등의 적극적인 시행의지가 필요함

○ 조직목표와 연계한 인재개발, 비공식 다양한 학습, 자기주도 학습환경조성으로 인재개발 Trend 변화

○ 공공구매 제품의 성능, 디자인, 관리·유지보수 등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 및 중증장애인시설 제품의 이용자 선호도 낮음

□ **대응방안**

○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수렴 및 이해관계자 대상 설명회 등 홍보 활성화를 통해 법령정비 및 규제개혁의 추진동력 확보

○ 국민의 불편을 조속히 발견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한 사항을 성과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효율성을 증진

○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국민만족도를 제고하고, 주요 정책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한 사기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

○ 기관장 부서장 등이 의지를 가지고 구성원들로부터 유연근무제 등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유도

○ 소규모 맞춤식 교육을 실시하고,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온라인·모바일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활용

○ 이용자 만족도 및 재구매율 제고를 위해 충분한 시장 조사와 품질·가격 비교 등을 실시하여 제품을 구매

4.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1 규제개혁 적극 추진(Ⅳ-2-①)

□ 추진배경 (목적)

○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16년도 업무계획 등에 제시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발굴한 규제개혁과제를 관리

- 규제개혁 과제의 성공적인 연내 이행을 위해 과제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 독려하고 개선된 과제는 성과 홍보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규제개선 과제 발굴	'16.1월	
2/4분기	비용분석 가능한 폐지·완화 규제 발굴	'16.4월	
	상반기 규제개혁 과제 추진상황 점검	'16.6월	
3/4분기	폐지·완화 규제의 비용분석 회의 실시	'16.7월	
	규제개혁 과제 추진상황 점검	'16.9월	
4/4분기	규제개혁 성과 홍보, 폐지·완화 규제의 비용 적립	'16.11월	
	국무조정실에 '16년 규제개혁 실적보고	'16.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방송통신사업자 및 서비스 이용자

- 방송통신 분야 규제개혁을 통해 사업자의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편익을 제고함

○ 이해관계자 : 방송통신사업자, 관계 부처

- 규제개혁과제 추진 과정에서 방송통신사업자 및 관계 부처 간 의견 대립 존재

□ 기대효과

○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여 투자 촉진 및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이용자 등 국민 불편 해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3	'14	'15	'16			
규제개혁과제 이행률	60%	60%	70%	80%	○ 개선계획 대비 실적 측정 -양적 과제 발굴 방식을 지양하고 성과·질적지표 중심으로 규제개혁과제 9개를 선정하여 달성 난이도 상승 -그럼에도 불구하고'16년도는 최근 3개년도 실적 평균 73% 및'15년도 목표치 70%보다 각각 7%, 10% 상승한 80%로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	(규제개혁 이행과제수/ 규제개혁 과제수) x100 * 이행여부 판단기준: -법률 제개정 사항은 국회 제출까지를 이행으로 판단하고 시행령이하 법령의 경우 실제 제개정 여부로 판단 -법령 제개정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규제개선 관리카드상 기재된 개선내용을 보고 이행여부 판단	규제정보화시스템 및 내부자료

② 통합성과관리 효율성 제고(Ⅳ-2-②)

□ 추진배경 (목적)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연도별 목표를 수립하고 정부업무평가 향상을 위해 국민체감형 관리과제 발굴 및 성과지표 개발

○ 국무조정실의 「2016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지침」 및 「2016년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정책·예산·조직·인사 등에 반영하여 정책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위원회의 대국민 정책만족도 향상을 위해 자체평가 → 부서 → 개인평가를 연계하는 통합성과 관리체계 운영을 통한 위원회 주요정책의 성과관리 내실화 필요

○ 적극적인 민원관리로 국민중심의 민원행정을 구현하고, 소통 품질 향상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관리과제 발굴 다양화 추진

-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립, 중간점검 및 자체평가를 시행, 평가결과 환류를 통하여 위원회 정책성과 수준을 제고하여 국민이 행복한 방송통신 환경조성에 기여

- 자체평가위원을 통해 '16년도에 방통위에서 추진할 과제를 조사하여 성과관리시행계획 관리과제에 반영하고 과제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강화

- ’16년 업무계획, 재정사업 성과계획서 등을 반영한 2016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안)을 수립하고 전자통합평가시스템을 활용한 정책과제 추진 및 실적 관리 이행

○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의 환류 시행

- 국무조정실의 “2016년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에 따라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주요정책’과 ‘행정관리역량’에 대한 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성과 보상 등 환류체계에 따른 사후 절차 이행

- 방송통신 주요정책에 대한 개인의 업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등을 측정하는 부서성과평가와 개인평가를 통해 방송통신정책의 품질을 제고하고 보수·인사관리에 활용

- 성과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확산 및 지표개발을 위한 직원대상 외부전문가 교육을 강화하고, 성과관리 관리과제의 유기적인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 및 우수과제 선정·포상 실시

○ 국민신문고 민원평가 부진지표에 대한 집중 관리체제 유지

- 민원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 신규·전입자를 대상으로 수시 교육실시 및 해피콜(주요 민원인에 대한 확인 전화) 강화 등 추진

- 민원 회신문 양식 준수여부 등 위반사항을 점검하여 담당자에게 이메일 통보하는 등 민원 답변 충실도 향상

- 방통위 소관 민원이 아닌 경우, 부처간·부서간 민원 이송시간을 준수하고 「이송민원 분류기준표」를 마련하여 활용하는 등 민원 이송 철저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16년도 자체평가 실시	'16.2월	
	2016년도 최종성과평가 실시	'16.2월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수립	'16.3월	
	민원실 전화상담시스템 기능보강	'16.3월	
2/4분기	국민신문고 운영 및 평가에 대한 교육 실시	'16.4월	
	2016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안) 및 자체평가시행계획(안) 수립	'16.4월	
	4급 이상 직무성과계약 체결	'16.5월	
	2016년도 국정과제 관련 주요정책과제 시행계획 수립	'16.5월	
	부서 성과평가 기본계획 수립	'16.5월	
3/4분기	2016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관리과제 상반기 이행상황 점검	'16.7월	
	성과관리 정책성과 만족도 조사 실시	'16.9월	
4/4분기	4급 이상 직무성과계약 이행점검 실시	'16.10월	
연중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수시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국민 : 국민제안 등 방송통신 정책에의 참여 및 소통을 통하여 방송통신 정책 국민만족도 제고

- 내부정책 담당자

  · 성과평가결과에 따른 정당한 성과보상 등 환류과정을 통해 조직성과 및 개인능력의 향상을 도모

  · 국민과 소통하는 정책의 수립, 집행 및 환류 등 국민체감형 정책실현으로 대국민 정책 만족도 향상

○ 이해관계자

- 외부 : 방통위는 사후 규제기관으로 사업자간, 사업자와 국민간의 이해관계 대립 상존

- 내부 : 자체평가 계획 수립과 추진, 업무수행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인사·보수·조직·예산 및 정책개선 등에 영향을 받는 등 성과평가와 이해관계가 있음

□ 기대효과

○ 성과지표와 목표간 연계를 통해 성과중심 행정을 구현하고, 개인 및 조직에 대한 성과평가 시 주기적 환류를 통한 내부 소통 강화로 지속가능한 성과 창출

○ 국민 편의를 적극 반영한 민원제도 운영을 통하여 민원 만족도 향상 및 국민체감형 정책 실현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3	'14	'15	'16			
통합성과 관리율			신규	91%	성과관리 이행율과 성과관리의 국민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목표치를 91% 수준으로 설정' *정책성과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10점 만점 척도) '13(5.16), '14(5.29), '15(5.41)의 3년실적 평균(5.29)	성과관리 이행율*(100%)x0.2+ 정책평가 만족도**(60점)x0.8 *부서성과평가시행, 성과계약최종평가시행	내부자료 및 (주)한국갤럽에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조사

3 일잘하는 공직환경 조성(Ⅳ-2-③)

□ 추진배경 (목적)

o 근무혁신 활성화로 소속 공직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업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

o 교육훈련을 통해 공직가치가 확고한 인재, 전문성을 갖춘 인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

o 정부기관의 공공구매 법정의무 구매율*을 적극적으로 초과 달성하여 중소기업 및 중증장애인시설의 판로 확대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

* 법정의무 구매율 : 중소기업 제품(50%), 기술개발제품(10%), 중증장애인시설 생산품(1%)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o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는 공직문화 환경 조성을 통해 공직 생산성 제고 및 삶의 질 향상

- 유연근무제 등 복무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월별 이용실적 점검을 통해 활성화 추진

- 정시 퇴근을 위한 가정의 날(매주 수, 금) 활성화 추진

- 관광주간 및 휴가기간 장·차관들부터 솔선수범하여 연가를 사용하도록 안내

o 기본에 충실한 체계적 교육훈련, 공직입문·공직가치 교육 강화, 글로벌 역량 교육, 자기주도 학습을 통한 인재개발

- 조직목표와 연계한 자기개발 계획 수립·실천 및 개개인의 교육 수요를 고려한 맞춤식 직무역량 교육 활성화

- 신규·승진자를 위한 기본 직무 교육 등 입문교육을 강화하고, 공직가치 전문강사를 활용한 체계적 교육을 통해 공직가치 함양 도모

- 자체 외국어 위탁교육 실시 및 자기주도 외국어 교육 지원을 통해 글로벌 역량 강화

- 직무 연구모임 육성·지원, 온라인·모바일 교육 활용 확대

o 공공구매 법정의무 구매율 달성을 위해 구매가능 품목 및 해당 업체 정보를 발굴·공유하고 구매실적을 수시 점검

- 분야별 전자시스템(공공구매종합정보망, 꿈드래 등)을 적극 활용

- (중소기업제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정부기관 총 구매액(공사, 용역, 물품)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함

- (기술개발제품) 연간 중소기업제품(물품) 총 구매액 중 기술개발제품을 10% 이상 구매하여야 함

- (중증장애인생산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관련, 기관의 총 구매액(용역, 물품) 중 1% 이상 구매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전년도 복무관리 종합계획 결과 보고	1월	
	자체 외국어 위탁교육	1월	
2/4분기	성희롱 및 성폭력 방지교육	5월	
	복무관리 종합계획 수립	5~6월	
3/4분기	독서통신 교육	7~8월	
	안보의식 강화를 위한 안보교육	8월	
4/4분기	성매매 및 가정폭력 방지교육	11월	
	유연근무제 만족도 조사	12월	
매 월	유연근무제 이용 실적 점검	연 중	
연 중	복무점검 등 근무기강 확립	연 중	
연 중	가족사랑의 날 운영	수 시	
연 중	공공구매 및 구매율 점검	연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o 수혜자

- (직원) 직원들의 필요역량을 고려한 교육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자기개발 및 사기앙양 실현

- (중소기업 및 중증장애인생산시설) 해당제품 우선구매를 통한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및 중증장애인의 자활 지원

o 이해관계자

- (행정기관장) 유연근무 실시자가 근무성적평정, 전보, 승진 등 인사 상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리

- (부서장 및 동료) 유연근무 및 연가에 따른 업무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 등 필요

- (교육기관) 해당 전문성 있는 교육 실시를 위한 적합한 교육기관과 능력 있는 강사 필요

□ 기대효과

o 유연한 근무 여건 조성으로 효율적·생산적 근무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무원 개인에게는 직무 수행에 적합한 교육 기회 확대

o 직원들의 전문성 제고 및 공직가치 확립을 통해 방송통신 분야에서 핵심인재 육성

o 국가배려시책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제품판로 확대와 기술개발 활성화를 유도하고 중증장애인의 경제 자립을 지원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3	'14	'15	'16			
유연근무제 활성화 추진율	-	-	신규	2.6%p	전년도 유연근무활용률 47.4% 대비 2.6%p 증가 추진을 통해 , 위원회 소속 직원의 유연근무활용률이 50%수준으로 될 수 있도록 목표치를 적극 설정 ※ '15년도 중앙부처 평균 유연근무활용율 : 18.9%	전년 대비 유연근무활용률* 증가분(%p) = 2.6(%p) *유연근무제 활용률 : 객관적 산출을 위해 행정관리역량평가 기준을 적용(연중 12일 이상 유연근무를 한 직원 수/전체 직원 수×100)	표준인사시스템 통계 자료
인재개발 활성화 및 효과성	-	-	신규	1.7%p	전년도 상시학습이수율 91.3% 대비 1.7%p 증가 추진을 통해, 위원회 소속 직원의 상시학습이수율이 93%수준으로 될 수 있도록 목표치를 적극 설정 ※ 목표의 객관성을 위하여, 93%이상이 최고점이며 이수율 하락에 따라 낮은 점수를 부여하는 「행정관리역량평가」 기준을 적용	전년 대비 상시학습이수율 증가분(%p) = 1.7(%p)	교육이수 실적
공공구매 법정 의무 구매율 달성도	-	-	신규	100%	o 분야별 법정 의무구매 기준의 120%를 구매목표로 적극적으로 설정 - (A)중소기업제품 : 60%[50%] - (B)기술개발제품 : 12%[10%] - (C)중증장애인생산품 : 1.2%[1%] ※ [ ]안은 법정 의무구매 기준	o {(A목표 구매율 달성율×0.4) +(B목표 구매율 달성율×0.4)+(C목표 구매율 달성율×0.2)}×100 *목표 구매율 : A(60%), B(12%), C(1.2%)	디브레인,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꿈드래 사이트 등

성과목표 Ⅳ-2 방송통신정책의 홍보 및 국제협력 지원

(1) 주요 내용

□ 대국민·대언론 정책홍보 강화

○ 언론을 통한 정확한 정책정보 제공 및 대국민 눈높이 맞춤형 홍보를 통해 국민의 정책 체감도·이해도 제고

□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 정부 간 협력, 국제기구와의 지속적인 교류 추진 및 통상협상 능력 제고를 통한 방송통신 분야 국제협력 강화

- 정부 간 정책교류와 국제기구 의제에 적극 대응하여 각 국의 정책을 공유하고, WTO, FTA 등 통상 협상을 통해 주요 진출 대상국의 시장 개방 추진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3	'14	'15	'16			
방송통신정책 홍보 및 국제협력 지원 추진율	신규	신규	100%	70%	국민과 함께하는 방송통신정책 홍보 및 방송통신 국제협력 향상도를 목표로 설정	[(정책홍보만족도×0.5)+(방송통신 국제협력 향상도(75%) ×0.5)×100	내부자료, 각종 계획수립 및 실적, 홍보자료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관한 국민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정책에 대한 다양한 비판 존재

○ 주요 국제회의 참석, 해외 주요인사 방한, 국제행사 개최 및 한류 콘텐츠 확산을 위한 국내 방송 콘텐츠의 해외진출 지원 등 방통위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음

○ 증가하는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할 우수 전문 인력이 부족한 실정

□ 대응방안

○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국민에게 정책 추진 이유와 배경, 기대효과, 성과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원활한 소통체계 확립

○ 국민이 방통위에 요구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 전문인력 확보 노력

(4)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1 대국민·대언론 정책홍보 강화(Ⅳ-3-①)

□ 추진배경 (목적)

○ '16년도 주요정책 내용 및 이행 성과에 대한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를 통해 대국민 정책 인지도 및 이해도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기획홍보 강화)** 실·국과 사전협의를 통해 주요정책 및 이슈 관련 홍보계획을 수립·이행함으로써 체계적인 홍보 실시

○ **(기관장 현장소통 강화)** 기관장의 방송출연, 강연, 정책현장 설명회, 정책이해관계자 간담회 등 다양한 대외 활동을 통한 주요 정책 추진내용 설명 및 현장 의견 수렴

○ **(온라인 홍보 활성화)** 방통위 블로그 및 SNS, 모바일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여 대국민 눈높이 맞춤형·참여형 온라인 홍보 실시

○ **(취재 지원 및 언론홍보 내실화)** 언론간담회, 정책현장 설명회 등 언론과의 스킨쉽 및 소통 기회를 확대하고 취재지원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정책홍보 효과 제고

○ **(직원 홍보역량 강화)** 온·오프라인 홍보기법, 보도자료 작성요령, 언론 대응 기법 등 직원 홍보교육과 연말 보도자료 콘테스트 입상 직원 포상 실시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방통위 업무계획 홍보	'16.1~2월	
	실·국 대상 홍보·공보 등 평가	'16.2월	
2/4분기	블로그 해외통신원 모집 및 운영	'16.4월~	
3/4분기	직원 홍보교육 실시	'16.9월	
	외신기자 간담회 실시	'16.9월	

4/4분기	출입기자단 정책 현장방문 실시	‘16.10월	
	보도자료 콘테스트 실시	‘16.12월	
	출입기자단 송년회 실시	‘16.12월	
연중	보도·해명 자료 배포 및 브리핑 지원	수시	
	출입기자 간담회 실시		
	온라인홍보 이벤트 개최		
	신문·방송·인터넷 등 언론모니터링		
	SNS(트위터, 페이스북) 운영		
	산하(유관)기관 홍보협의회 운영		
	주간 정책홍보 계획 작성		
	주요정책 기획홍보		
	위원장 연설문·기고문 작성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대국민·대언론, 방송통신 관련 사업자 등

□ 기대효과

○ 주요정책 내용 및 성과를 온·오프라인 홍보매체를 통해 효과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민 정책신뢰도·이해도 제고

○ 최근 급속히 확산되는 소셜미디어(페이스북, 트위터 등) 등 온라인 환경 변화에 따른 국민과의 정책소통 채널 다변화에 신속히 대응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3	’14	’15	’16			
정책홍보 만족도	-	65점	63점	65점	과거 실적의 평균치(64) 및 실적 추이 감소세(-2)를 감안하여 ’16년에는 과거 실적 평균치보다 상향된 65점을 목표로 설정	만족도조사결과 *방송통신정책 수용자(방통위 홈페이지·SNS 방문 국민),대언론(출입기자 대상)	대국민·대언론 정책홍보만족도 조사결과

2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Ⅳ-3-②)

□ 추진배경 (목적)

○ 방송통신 규제 관련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강화 및 국제적 현안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한 교류 협력 활동 지원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3조(방송통신 국제협력)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정부간 협력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

- 지역별 주요국가와의 고위급 면담 및 MOU 체결 등을 위한 방송통신 교류협력 활동 지원

- 국제회의를 통한 협력의제 발굴, 방송통신 규제 분야 현안의 신속한 검토, 효과적 대응전략 수립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베트남 교육방송 개국식 참석 및 정보미디어부(MIC) 장관 면담	'16.1월	베트남
	스페인 MWC 참관 및 스페인 개인정보보호 정책 공유	'16.2월	스페인
	체코 통신위원회(CTU) 방문 및 이용자 보호 방안 논의, MoU 체결	'16.2월	체코
	프랑스 CSA와 방송통신 협력방안 논의 및 독일 CeBIT 참관	'16.3월	프랑스, 독일
2/4분기	NAB참관 및 미국 UHD TV 정책·국제협력 논의	'16.4월	미국
	케이블 박람회 참관 및 방송통신 관련 기관 면담	'16.5월	미국
	ITU 세계규제자심포지엄 참석 및 세계 방송통신 규제정책 동향 파악	'16.5월	이집트
3/4분기	ITU 아-태 규제자 라운드테이블 참석	'16.7월	파키스탄
4/4분기	남북 방송통신 국제 컨퍼런스 개최	'16.10월	미정
	'16년 성과정리 및 '17년 계획 수립	'16.12월	
연 중	해외 방송통신 관련기관 면담 및 협력방안 논의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국내 방송·통신사업자, 방송통신 관련 학계 등 전문가, 시청자 일반

○ 이해관계자 : 상대국 방송·통신사업자, 방송통신 관련 정책 당국

□ 기대효과

○ 방송통신 규제 분야 정부 간 정책교류 및 주요 국제기구 의제 관련 활동을 통해 한국의 방송통신분야 영향력을 제고하고 국제 협력 강화에 기여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3	'14	'15	'16			
방송통신 국제협력 향상도	-	-	신규	75%	최근 3년 실적 증가 추세 및 예산 증가 폭을 감안하여 '16년도 목표치를 18건으로 설정 + 최초 설정하는 지표로 만족도(50) 설정	[(방송통신 국제협력 추진실적/계획)×0.5 +(방송통신 국제협력 만족도*)×0.5]×100	협력, 협상 경과 자료 및 방송통신 수혜기관 설문조사 실시

Ⅳ 환류 등 관련계획

1. 이행상황 점검 계획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 ‘16.6월말에 2년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방송정책, 이용자정책, 행정관리, 재정사업 분야별 전문가로 재구성

- 한 직업별 구성 비율이 60%가 되지 않도록 하고, 15인 이내의 외부위원과 내부위원 1인 이상(당연직)으로 구성

○ 전체회의 및 소위원회로 운영하되, 소위원회는 자체평가 분야별로 구성

○ 성과관리 시행계획, 자체평가 계획 등의 심의와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및 자체평가 실시결과를 심의

○ 성과관리에 관한 절차, 환류 등 성과관리의 전반에 대한 사항을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

□ 평가지원조직 구성

○ 효율적인 평가업무 관리와 체계적인 평가 추진체계 확립을 위해 평가업무를 총괄하는 총괄팀과 자체평가위원회 분과별로 평가활동을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평가지원팀을 구성·운영

- 자체평가 기본방향, 분야별 평가계획 등 기획 및 종합·조정 업무를 수행

- 반기별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총괄, 평가 분야별 점검결과 보고서 및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분석

- 전체회의 및 소위원회 보고자료 작성 및 평가분야 정책에 대한 업무 설명회, 현장방문, 간담회 실시 등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을 지원

□ 평가(점검)의 시행

○ 매년 상반기에 세부과제별로 일정계획에 따른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연이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정상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조치

○ 연간 추진실적 평가 시, 평가지원팀은 각 소관별 자체평가 계획에서 제시된 분야별 평가지표의 측정기준에 따라 추진실적 및 증빙자료를 소위원회에 제출

- 서면점검, 현장점검 등을 통해 파악한 자료를 토대로 자체평가 계획에 따라 평정한 후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및 심의·의결

<자체평가 실시(점검)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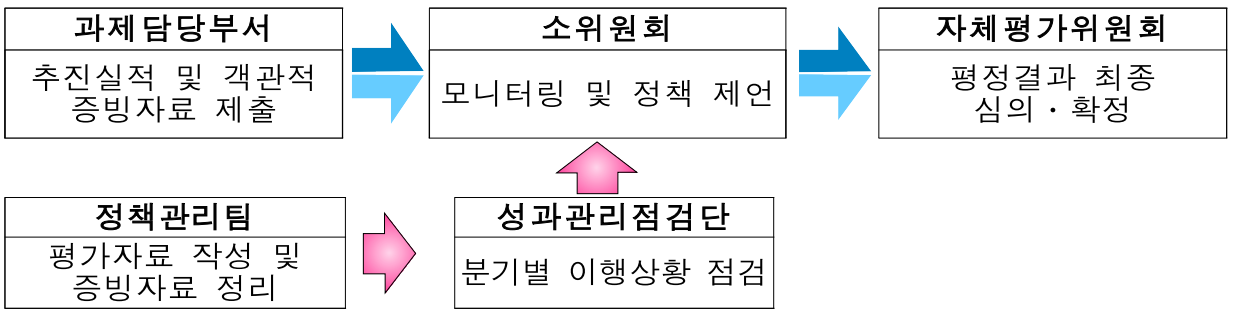

□ 주요 일정

2016년 2/4분기 ➡	o 자체평가계획 수립 o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2016년 3/4분기 ➡	o 상반기 이행상황 점검 실시
2016년 4/4분기 ➡	o 자체평가 정책설명회 실시 o 하반기 자체평가 실시

2. 평가결과 환류체계

□ 성과관리의 주요 환류체계

○ 성과관리 관리과제별 자체평가(7등급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과제별 개선보완사항을 도출하여 다음 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반영하는 등 정책개선에 활용

○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삭감을 검토하고 성과가 미흡하지 않으나 성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않은 사업은 예산 증액을 지양

○ 성과관리 자체평가 결과는 부서성과평가 점수로 반영하여 4급(복수직)이하 성과상여금과 과장급 이상 성과연봉 평가 시 활용

< 평가결과 환류체계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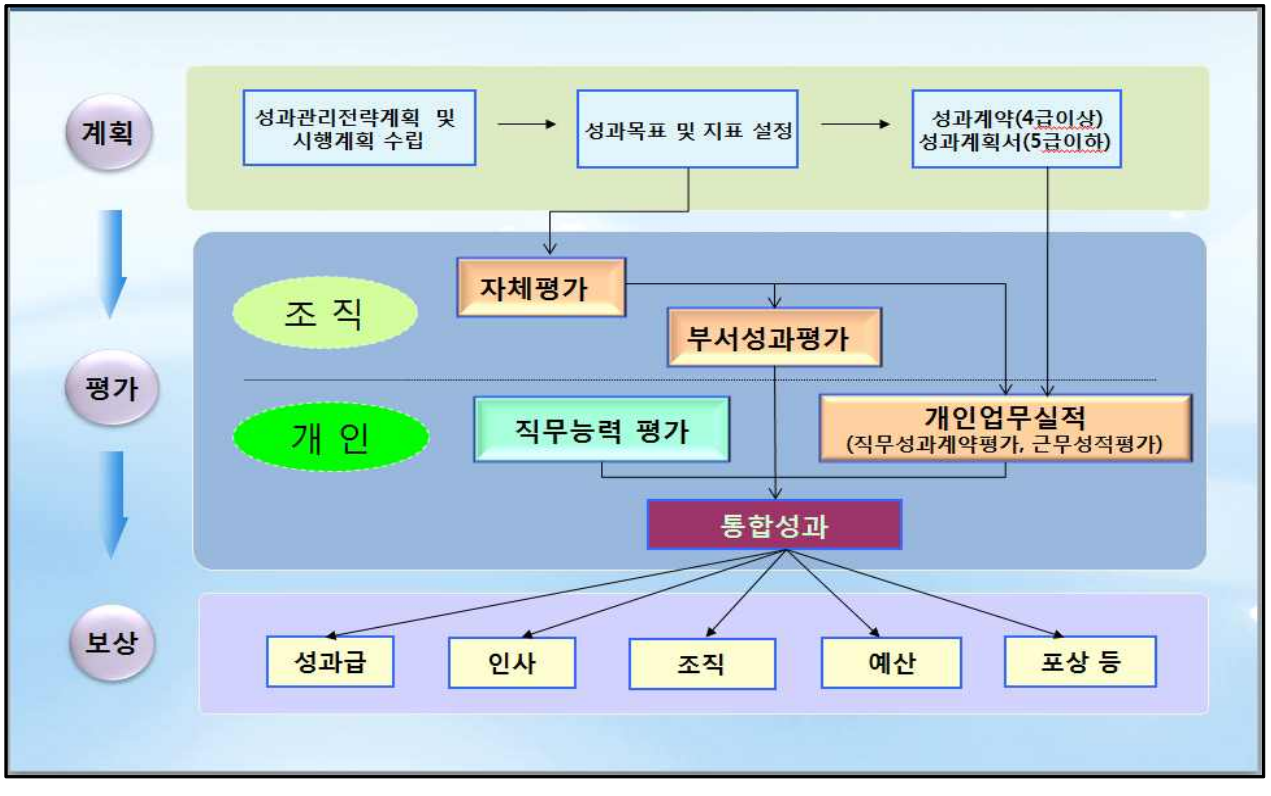

□ 정책개선 및 정책품질 제고에 활용

○ 자체평가 수행과정에서 평가위원, 평가지원 TF 등이 발굴 또는 제시한 개선사항 등을 검토하여 추진계획 수립 시 반영

○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대표적인 우수·미흡사례, 개선·보완 사례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각 실국에 전파

- 평가결과 개선·보완 조치계획은 다음 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반영하여 향후 평가 시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관리

□ 조직 및 정원관리에 활용

○ 효율적 조직관리를 위해 전년도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소요정원 및 중기 인력운영계획 수립

○ 평가 및 직무분석을 통해 인력조정·재배치, 부서기능 재조정 등 탄력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유동정원제 실시

□ 예산편성 및 조정에 활용

○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10점 이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다음 년도 예산안 편성 시 감액편성을 고려

○ 우수부서에는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우선적으로 검토 배분 추진

- 평가지표 중 사업계획 단계 평가가 “미흡”인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 통·폐합 등 구조조정 추진

□ 승진·전보 등 인사운영에 활용

○ 복수직 4급 이상 개인성과평가 결과, 5급 이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승진·인사 심사 및 전보·파견 등 보직관리에 활용

- 업무실적이 탁월한 우수인력은 주요보직 전보 및 부외파견 시 해당직원의 희망사항을 우선 배려

○ 국내외 장·단기 교육훈련 대상자 선정 시 업무실적이 우수한 직원을 우선 배려

□ 성과급 지급

○ 성과관리시행계획 과제는 개인평가 성과목표 과제로 반영·평가하고, 과제별 자체평가 결과는 부서성과평가 항목에 포함하여 개인성과 및 조직성과를 평가하고, 그에 따른 통합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별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

- 4급 이상 : 성과관리시행계획을 기준으로 연초에 작성한 '성과계약과제'에 대한 목표달성도(업무실적)와 직무수행능력, 부서성과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성과연봉의 지급등급 결정

- 5급 이하 : 부서성과평가(30%) 근무실적평가(60%) 이외에 성과급심사위원회 점수(10%)를 포함하여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 결정비율은 매년 초에 수립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에 따라 결정

< 개인 · 부서평가관리 체계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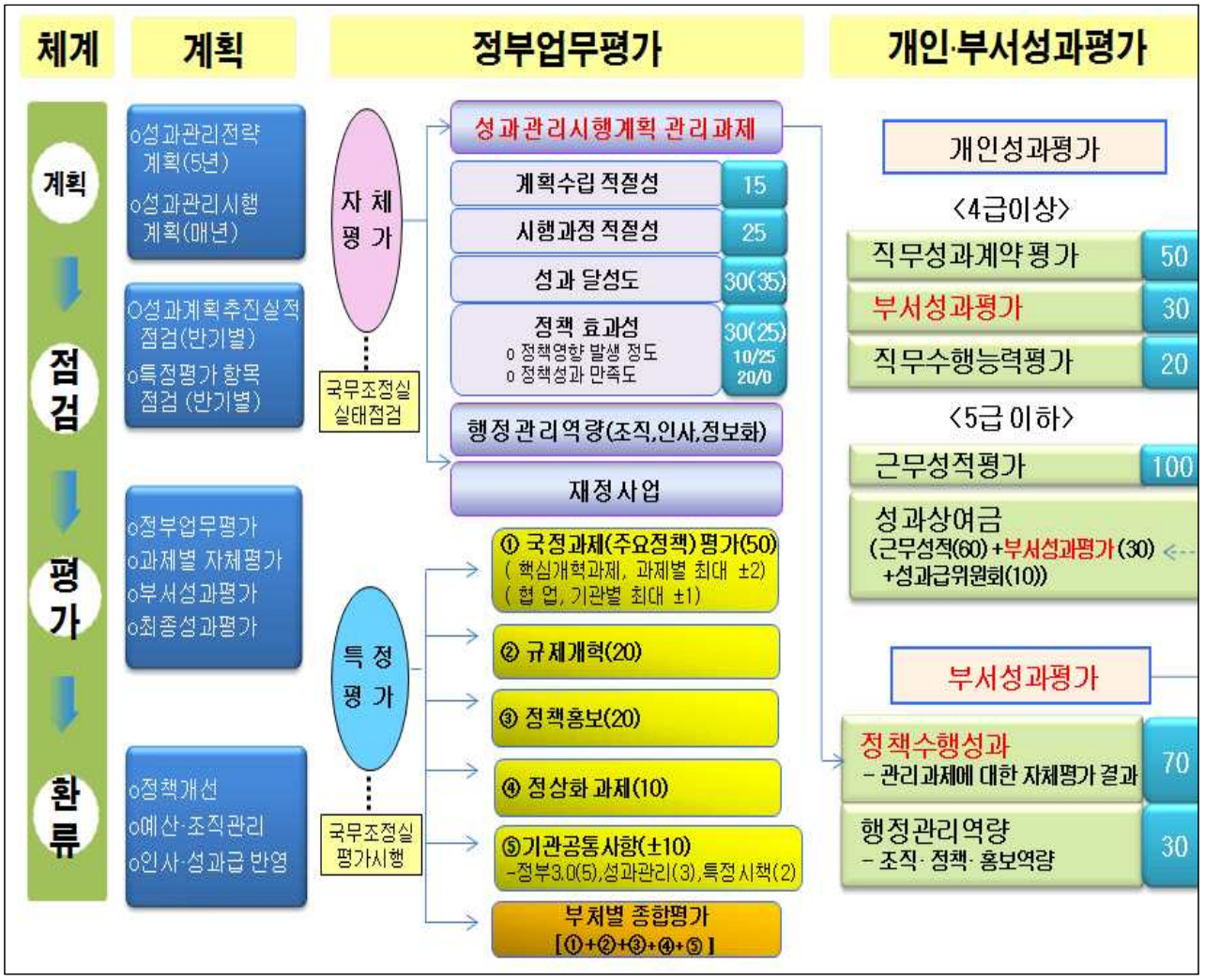

□ 자체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과제 포상(금) 지급

○ 2016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우수과제로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여 직원 사기진작과 적극적인 과제수행 동기 부여

- 포상대상 : 자체평가 결과 1등급 ~ 3등급 과제

- 포상규모 : 1등급 80만원, 2등급 50만원, 3등급 30만원

※ 통합성과평가의 평가요소별 반영비율

구 분	개인성과평가		부서 성과평가	가 점	합계
	직무성과 계약평가	직무수행 능력평가			
고위 공무원	50점	20점 (위원장 평가)	30점	-	100점
과장급	50점	20점 (실·국장 평가)	30점	위원장 : 2.5점	100+2.5점
복수직 서기관	50점	20점 (실·국장 평가)	30점	-	100점

※ 자체평가결과 반영방법

평가제도	반영방법
직무성과계약 평가	o 성과관리시행계획 성과지표는 직무성과계약 성과지표로 전면 반영
부서성과평가	o 주요정책과제 자체평가점수를 부서성과평가 정책수행성과(70%) 부문 평가에 100% 반영 - 자체평가위원회의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평가점수를 소관부서별로 배분

3. 변화관리 계획

3-1. 업무프로세스 개선

1 집중근무시간 운영

o (개념) 방통위 업무 특성을 감안하여 하루 중 업무효율이 가장 높은 시간대를 **핵심근무시간**(Core Time)으로 정하여, 그 시간대에는 **업무**에만 **몰입**

※ 방통위 집중근무시간 : 오전 9시 30분～11시 30분, 오후 2시～4시

o (대상) 정무직을 제외한 모든 소속 공무원

o (운영방안)

- 집중근무시간에는 전화, 인터넷, 티타임, 흡연 등 **사적인 용무**와 **휴식**을 **최대한 금지**

- 회의나 대면결재 대기, 타부서 방문 등 업무 집중을 저해시키는 행위 최대한 자제

2 가족 사랑의 날 및 문화가 있는 날 운영

o (개념) 매주 시행하고 있는 **"가족사랑의 날" 준수**를 통해 여가생활 및 자기계발 욕구 충족으로 **자기계발 및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에 소속직원들이 **"문화가 있는 날" 참여**를 통한 동참 분위기 조성으로 **문화가 있는 삶 실현** 및 문화소비 활성화

o **(대상)** 모든 소속 공무원

o **(운영방안)**

- **매주 수요일**은 **정시 퇴근 유도** 및 **시간외 수당**을 **미지급***하고 **매주 금요일**은 **부서 자율적**으로 정시 퇴근을 유도하여 **가족사랑의 날**을 **운영**

* 원칙적으로 시간외 수당을 미지급하되 국회, 예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간외를 사후 인정

- **매월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고 유연근무를 활용하여 **직원** 또는 **가족**과 함께 **영화, 공연 등**의 **문화행사 참여**

3-2. 조직문화 개선

1 자기주도적 근무시간제 설계(근무시간 선택제 · 집약근무제 활용)

o **(개념)** 개인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근무시간**을 **자율적 · 효율적**으로 **설계**하도록 하여 **기관 · 부서 차원의 생산성 제고**

① 근무시간 선택제

o **(개념)** 주 40시간 범위에서 **주 5일 근무를 준수하되**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요일별**로 **출근** 및 **퇴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

※ 예시) 월 · 화 · 수(08시~22시) 10시간, 목 · 금(08시~14시) 5시간 근무

② 집약근무제

o **(개념)** 주 40시간 범위에서 **매일**의 **근무시간**을 **자율 조정**하여 근무일을 **3.5일~5일 미만**으로 **근무일을 조정**

※ 예시) 1일 7시~21시까지 **12시간 근무시**(중 · 석식 1시간 공제) 주 **3.5일 근무**가 가능

※※ 개인건강 등을 고려하여 **하루 중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시간대는 06:00~24:00으로 한정**하고 **1일 최대 근무시간 12시간,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o **(대상)** 정무직을 제외한 모든 소속 공무원

o **(운영방안)**

- 자기개발, 육아 등으로 근무시간 선택제 등을 **희망**하는 소속**직원**이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록 자체교육** 등을 **적극 유도**

- **부서장**은 부서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이를 당해 공무원의 권리로 인정하여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적극 **허가**

- 소속 직원이 유연근무를 이유로 보수·승진 및 근무성적 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2 기관 · 부서 단위의 집단 유연근무제 활용

o **(개념)** 업무특성 등을 고려한 **실·국** 및 **부서별 집단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여 **업무생산성 제고** 및 **일과 삶의 균형 도모**

o **(대상)** 정무직을 제외한 모든 소속 공무원

o **(운영방안)**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선정하고 이날은 부서별로 **집단 유연근무제**를 **시행**하여 **부서 단위**로 **문화행사 참여**

  ※ 부서 전체직원이 8시 출근, 오후 5시 퇴근하여 "문화가 있는 날" 참여하는 등 부서단위 유연근무제 적극 활용

- 실·국 단위 **추계문화 행사, 워크샵 등** 실시시 실국 또는 부서 **전체**가 **유연근무**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유도**

- 부서별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월 1회**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는 "**유연근무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부서장 참여 유도**

3 연간 휴가계획 수립

o **(개념)** 개인별로 부여된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일과 삶의 균형 도모**

o **(운영방안)**

- 개인별로 **권장연가 일수를 반영**하여 개인별 **연간 연가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부서 서무 담당자**에게 **제출**

  ※ 특정시기에 편중되지 않도록 **월 1회 이상 연중 분산**하여 계획 수립하고 '16년은 근무혁신 지침 제정을 감안하여 3월중 연간 연가사용계획서 작성

- **부서장**은 부서원의 연가가 **특정 월·시기에 편중되지 않도록** 부서원의 **연가계획**을 **조정**한 후 **결재**

  ※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날·추석·연말연시·주말 전후의 연가사용을 적극 권장

4 권장연가제 실시

o **(개념)**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할 **권장연가 일수 공지** (매년 3월 31일까지)

o **(운영방안)**

- **권장연가 일수**는 소속 공무원 의견조사 결과, 전년도 **소속 공무원**의 1인당 평균연가일수 등을 고려하되 **전년도의 사용일 수 이상으로 설정**

  ※ '16년도 방통위 권장연가일수는 전년도 평균 연가 사용일 수 등을 고려하여 12일로 설정하고 매년 전년도 평균 연가일수보다 높게 설정

- **권장연가 일수**(12일)를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미지급**

- **부서장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매월 권장연가 일수 또는 개인의 분기별 **연가 사용계획상**의 **일수에 미달**하는 **직원이 연가**를 **사용토록** 유도

3-3. 직원교육 강화

□ 다양한 시책교육을 통한 주요 국정과제 공유·확산

○ 정부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를 위해 정부 3.0교육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체 직장교육을 분기별로 실시

○ 연간 교육훈련 시간의 30% 이상을 공직가치, 국정철학과 연계한 부처지정학습으로 이수하도록 의무화

○ 공직가치 내재화를 위한 사이버 교육을 통한 반부패, 청렴교육 이수를 독려

□ 공통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외국어 청취 과정 및 전화 외국어 과정을 운영

○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전 직원의 연중 다양한 청렴 활동에 대해 청렴마일리지를 부여하여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방안을 마련

□ 성과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관리 강화

○ 상시학습제도 정착을 통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공무원의 수행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제고

○ 직원이 조직목표와 연계한 자기개발계획서를 수립 할 때에 개인의 부족역량을 제시하고 조직목표 달성에 필요한 과정을 추천하는 코칭 실시

3-4. 효율적 예산집행 등을 통한 방송통신정책 추진 지원

○ 예산집행의 책임성 확보 및 집행과정에서의 예산 누수 방지를 위하여 철저한 증빙자료의 검토 후 집행

○ 국가 경제정책과 방통위 방송통신정책의 적극적 수행위해 재정사업의 분기별 집행점검을 시행하고 집행부진사업 독려

○ 자발적 경상경비 절감 효과 등이 있는 사업은 예산편성시 사업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신규내역과 조정 등을 적극 반영하여 경상경비 절감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토대 마련

3-5. 성과지표 관리방법 개선

□ 성과지표 관리방법

○ 2015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성과지표 타당성 연구결과로 도출된 과제별 예비성과지표 발굴 및 관리(지표 POOL)

- 방통위 성과목표 과제별 성과지표 관리를 통해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시 과제의 성과지표 선정에 참고자료로 활용

○ 성과관리 수준제고를 위해 각 실국 총괄담당 등으로 성과관리 T/F을 구성·운영

- 성과관리과제 및 성과지표 설정을 위한 회의 및 워크숍 등 개최 추진

○ 성과관리 제도개선 및 위원회 내 성과주의 확산방안 마련을 위한 타 부처 우수사례 벤치마킹 실시

○ 사후규제 업무 위주인 방통위 업무특성을 살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소통 강화를 유도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

○ 자체평가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성과지표의 선정, 관리에 대한 자문을 충분히 반영하여 성과지표의 합리성 확보

□ 성과지표의 정책대표성 제고

○ 성과지표는 성과목표의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하고, 가급적 구체적인 양적 수치로 측정 가능한 정량지표(계량지표)를 사용

- 성과지표의 구체성·명확성이 떨어지는 복합지표를 과제를 대표할 수 있는 단일 지표로 개발 노력

○ 성과지표는 해당정책을 대표할 수 있는 핵심적인 지표로 가급적 성과목표별 1개, 관리과제별 2개 이내로 설정

□ 성과지표의 변별력 강화

○ 성과지표 목표수준을 보다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평가 시 과제간 변별력을 확보하고 정책개선 효과 증진 노력

- 목표치의 적극성을 고려한 성과지표별 가중치 도입 등 도전적인 성과지표 설정을 유도하기 위해 성과지표 적극성 관련 평가지표 배점 확대

4. 현장의견의 정책반영 계획

□ 정책참여 활성화

○ 방통위가 추진하는 방송통신 분야 업무가 이용자의 편익과 연계된 정책이 다수이므로 대국민 의견청취 절차를 강화

○ 주요 국정과제 및 정책, 국민 관심이슈 등 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 등 정책 전 과정에 걸쳐 찬반토론, 의견제시,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국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온라인 소통의 장을 활성화

구 분	주요내용	진행방식
전자공청회	입법안, 입법예고 등 정형화된 사안에 대한 의견수렴	자유토론
정책토론	정부 주요정책, 국민생활 밀접 과제 등에 대한 자유로운 형식의 의견수렴	자유토론
이슈토론	「국민생각함」을 활용한 토론이슈 발굴 및 온라인 토론회 실시	자유토론 (설문조사)
설문조사	구체적인 조사내용 및 항목을 설문으로 작성하여 의견수렴	설문조사

□ 정책고객대표자 회의 운영

○ 방송통신 주요 정책 관련 정책고객 대표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국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고객만족도 제고

- 산·학·연 직능별 대표성과 소비자·노인·장애인 등 분야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학계, 법조계, 연구계, 소비자, 시청자, 여성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참여 (22명)

- 운영은 연 2회(상·하반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추가 개최하며, 방송통신 현안관련 실·국별 주요정책 설명 및 의견 수렴 방식으로 진행

□ 정책단계별 현장확인 시스템 강화

○ **현장의견 수렴 대상과제**

- 방통위 **주요정책과제** 중에서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과제 5개를 선정하여 **정책실효성 제고**

> **과제**①단말기 유통법 안착 및 통신시장 안정화, **과제**②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맞춤형 가이드라인 개발, **과제**③시청자 권익 증진 및 미디어 교육 활성화, **과제**④방송광고 제도 개선 및 산업 지원, **과제**⑤지역 및 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 현장의견 수렴 방법 및 관리

- 업체별 면담 및 간담회,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통해 정책의 **수립-집행-평가 전 과정**에 대한 의견 수렴을 강화

- 정책수요자·이해관계자별 의견과 주요 쟁점,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 등 **'현장보고서'** 작성 및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 관리

○ 현장확인시스템 관리자(정책기획관담당관 기획1담당)를 지정하여 정기적(분기별)으로 점검 및 관리

붙임1 **성과지표 현황**

1. 총괄현황

(단위: 개)

전략 목표	구분		성과지표					
			소계	지표성격				정량지표
				투입	과정	산출	결과	
4	성과목표	11	12	0 (%)	0 (%)	7 (58.3%)	5 (41.7%)	12 (100%)
	관리과제	30	44	0 (%)	1 (2.3%)	14 (31.8%)	29 (65.9%)	44 (100%)

2.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6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1. 국민에게 행복을 주고 신뢰를 받는 방송 실현						
1.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	①방송의 공익성 구현 만족도 조사	(제작지원 프로그램 시청자 만족도×0.5)+(재난방송 시청자 만족도×0.5)×100	80점	정량	결과	
2. 신규 방송서비스의 시장 안착 지원	①신규방송서비스 활성화율(%)	(MMS 시범서비스 시청자 인지도 조사×0.5)+(UHD방송 목표대비 투자비율×0.5)×100	80%	정량	결과	
3.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시장 질서 확립	①방송시장의 공정경쟁 기반 조성률(%)	[(재송신 가이드라인 마련×0.5)+(불공정행위 개선 건수÷개선 목표×0.5)]×100	100%	정량	산출	
Ⅱ. 국민행복을 위한 이용자 보호						
1.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및 권익증진	①통신시장 불공정행위 개선율	실태점검 및 시정조치를 통한 개선실적/개선계획 (목표 : 7건)	100%	정량	산출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6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2. 건전하고 안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	①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시정명령 이행률	[(시정명령 이행건수/시정명령 건수) X 100]	100%	정량	산출	
	②불법스팸 대응지수	[(스팸 수신량 달성도) x 0.4 + (스팸 대응 기술보급 달성도) x 0.4 +(스팸 정보 공개달성도*) x 0.2] x 100	100%	정량	산출	
Ⅲ. 국민이 행복한 방송기반 환경 조성						
1. 고품격 방송문화 기반조성	①방송 공익성 제고율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향상 기여도 × 0.3)+(방송평가 만족도 × 0.3)+방송광고 법규 준수율× 0.4)	72.4%	정량	결과	
2. 방송접근 환경개선	①방송접근환경 개선율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 수 목표달성율 × 02) + (자유학기제 미디어교육 지원학교 수 목표달성율 × 0.2) + (방송수신기 저소득층 누적 보급률 목표달성율 × 0.2) + (장애인방송 이용자 만족도 목표달성율 × 0.2) +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용도 목표달성율× 0.1) + (제작지원 중소기업 매출성장 목표치 달성율× 0.1]	100%	정량	결과	
3. 방송서비스 활성화	①방송서비스 활성화 기반 조성율	[(방송콘텐츠판매액달성율x0.4) +(공동제작 활성화 기반구축 달성률x0.2)+ 통합시청점유율 조사 신뢰성 개선도 x0.4]]	88%	정량	결과	
Ⅳ. 국민과 소통하는 방송통신 행정 구현						
1. 창조적인 방송통신 행정 구현	①신뢰받는 방송통신행정 추진율	(공공데이터 공개율 ×0.2)+(영상회의 활용율 ×0.2)+(기관별 조기집행 목표달성률×0.3)+(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정보보호 수준율×0.3)	100%	정량	산출	
2. 효율적인 행정관리와 신뢰받는 행정 지원	①효율적 행정관리 및 신뢰받는 행정지원 추진율	[(규제개혁과제 이행 목표달성률×0.3)+(정책평가 만족도 목표달성률×0.4)+(유연근무 활성화 추진 목표달성률 ×0.3) × 100	100%	정량	산출	
3. 방송통신정책의 홍보 및 국제협력 지원	①방송통신정책 홍보 및 국제협력 지원 추진율 (%)	[(정책홍보만족도×0.5)+(방송통신 국제협력 향상도(70%) ×0.5)×100	70%	정량	산출	

3.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6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Ⅰ. 국민에게 행복을 주고 신뢰를 받는 방송 실현							
1.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							
	① 지역방송 및 중소방송 활성화	①지역·중소방송 제작지원 프로그램 만족도	시청자·청취자 만족도 조사결과 (100점 만점 환산)	85.5점	정량	결과	
		②지역·중소방송 제작지원 프로그램 유통실적	최근 2년간 제작지원 프로그램 중 유통된 프로그램 건수	17건	정량	산출	
	③ 방송재난 및 재난방송 관리체계 강화	① 재난방송관리 정책만족도	시청자/유관기관 만족도	83.5점	정량	결과	
		②방송재난 대비 중요 방송시설 안전점검률	['16년도 안전점검 시설수(60개소)/ 안전점검 대상 총 시설수(103개소)] × 100	58.2%	정량	결과	
2. 신규 방송서비스의 시장안착 지원							
	① EBS MMS 시장 안착 지원	①EBS MMS 시범서비스 시청자 인지도	EBS-2TV MMS 시범서비스 시청자 인지도	70점	정량	결과	
	② 지상파 UHD 방송 도입	①지상파 UHD 방송 투자액	UHD 시설·장비 투자액+ UHD 콘텐츠투자액	358억원	정량	결과	
3.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시장질서 확립							
	①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 개선	①지상파방송 재송신 가이드라인 추진율	(재송신 가이드라인 마련 여부×0.5) + (지상파방송 재송신 가이드라인 만족도×0.5)	75%	정량	산출	
	② 방송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	①방송 및 방송광고 시장 불공정행위 개선율	불공정행위 개선실적 ÷ 개선계획(3건)	100%	정량	산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6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Ⅱ. 국민행복을 위한 이용자 보호							
1.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권익증진							
	① 통신시장 자율규제 환경조성 및 재정제도 활성화	①통신시장 자율규제 제도 도입 기업수	시장에 영향력이 있는 대기업 통신사 대상, 자율규제 제도 도입 기업수	3개사	정량	산출	
		②이용자 재정처리 단축일수	'15년도 재정사건 평균처리일 수(49일) - '16년도 재정사건 평균처리일 수	3일	정량	결과	
	②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①통신시장 불공정 행위 개선율	결합상품 가이드라인 준수율 ※ 결합상품 가이드라인 준수 항목 : 경품 지급수준 및 허위·과장광고 수준	40%	정량	결과	
	③ 이동통신 유통질서 확립	①이동통신 유통 구조 개선율	단말기 유통법 세부항목별 평균 준수율* *단말기 유통법 세부항목별 위반율을 모니터링(주5회)한 결과의 연간 평균치	95%	정량	결과	
	④ 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 강화	①통신서비스 피해 예방 교육 성취도	[(계층별 교육 후 역량 향상 점수 / 교육 전 역량 점수)] x 100	10%	정량	결과	
		③무선데이터 서비스 개선도	[(검증측정건수/계획(30건))×0.4+(제도개선 실적/계획(3건))×0.6]×100	80%	정량	결과	
2. 건전하고 안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							
	① 개인정보보호 강화	①PIMS 인증 획득 사업자 수	기존 PIMS 인증 획득 기업 수 + 당해년 PIMS 인증 신규 획득 사업자 수	46개	정량	산출	
		②국내외 웹사이트 주민번호 일평균 노출 페이지 수	$\frac{(a_1+\cdot+a_n)+(b_1+\cdot+b_n)}{n}$ n=점검일수 ai(국내), bi(국외)=점검일에 주민번호가 노출된 웹페이지 수	35개	정량	산출	
	②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 환경조성	①긴급구조 플랫폼 활용 만족도	위치정보 플랫폼 수요자(경찰청, 소방방재청) 대상 만족도 조사	70점	정량	결과	
	③ 인터넷 윤리의식 제고 및 불법스팸 대응 강화	①인터넷 윤리의식 향상도	730여개 초등학교 대상 인터넷 윤리 교육(전-후) 의식조사	5%p	정량	결과	
		②1인당 1일 스팸 수신량	외부 통계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휴대전화·이메일 각각 1,500명의 이용자가 수신하는 스팸량을 측정	0.67통	정량	결과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6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Ⅲ. 국민이 행복한 방송기반 환경 조성							
1. 고품격 방송문화 기반 조성							
	①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향상	①방송프로그램의 품격 향상도	방송심의활동 효과 만족도 3개 항목 각 7점척도 평균 점수)/7*100	62점	정량	결과	
	② 방송평가 세부기준 마련	①방송평가만족도	방송평가 만족도 * 항목 : 평가절차의 타당성, 평가 항목의 적절성, 평가결과의 활용성 등	75.2점	정량	결과	
	③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위반 개선	①방송광고 법규 준수율	방송사업자 305개 채널수 모니터링 결과 * 전체 방송사업자채널수 - [(1회 위반 방송사업자채널수) + (2회 이상 중복 위반 방송사업자채널수 x 1.5) + (3회 이상 중복 위반 방송사업자채널수 x 2)] / 전체 방송사업자채널수 } x 100	78%	정량	결과	
2. 방송접근 환경개선							
	①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강화	①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 수	전국 시청자 미디어센터 이용자 수 합계	46.1만명	정량	산출	
		②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 지원학교 수	자유학기제 미디어교육 지원학교 수 합계	100개교	정량	산출	
	② 방송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	① 방송수신기 저소득층 누적 보급률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 누적 보급대수 / 저소득층 시청각 장애인 수) × 100	45%	정량	결과	
		② 장애인 방송 이용자만족도	만족도 조사 * 항목 : 자막방송, 수화방송, 화면 해설방송 만족도 등	75.5점	정량	결과	
	③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①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용도	(기업인지도 상승(5점 만점) x 0.5) + (매출증가 도움(5점 만점) x 0.5) *지원기업대상 설문 조사 결과	3.96점	정량	결과	
		②제작지원 중소기업 매출성장률	[(지원이후 매출액 - 지원전 매출액) / 지원전 매출액] x 100 *지원전후 매출액 산출이 곤란할 경우 전년도와 지원년도의 매출액으로 비교	4.5%	정량	결과	
3. 방송서비스 활성화							
	① 방송콘텐츠 경쟁력 기반 확충	①방송콘텐츠 판매 증가율	'15년 방송영상산업백서 및 '15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15년도실적(5,077억원)에서 2%증가	5,178억원	정량	결과	
	② 공동제작 협정 체결 추진	①공동제작 활성화 기반 구축율	한국측 협정문 초안 마련(30%) + 공동연구반 회의 (10%, 2회 이상) + 양국 협정문(안) 교환(20%)+ 국내물 인정기준 마련(20%)+ 협정 체결(20%)	80%	정량	과정	
	③ 통합시청점유율 조사 기반 구축	①통합시청점유율 조사 신뢰성 개선도	(조사패널 대표성 개선율*0.6) + (N스크린조사 개선사항 이행률*0.4)	80%	정량	결과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6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Ⅳ. 국민과 소통하는 방송통신 행정 구현							
1. 창조적인 방송통신 행정 관리							
	① 정부3.0 변화관리를 통한 행정역량 강화	①공공데이터 공개율	(공개 설정된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수 / 전체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수) ×100	55%	정량	산출	
		②영상회의 활용율	(영상회의 개최 건수/ 영상회의 활용 대상 전체 건수(313회))×100	80%	정량	산출	
		③서비스정부 국민평가단 평가 점수	3대 분야별(국민불편개선, 정보취약계층 접근성 제고, 창업 및 기업활동 지원) 대표사례 각 1건에 대한 국민평가단 평가	80점	정량	결과	
	②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①기관별 조기집행 목표 달성률	상반기 일반회계 집행률/상반기 일반회계 집행계획률)*100	100%	정량	산출	
	③ 사이버안전 및 비상대비 관리체계 강화	①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호 수준율	AL(%)=(T/5)x100 ※ AL:수준율, T:전체 기관의 수준평가 점수 평균(5점 만점)	65%	정량	결과	
		②비상대비 및 보안점검 달성률	{[(자원조사실시업체/자원조사대상업체)×0.3]+[(비상대비 점검기관수/비상대비 점검 목표 기관수)×0.3]+[(보안점검 기관수/보안점검 목표기관수)×0.4]}×100	100%	정량	산출	
2. 효율적인 행정관리와 신뢰받는 행정 지원							
	① 규제개혁 적극 추진	①규제개혁과제 이행률	(규제개혁 이행과제수/ 규제개혁과제수) x100	80%	정량	산출	
	②통합성과관리 효율성 제고	①통합성과 관리율	성과관리이행율(100%)x0.2+정책평가 만족도(55점)x0.8	91%	정량	결과	
	③일잘하는 공직환경 조성	① 유연근무제 활성화율	전년 대비 유연근무활용률* 증가분(%p) = 2.6(%p) ※ '15년도 중앙부처 평균 유연근무활용율 : 18.9%	2.6%p	정량	결과	
		②인재개발 활성화율	전년 대비 상시학습이수율 증가분(%p) = 1.7(%p)	1.7%p	정량	결과	
		③공공구매 법정의무 구매율 달성도	{(A구매율×0.4) +(B구매율×0.4)+(C구매율×0.2)}×100	100%	정량	산출	
3. 방송통신정책의 홍보 및 국제협력 지원							
	① 대국민·대언론 정책홍보 강화	①정책홍보만족도	방송통신정책 수용자(방통위 홈페이지·SNS 방문 국민)만족도 x0.5+대언론(출입기자 대상) 만족도x0.5	65점	정량	결과	
	②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①방송통신 국제협력 향상도	(방송통신 국제협력 추진실적/계획)×0.5 +(방송통신 국제협력 만족도*) ×0.5]×100	75%	정량	결과	

붙임2 관리과제와 국정기조 등 연계 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조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Ⅰ. 국민에게 행복을 주고 신뢰를 받는 방송 실현		
1.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		
	① 지역방송 및 중소방송 활성화	업무계획 1-4 (미디어 다양성 제고)
	② 방송재난 및 재난방송 관리체계 강화	업무계획 1-1 (방송의 공적책임 및 품격제고)
2. 신규 방송서비스의 시장안착 지원		
	① EBS MMS 시장 안착 지원	**국정과제 19-3 (플랫폼:방송산업 육성)** 업무계획 3-2 (신규 방송 서비스 시장안착 지원)
	②지상파 UHD 방송 도입	**국정과제 19-3 (플랫폼:방송산업 육성)** 업무계획 3-2 (신규 방송 서비스 시장안착 지원)
3.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시장질서 확립		
	①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 개선	업무계획 2-1 (방송통신 공정경쟁 시장질서 확립)
	② 방송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	업무계획 2-1 (방송통신 공정경쟁 시장질서 확립)
Ⅱ. 국민행복을 위한 이용자 보호		
1.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및 권익 증진		
	① 통신시장 자율규제 환경조성 및 재정제도 활성화	업무계획 2-1 (방송통신 공정경쟁 시장질서 확립)
	②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업무계획 2-1 (방송통신 공정경쟁 시장질서 확립)
	③ 이동통신 유통질서 확립	업무계획 2-1 (방송통신 공정경쟁 시장질서 확립)
	④ 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업무계획 2-3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강화)
2. 건전하고 안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		
	①. 개인정보보호 강화	**국정과제 81 (개인정보보호 강화)** 업무계획 2-4(개인정보보호 강화, 개인정보 활용 IT 서비스 활성화)
	②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환경 조성	업무계획 36 (위치정보 산업 및 이용 활성화)
	③ 인터넷 윤리의식 제고 및 불법스팸 대응 강화	**국정과제 46-2** **(청소년 역량 개발 및 건강한 성장지원)** 업무 2-2(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조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Ⅲ. 국민이 행복한 방송기반 환경 조성		
1. 고품격 방송문화 기반 조성		
	①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향상	업무계획 1-1 (방송의 공적책임 및 품격제고)
	② 방송평가 세부기준 마련	업무계획 1-1 (방송의 공적책임 및 품격제고)
	③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위반 개선	업무계획 1-1 (방송의 공적책임 및 품격제고) 업무계획 2-1 (방송통신 공정경쟁 촉진 및 이용자 보호)
2. 방송접근 환경개선		
	①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 활성화	**국정과제 68-2**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 업무계획 1-2 (전 국민 대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
	② 방송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	**국정과제 50-2**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 업무계획 1-3 (취약계층 방송접근성 제고)
	③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업무계획 1-1 (방송의 공적책임 및 품격제고)
3. 방송서비스 활성화		
	① 방송콘텐츠 경쟁력 기반 확충	업무계획 3-1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
	② 공동제작 협정 체결 추진	업무계획 1-4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
	③ 통합시청점유율 조사 기반 구축	업무계획 1-4 (미디어 다양성 제고)
Ⅳ. 국민과 소통하는 방송통신 행정 구현		
1. 창조적인 방송통신 행정관리		
	① 정부3.0 변화관리를 통한 행정역량 강화	
	②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③ 사이버안전 및 비상대비 관리체계 강화	
2. 효율적인 행정관리와 신뢰받는 행정 지원		
	① 규제개혁 적극 추진	
	②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통한 국민만족도 제고	
	③ 신뢰받는 공직자상 구현	
3. 방송통신정책의 홍보 및 국제협력 지원		
	① 대국민·대언론 정책홍보 강화	
	②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